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기			금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제1장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총괄	1
2. 통합 재무제표	5
3. 성과보고서	13

제2장 일반회계

I. 개 요	20
--------------	----

1. 세입결산	20
2. 세출결산	22

II. 검토의견	45
----------------	----

1.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시 공고기간 준수 필요	45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를 금융기업 지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51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부실률 관리 철저 필요	58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출연금의 과도한 진흥원 유보 개선 필요	65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면밀한 수요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74
6. 산업은행 출자사업 총괄: 모펀드 회수재원을 고려한 출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제도화 필요	83

7.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결성 지연 등에 따른 모펀드 유보금 과다	90
8.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99
(1) 최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승인 집중 문제	101
(2) 기존 대출의 재원 변경에 따른 구축(Crowding-out) 효과 고려 필요	105
9.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109
(1)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11
(2)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연도 중 프로그램 확대 개편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3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116
(1) 철저한 사전 제도설계 및 일관성 있는 집행 필요	120
(2) 사해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27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펀드 적정 조성주기에 대한 검토 필요	133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142
(1) 채권 매입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등	143
(2) 상환능력 심사 지연 문제	147
(3) 잔여재원 및 회수재원의 처리방안 마련 필요	150

제3장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I. 공적자금상환기금 개요	153
1. 수입·지출 결산	153
2. 재무제표	157

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개요	160
1. 수입·지출 결산	160
2. 재무제표	163
Ⅲ. 검토의견	167
1. 총괄: 잔여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 필요	167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77
1. 수입·지출 결산	177
2. 재무제표	181
Ⅱ. 검토의견	185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185
2. 대위변제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191
3. 기금관리비: 적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연례적 계획변경 지양 필요	195

제5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199
1. 수입·지출 결산	199
2. 재무제표	201
Ⅱ. 검토의견	205
1. 총괄: 기금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신속한 제도개선 필요	205

제6장 신용보증기금

I. 개 요	212
1. 수입·지출 결산	212
2. 재무제표	215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219
II. 검토의견	222
1. 일반회계 전입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 공급 실적 저조 문제	222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대위변제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226
3.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일반회계로부터의 임시전용 재원 반환 필요	231
4.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종료를 반영하지 않은 대위변제금액 추계 부적절	237

제7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 개 요	243
1. 수입·지출 결산	243
2. 재무제표	248
II. 검토의견	252
1. 대위변제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주택신용보증계정):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 필요	252

제1장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총괄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됨.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규모(세출예산현액 총계 기준)는 2024회계연도 재정규모 38조 9,757억 5,000만원 대비 8.7% 감소한 35조 5,974억 2,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A)	2025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 일반회계	4,003,566	5,670,660	1,667,094	41.6
○ 6개 기금(b)	34,972,184	29,926,767	△5,045,417	△14.4
- 공적자금상환기금	10,940,754	6,438,424	△4,502,330	△41.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3,115	51,095	△12,020	△19.0
- 신용보증기금	11,470,275	11,612,538	142,263	1.2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9,636	2,265,114	245,478	12.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97,374	4,809,991	△87,383	△1.8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581,030	4,749,605	△831,425	△14.9
□ 총 재정규모(a+b)	38,975,750	35,597,427	△3,378,323	△8.7

주) 각 회계 및 기금의 금액은 예산현액 및 지출계획현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11억 700만원으로, 2,255억 4,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50억 7,000만원이 수납(수납률 55.5%)되었고, 1,004억 7,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합 계	144,616	101,107	101,107	-	101,107	225,546	125,070	100,476	-
일반회계	144,616	101,107	101,107	-	101,107	225,546	125,070	100,476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억 6,706억 6,000만원으로, 5조 6,688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고, 6,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세출예산액		증감액(B)			세출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합 계	3,999,429	4,183,766	5,670,620	40	±1,246	0	5,670,660	5,668,816	69	1,775
일반회계	3,999,429	4,183,766	5,670,620	40	±1,246	0	5,670,660	5,668,816	69	1,775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 실적은 연간 수입·지출계획 29조 9,259억 3,800만원의 87.6% 수준인 26조 2,25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총 수입 및 지출실적 30조 9,156억 6,600만원 대비 15.2% 감소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A)	2025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합 계	30,915,666	29,825,938	29,925,938	26,225,774	87.6	△15.2
공적자금상환기금	9,327,316	6,438,424	6,438,424	5,950,405	92.4	△36.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057,449	2,265,114	2,265,114	2,237,578	98.8	8.8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63,107	51,095	51,095	49,130	96.2	△22.2
신용보증기금	9,444,908	11,512,538	11,612,538	9,381,044	80.8	△0.7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5,443,234	4,749,605	4,749,605	3,434,340	72.3	△36.9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579,651	4,809,162	4,809,162	5,173,277	107.6	13.0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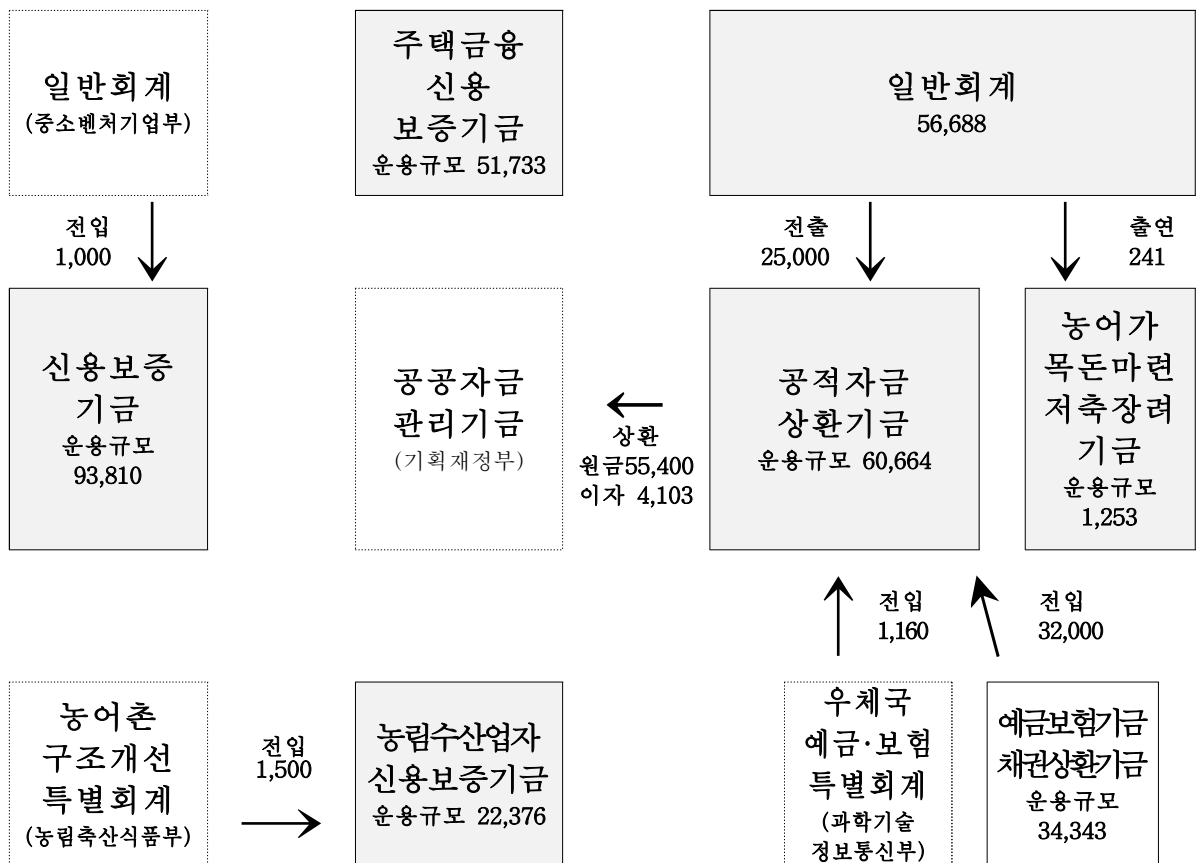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결과 회계·기금 간 재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2조 5,0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1,160억원을 전입하였고,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41억원을 출연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을 전입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1,500억원을 전입하였음.

□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3조 2,000억원을 전입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 원금 5조 5,400억원과 예수이자 4,103억원을 상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결산 재정흐름도〉

(단위: 억 원)



(자료: 금융위원회)

2. 통합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¹⁾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자산은 38조 2,487억 700만원이고, 부채는 20조 7,318억 2,100만원이며, 순자산은 17조 5,168억 8,500만원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37,646,296	32,387,731	5,258,565	16.2
	유·무형자산	570,002	551,930	18,072	3.3
	기타자산	32,409	66,743	△34,334	△51.4
	자산계	38,248,707	33,006,404	5,242,303	15.9
부 채	차입부채	15,316,302	20,882,004	△5,565,702	△26.7
	충당부채	4,730,489	5,175,776	△445,287	△8.6
	기타부채	685,030	681,884	3,146	0.5
	부채계	20,731,821	26,739,663	△6,007,842	△22.5
순자산	기본순자산	76,948,724	76,948,724	0	0.0
	적립금 및 잉여금	△61,183,504	△68,756,045	7,572,540	11.0
	순자산 조정	1,751,666	△1,925,938	3,677,604	191.0
	순자산계	17,516,885	6,266,741	11,250,144	179.5

(자료: 금융위원회)

1)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5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5조 2,423억 3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기 대비 5조 2,585억 6,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부채는 전년도 말 대비 6조 78억 4,2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정부내차입금의 상환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전기 대비 5조 5,657억 2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순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11조 2,501억 4,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적립금 및 잉여금이 7조 5,725억 4,0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조정이 3조 6,776억 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 재정운영표2)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4조 25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3조 3,202억 3,800만원 대비 7,048억 9,900만원 감소함.

〈금융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2,437,294	3,080,427	△643,133	△20.9
1. 프로그램 총원가	4,864,639	4,899,111	△34,472	△0.7
2. 프로그램 수익	2,427,345	1,818,684	608,661	33.5
II. 관리운영비	214,003	212,133	1,870	0.9
III. 비배분비용	444,967	525,701	△80,734	△15.4
IV. 비배분수익	1,546,114	1,575,147	△29,033	△1.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550,150	2,243,114	△692,964	△30.9
VI. 비교환수익 등	5,575,287	5,563,351	11,936	0.2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025,137	△3,320,238	△704,899	△21.2

(자료: 금융위원회)

□ 프로그램순원가는 주로 농림수산업금융지원 순원가 3,018억 900만원 감소, 신용보증금융지원순원가 2,704억 8,100만원 감소 등으로 전기 대비 6,431억 3,300만원 감소함.

2)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냄.

- 관리운영비³⁾는 인건비가 84억 8,200만원 증가하고 경비가 66억 1,200만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18억 7,000만원 증가함.
- 비배분비용⁴⁾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807억 3,400만원 감소함.
- 비배분수익⁵⁾은 금융상품이자수익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290억 3,300만원 감소함.
- 비교환수익⁶⁾ 등은 부담금수익이 514억 100만원 증가하고 자산수증이익 등 기타이전수익이 394억 6,500만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119억 3,600만원 증가함.

3)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관련 비용

4) 프로그램과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비용

5) 재화 및 용역 등 반대급부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중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수익

6)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

3) 순자산변동표⁷⁾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말순자산은 17조 5,168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순자산 6조 2,667억 4,100만원 대비 11조 2,501억 4,400만원 증가함.

〈금융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6,266,741	△497,871	6,764,612	1358.7
II. 재정운영결과	△4,025,137	△3,320,238	△704,899	△21.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163,666	3,292,640	△128,974	△3.9
IV. 조정항목	4,061,342	151,735	3,909,607	2,576.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7,516,885	6,266,741	11,250,144	179.5

(자료: 금융위원회)

- 기초순자산은 6조 2,667억 4,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조 7,646억 1,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로 직전연도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순자산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4조 251억 3,700만원으로 전기 재정운영결과 △3조 3,202억 3,800만원 대비 7,048억 9,900만원 감소함.

7)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 분석과 현황파악을 위해 순자산의 크기와 변동내역을 표시함.

- 순자산의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조 1,636억 6,6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289억 7,400만원 감소함.
-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은 5조 8,300억 9,900만원으로 국고수입의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1조 6,728억 4,300만원 증가함.
- 차감항목인 재원의 이전은 2조 6,664억 3,300만원으로 기타이전비용의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1조 8,018억 1,700만원 증가함.
- 순자산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거래 중 비교환수익 또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는 조정항목은 4조 613억 4,200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손익의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3조 9,096억 700만원 증가함.

4) 현금흐름표⁸⁾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말현금은 2,830억 800만원으로 기초현금 1,948억 9,300만원 대비 881억 1,500만원 증가함.

〈금융위원회 현금흐름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19,940	-	7,919,94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25,539	-	△2,525,539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06,286	-	△5,306,286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88,115	-	88,115	-
V. 기초의현금	194,893		194,893	
VI. 기말의현금(IV+V)	283,008	-	283,008	-

(자료: 금융위원회)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7조 9,199억 4,000만원으로 국고수입, 부담금수입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14조 7,891억 3,200만원과 출연금 및 이자의 지급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6조 8,691억 9,200만원 때문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조 5,255억 3,900만원으로 주로 금융상품 및 투자증권의 처분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14조 451억 8,600만원과 취득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16조 5,707억 2,500만원 때문임.

8)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현금흐름을 구분함(2025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체계 전면 개편으로 현금흐름표 도입).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조 3,062억 8,600만원으로 주로 정부내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 5조 5,400억 2,400만원 때문임.

3. 성과보고서

□ 금융위원회는 “① 경제활력 뒷받침 ② 금융산업 혁신 ③ 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④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4대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정책비전을 “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추진 하였음.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 금융위원회의 ‘2025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달성도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는 총 15개 지표 중 10개를 달성하여
66.7%를 기록하였음.

〈금융위원회 성과 달성도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도			
	성과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I.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4	-	3	1
II.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 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	-	2	3
III.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 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5	2	2	1
IV.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 정시스템을 구축한다.	1	1	-	-
합 계	15	3	7	5

주: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 이상~130% 미만, 미달성 100% 미만

(자료: 금융위원회)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I-(2)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의 ‘청년 농어업인 보증 지원(건)’, ‘II-(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
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의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액’, ‘II-(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의 ‘주택보증지원실적’ 및 ‘주택연금지원실적(지
급액)’, ‘III-(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의 ‘CTR 제공사실
통보 수신 확인율(%)’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미달성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
I-(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청년 농어업인 보증 지원(건)	청년 농어업인 (39세 이하) 순신규 보증 지원 건수	8,650	7,700	89.0
II-(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억원)	장려금 지급액	501	491	98.0
II-(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보증 지원실적(조원)	연간 주택금융 신용보증 공급금액	77.2	68.7	89.0
	주택연금 지원실적(조원)	연간 주택연금 지급액	3.15	2.81	89.2
III-(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CTR 제공사실 통보 수신 확인율(%)	(CTR 제공사실 확인건수 / CTR 제공사실 통보 건수) x 100	68.0	66.9	98.4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 ‘2025년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025년도 결산실적은 예산 대비 88.7%인 8조 7,572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의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사업이 예산 4조 4,039억원 대비 79.2%인 3조 4,885억원에 그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

〈성과목표 관리체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년 예산	'25년 결산	집행률
총 계					98,771	87,572	88.7
전략목표 I: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74,796	65,610	87.7
프로그램목표 I - 1: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					25,912	25,912	100.0
산업금융지원	산업은행출자	일반회계	2400-2414		8,912	8,912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일반회계	2400-2432		16,500	16,500	100.0
저탄소생태계조성	녹색금융	기후대응기금	6200-6232	타부처소관	500	500	100.0
프로그램목표 I -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4,667	4,637	99.3
농림수산업금융지원	농어민금융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400-2432		4,667	4,637	99.3
프로그램목표 I - 3: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점정책부문의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44,217	35,062	79.3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년 예산	'25년 결산	집행률
신용보증 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400-2431		44,039	34,885	79.2
	신보IT운영	신용보증기금	2400-2434		178	177	99.7
전략목표Ⅱ: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23,421	21,416	91.4
프로그램목표Ⅱ- 1: 금융소비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5,313	5,312	100.0
금융소비 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일반회계	1800-1831		5,294	5,294	100.0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일반회계	1800-1833		18	18	100.0
프로그램목표Ⅱ- 2: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501	491	98.1
저축장려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1600-1631	조세 지출 병행	501	491	98.1
프로그램목표Ⅱ-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15,494	13,498	87.1
주택금융 지원	주신보운영 (주신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1		14,228	12,574	88.4
	주신보IT운영 (주신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2		48	46	95.8
	주연보운영 (주연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1		1,198	859	71.7
	주연보IT운영 (주연보계정)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2600-2632		20	20	96.5
프로그램목표Ⅱ- 4: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2,114	2,114	100.0
복권기금 운영(취약 계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복권기금	6300-6346	타부처 소관	2,114	2,114	100.0
전략목표Ⅲ: 금융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217	215	98.8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년 예산	'25년 결산	집행률
프로그램목표Ⅲ- 1: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한다.					129	128	99.1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일반회계	1100-1134		129	128	99.1
프로그램목표Ⅲ- 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78	77	98.5
자금세탁 방지시스 템선진화	자금세탁방지추진	일반회계	1300-1331		29	28	98.6
	FIU전산망구축 운영	일반회계	1300-1332		49	49	98.4
프로그램목표Ⅲ- 3: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0	10	98.7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관련국제협력	일반회계	1400-1431		10	10	98.7
전략목표Ⅳ: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336	332	98.6
프로그램목표Ⅳ- 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336	332	98.6
금융행정 효율화	행정정보화	일반회계	7100-7132		49	46	94.8
	금융행정지원	일반회계	7100-7135		288	285	99.2

(자료: 금융위원회)

제2장 일반회계

I.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1억 700만원이며, 2,255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5.4%인 1,250억 7,000만원(예산 대비 123.7%)을 수납하고, 1,004억 7,600만원은 미수납됨.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 현액 (A)	누적징수 결정액(B)		수납액(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2025년 징수결정액		2025년 수납액			2025년 미수납액
기타 재산수입	58	826	826	826	826	-	-	-
과태료	37,104	57,157	45,056	44,079	43,775	-	13,078	1,281
과징금	59,907	154,396	97,471	77,421	42,529	-	76,975	54,941
가산금	150	10,506	1,904	83	28	-	10,423	1,876
기타경상 이전수입	3,888	2,661	2,622	2,661	2,622	-	-	-
기타 잡수입	-	0.1	0.1	0.1	0.1	-	-	-
합 계	101,107	225,546	147,879	125,070	89,780	-	100,476	58,098

(자료: 금융위원회)

□ 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15억원, 과징금 등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8,3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6억 6,100만원, 기타재산수입 8억 2,600만원, 기타잡수입 7만원임.

□ 미수납액 1,004억 7,600만원은 납기 미도래(340억 2,300만원) 및 폐업·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납부능력 부족(534억 9,000만원), 납부기간 연장 등 징수유예(129억 6,3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최근 3년간 세입 미수납 사유 총괄표〉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납기미도래	34,383	34,533	33,796	2,033	557	227	-	0.4	-	-	-	-
납부능력 부족	16,838	20,022	30,452	11,084	11,920	12,684	6,534	8,596	10,355	3	-	-
징수유예	584	2,371	12,727	45	102	167	65	10	68	-	39	-
합 계	51,804	56,926	76,975	13,163	12,579	13,078	6,599	8,606	10,423	3	39	-

(자료: 금융위원회)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조 6,706억 6,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99.9%에 해당하는 5조 6,688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500만원을 불용처리함.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증감액				
합 계	4,183,766	5,670,620	40	±1,246	5,670,660	5,668,816	69	1,775
인건비	33,211	33,211	-	±502	33,211	32,947	-	264
기본경비	9,639	9,639	-	±360	9,639	8,817	-	822
주요사업비	1,640,916	3,127,770	40	±384	3,127,810	3,127,052	69	689
내부거래 (회계기금간 거래)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329억 4,700만원, 기본경비 88억 1,700만원, 주요사업비 3조 1,270억 5,200만원임.

1) 인건비

□ 2025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32억 1,100만원
에서 99.2%인 32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합 계	33,211	33,211	-	±502	33,211	32,947	-	264
본부 인건비	26,818	26,818	-	+502	27,320	27,237	-	82
FIU 인건비	6,393	6,393	-	△502	5,891	5,710	-	182

(자료: 금융위원회)

2) 기본경비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6억 3,900만원 중 91.5%인 88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목)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합 계	9,639	9,639	-	±360	9,639	8,817	-	822
인건비(110)	2,155	2,155	-	△228	1,927	1,867	-	60
운영비(210)	4,494	4,494	-	△115 6	4,385	3,880	-	505
여비(220)	745	745	-	△6 14	753	645	-	108
업무추진비(240)	727	727	-	-	727	719	-	8
직무수행경비(250)	782	782	-	-	782	685	-	97
보전금(310)	73	73	-	-	73	47	-	25
민간이전(320)	398	398	-	228	626	618	-	8
건설비(420)	74	74	-	±12	74	72	-	2
유형자산(430)	191	191	-	100	291	282	-	9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사업비

□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비는 예산현액 3조 1,278억 1,000만원 중 99.9%인 3조 1,27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완료하지 못한 연구용역 2건에 대해 6,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합 계	1,640,916	3,127,770	40	±384	3,127,810	3,127,052	69	689
핀테크 지원 사업	12,933	12,933	-	-	12,933	12,811	-	122
자금세탁방지추진	846	846	-	±48	846	805	-	41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018	2,018	-	-	2,018	2,018	-	-
FIU전산망구축운영 (정보화)	4,947	4,947	-	-	4,947	4,870	-	77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81	981	-	±31	981	970	-	11
금융소비자보호	101	101	-	-	101	94	-	7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5	35	-	-	35	20	-	1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92,500	-	-	92,500	92,500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40	△290	346,765	346,758	-	7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90,000	90,000	-	-	90,000	90,000	-	-

주요사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05	1,559	-	290	1,849	1,849	-	-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	-	176,200	176,200	-	-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30,000	-	-	30,000	30,000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	450,000	450,000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35,000	35,000	-	-	35,000	35,000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100,000	-	-	100,000	1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1,200,000	-	-	1,200,000	1,20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	-	50,000	5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400,000	-	-	400,000	400,000	-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3,012	3,012	-	±13	3,012	2,876	-	136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 (정보화)	1,461	1,461	-	-	1,461	1,372	-	89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286	286	-	-	286	268	-	19
금융위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117	-	-	117	108	-	9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75	575	-	-	575	481	-	94
정책연구개발	599	599	-	-	599	508	69	22
금융정책알리기	885	885	-	±1	885	857	-	28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50	450	-	-	450	450	-	-

주요사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회계의 날	59	59	-	-	59	58	-	1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200	-	-	200	197	-	3
금융의 날 행사	69	69	-	-	69	69	-	0
소송 수행 비용	900	900	-	-	900	900	-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430	430	-	-	430	424	-	6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445	445	-	-	445	445	-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24,147	24,147	-	-	24,147	24,147	-	-

(자료: 금융위원회)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9억 3,300만원 중 12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자금세탁방지 추진 사업은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협력과 고액현금거래(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4,600만원 중 8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은 FATF 교육연구기구(TRAIN)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0억 1,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FIU전산망구축운영 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보호 및 보안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49억 4,700만원 중 4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7,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사업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금융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필요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8,1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 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00만원 중 9,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사업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융그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2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467억 6,500만원 중 3,46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은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지원을 통해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가혹한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4,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국가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중견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6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은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국내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 기업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은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초격차 기술력 개발 등을 통한 원전 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산업은행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美 관세부과 관련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조 2,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美 상호관세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 적기 대응 등을 위해 구조조정 투자 목적의 정책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후순위 출자목적 예산현액 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을 개선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1,200만원 중 2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600

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정보화) 사업은 개인사업자 정보 등 금융분야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금융혁신, 창업 및 데이터 기반 금융 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 중 13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자본시장조사인프라운영(정보화) 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를 위한 인프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600만원 중 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사업은 금융위원회 국·영문 대표 홈페이지의 국민 이용 편의 향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으로 금융정책의 효과적 전달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 홍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700만원 중 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조직의 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

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5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금융 관련 주요 정책과제와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9,900만원 중 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은 금융시장 참여자·금융소비자·언론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8,500만원 중 8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시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회계의 날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회계의날)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매년 10월 31일)을 맞이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900만원 중 5,800

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의 날 행사 사업은 2016. 3. 22.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기존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개편되어, 저축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900만원 중 6,888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소송 수행 비용 사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9,971만원을 집행하고 2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상자산시장의 종합적인 규율체계 확립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사업은 서민·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4,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의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1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4)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25년도 회계기금간 거래(전출금)는 예산현액 2조 5,000억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내부거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합 계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	-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으로 전출금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5) 프로그램별 지출내역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프로그램(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2025회계연도 프로그램(항)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항) 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합 계	4,183,766	5,670,620	40	±1,246	5,670,660	5,668,816	69	1,775
금융정책(1100)	12,933	12,933	-	-	12,933	12,811	-	12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선진화 (1300)	7,811	7,811	-	±48	7,811	7,693	-	118
금융산업 글로벌화(1400)	981	981	-	±31	981	969	-	12
금융소비자보호 (1800)	494,356	531,210	40	±290	531,250	531,220	-	30
산업금융지원 (2400)	1,091,200	2,541,200	-	-	2,541,200	2,541,200	-	-
금융행정효율화 (7100)	76,485	76,485	-	±876	76,485	74,923	69	1,493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00)	2,500,000	2,500,000	-	-	2,500,000	2,50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1100)은 세출예산현액 129억 3,300만원 중 99.1%인 12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0.9%인 1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화(1300)는 세출예산현액 78억 1,100만원 중 98.5%에 해당하는 76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5%인 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산업글로벌화(1400)는 세출예산현액 9억 8,100만원 중 98.8%인 9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2%인 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금융소비자보호(1800)는 세출예산현액 5,312억 5,000만원 중 99.99%인 5,31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0.01%인 3,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산업금융지원(2400)은 세출예산현액 2조 5,41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금융행정효율화(7100)는 세출예산현액 764억 8,500만원 중 98.0%에 해당하는 749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2.0%인 14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5,0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6) 이용 내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용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세목	금액	이용사유
------	----	----	------

해당사항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7) 전용 내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12억 4,569만원임.

〈2025회계연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자금세탁방지 추진(1331-303)	국제부담금 (340-02)	48	자금세탁방지 추진(7111-257)	상용임금 (110-03)	6	환율증가 및 분담금 증가로 국제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분 발생
				일반수용비 (210-01)	5.4	
				국외업무여비 (220-02)	36.6	
금융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1431-301)	국제부담금 (340-02)	21.4	금융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1431-301)	일반수용비 (210-01)	10.4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분 발생
				사업추진비 (240-01)	1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민간경상보조 (320-01)	290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일반용역비 (210-14)	250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실적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 (‘25.9월 중) 예정 → 사업 축소·중단 없이 지원을 유지 하고자 추가 재원 확보 필요
				정책연구비 (260-02)	40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431-301)	국외업무 여비 (220-02)	10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1431-301)	임차료 (210-07)	5	환율 상승 및 추가 국외출장 수요 발생 으로 국외여비 (220-02)예산 부족분 발생
				사업추진비 (240-01)	5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국외교육 여비 (220-03)	14.3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비충액) (7111-251)	일반수용비 (210-01)	14.3	기획조정관실 기본 경비 중 국외교육 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세목	금액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자산취득비 (430-01)	100.4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일반수용비 (210-01)	100.4	국회업무관리시스템 한글편집기 기술지원 중단으로 SW 구매 소요 발생
금융위정보 시스템운영 (7132-501)	관리용역비 (210-15)	13	금융위정보 시스템운영 (7132-501)	일반연구비 (260-01)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내부 업무포털 등에서 사용하는 상용 SW 복구 비용이 발생
인건비(총액) (7101-101)	보수 (110-01)	501.7	FIU인건비(총액) (7102-101)	보수 (110-01)	501.7	본부 초과현원 발생에 따른 본부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1)	공사비 (420-03)	11.8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비충액) (7118-252)	공사비 (420-03)	11.8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25.12.30.)에 따라 사무실 조성 등 집행 소요 발생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320-09)	216.4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110-03)	181.3	비공무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원활한 납입을 위한 퇴직연금 기준책임 준비금 충족 필요
				일용임금 (110-04)	5.1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118-202)	상용임금 (110-03)	30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118-202)	고용부담금 (320-09)	11.5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 (7118-202)	상용임금 (110-03)	11.5	
금융정책알리기 (7135-303)	고용부담금 (320-09)	1	금융정책알리기 (7135-303)	상용임금 (110-03)	1	
대변인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2)	일반수용비 (210-01)	6	대변인실 기본경비(비충액) (7111-252)	국내여비 (220-01)	6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소모품 비용, 출입기자단 기자수첩 제작 비용 등 지급상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8) 이월 내역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6,900만원이며, 연내 완료하지 못한 연구용역 2건에 대한 대금 사고이월임.

〈2025회계연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세 목	이월액	이월 사유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비	69	연내 미완료 정책연구용역 2건에 대한 용역대금 차년도 이월
합 계		69	

(자료: 금융위원회)

9) 불용 내역

□ 202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7억 7,5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집행잔액 2억 6,4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8억 2,200만원, 주요사업비 집행잔액 6억 8,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 인 건 비	33,211	264	0.8	집행잔액
○ 기본경비	9,639	822	8.5	집행잔액
○ 주요사업비	3,127,810	689	0.0	
핀테크 지원 사업	12,933	122	0.9	집행잔액 등
자금세탁방지추진	846	41	4.9	집행잔액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018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947	77	1.6	낙찰차액, 집행잔액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981	11	1.1	집행잔액
금융소비자보호	101	7	6.9	집행잔액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5	15	43.0	집행잔액
서민금융진흥원출연(최저신용자한시특례보증)	92,500	-	-	
서민금융진흥원출연(청년도약계좌)	346,765	7	0.0	집행잔액
서민금융진흥원출연(햇살론15)	90,000	-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49	-	-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176,200	-	-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450,000	-	-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35,000	-	-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10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소상공인지영업자 채무조정)	1,20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50,000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0	-	-	
금융위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12	136	4.7	낙찰차액, 집행잔액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정보화)	1,461	89	6.1	낙찰차액, 집행잔액
자본시장조사인프라 운영(정보화)	286	19	6.9	낙찰차액
금융위대표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9	8.3	낙찰차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575	94	19.5	집행잔액
정책연구개발	599	22	4.3	집행잔액
금융정책알리기	885	28	3.16	낙찰차액, 집행잔액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50	-	-	
회계의 날	59	1	1.7	집행잔액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200	3	1.6	집행잔액
금융의 날 행사	68.9	0.1	0.1	집행잔액
소송수행비용	900	0.3	0.0	집행잔액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430	6	1.3	낙찰차액, 집행잔액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445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24,147	-	-	
○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2,500,000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500,000	-	-	
합 계	5,670,660	1,775	0.0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FIU 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보호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9억 4,700만원 중 48억 7,000만원(98.4%)이 집행되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FIU 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FIU 전산망구축 운영(정보화) 사업	4,947	-	-	4,947	4,870	-	77	4,801

(자료: 금융위원회)

9) 세부사업: FIU 전산망구축운영(1132-501)

2) 검토의견: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시 공고기간 준수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FIU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동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25년도에 44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4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FIU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 외부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용역비 39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3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FIU 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조달수수료, 소모용품비 등	50	50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 사용료, 기업데이터 이용료 등	192	178
관리용역비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3,972	3,910
자산취득비	노후장비 교체 등	235	235
일반연구비	RBA 시스템 개선 ISP 용역	498	497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고, 3년간의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있음.

○ 장기계속계약¹⁰⁾이란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계약과 같이 그 성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다년도에 걸쳐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공고 과정에서 계약기간 동안의 총 용역비를 부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년차 이후의 연도별 용역 집행금액은 각 회계연도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2024년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용역을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동 계약의 경우 3년간 총 용역비를 122억 7,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연도별 소요 예산은 아래와 같음.

〈FIU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기간	예산액
1차연도	2025.1.1. ~ 2025.12.31.	3,972
2차연도	2026.1.1. ~ 2026.12.31.	4,088
3차연도	2027.1.1. ~ 2027.12.31.	4,212

(자료: 금융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그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최소 4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갖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만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¹¹⁾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되, 재공고, 긴급한 행사 등 또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긴급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¹²⁾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을 25일로 설정하였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러한 긴급입찰을 추진한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1) FIU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연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종료 즉시 새로운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내에 계약 및 인수인계 완료가 필수적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¹³⁾에 따라 공고기간을 25일¹⁴⁾로 단축하는 긴급공고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2024년에 미리 2025년도 1월 1일자로 수행할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긴급공고를 추진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FIU정보시스템과 별도로 ‘2025년도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동 입찰 공고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를 실시¹⁵⁾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4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1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함.

14) 2024. 10. 23. ~ 2024. 11. 15.

15) 2024. 10. 18. ~ 2024. 11. 29.

-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와 같은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특정 업체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이 2024년과 2021년에 각각 발주한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 결과를 보면, 모두 단일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으며, 최근 6년간의 계약은 모두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음.

〈최근 FIU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내역〉

구분	계약방식	계약 사업자	비고
2025년~2027년	단독입찰로 유찰 → 수의계약	케이씨씨정보통신, 올포랜드	5:5지분
2022년~2024년	단독입찰로 유찰 → 수의계약	케이씨씨정보통신, 올포랜드	5:5지분
2021년	단독입찰로 유찰 → 수의계약	올포랜드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사업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기간을 준수함으로써 여러 업체가 실질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¹⁶⁾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¹⁷⁾¹⁸⁾ 추진’ 사업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 금융당국과의 면담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9억 8,100만원 중 9억 7,000만원(98.9%)이 집행되었고, 1,100만원(1.1%)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981	981	-	-	981	970	-	11	997
-금융관련 국제협력	581	581	17	-	599	591	-	11	655
- 금융중심지추진	73	73	△17	-	55	52	-	3	59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327	327	-	-	327	327	-	-	283

(자료: 금융위원회)

16) 세부사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1431-301)

1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3.21.>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18)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내역사업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¹⁹⁾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설치된 금융
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억
2,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26년 현재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금융중
심지지원팀)에 설치되어 있으며, 1개 팀(총 11명) 및 1개 분소(1명,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음²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

구 분	금융감독원 직원	통역전문역	수견직원	계
금융중심지지원팀	6	3	2	11
부산 지원센터	1	-	-	1

주) 수견직원 :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운용하는 직원

(자료: 금융위원회)

1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
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 센터장 : 수석부원장, 부센터장 : 국제업무국 국장

2) 검토의견: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를 금융기업 지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목적과는 관련성이 낮은 일반 국제협력 및 행사 개최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실집행 실적(2022~2025년) >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2년	466	331	135	71.0
2023년	450	281	169	62.4
2024년	327	283	44	86.5
2025년	327	189	138	57.8

(자료: 금융감독원)

- 2025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부액 3억 2,700만원 중 1억 8,900만원(57.8%)이 집행되었으며, 세부 실집행 내역 상 주로 해외 IR(Investor Relations)과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IR의 경우 당초 1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7,200만원이 집행되어 9,800만원이 불용되었고,
-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의 경우 당초 3,3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700만원이 집행되어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내역별 실적집행 실적 >

(단위: 원)

내역	배정금액(A)	집행금액(B)	잔액(A-B)
○ 인건비	3,000,000	3,000,000	-
○ 경상경비	324,000,000	186,204,732	137,795,268
- 해외 IR	170,010,000	71,898,016	98,111,984
-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13,008,000	12,641,000	367,000
-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	33,000,000	7,385,586	25,614,414
-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10,562,000	6,271,100	4,290,900
- 해외 진출 지원 간담회	4,420,000	3,283,130	1,136,870
-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80,000,000	75,195,000	4,805,000
-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13,000,000	9,530,900	3,469,100
합계	327,000,000	189,204,732	137,795,268

(자료: 금융감독원)

□ 한편, 2025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제협력 행사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외 IR,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등 동 사업을 통하여 개최된 행사는 국제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 등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 동 사업을 통한 행사 내역 〉

구 분	주요 참석자	주요 내용
해외 IR	금융감독원장	(4월) 홍콩 : 글로벌 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 설명회 개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장	(1월)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 2025년 글로벌 금융이슈 및 최근 국내 금융상황 의견 교환 (9월)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 금융현안 관련 제언 청취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	금융중심지지원팀 직원	(4월) 홍콩: 양국 자본시장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방문 (11월) 싱가포르: 핀테크 생태계 조성현황 등 논의를 위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방문 (12월) 홍콩: 디지털은행 감독방안 등 논의를 위해 홍콩 금융관리국(HKMA) 방문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	(5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통합감독국장 등) 초청 세미나 -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 관련 설명 (9월) 미국 보험감독당국(뉴저지주 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 책임자) 초청 세미나 - 계리감독 선진화 공개 세미나 -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1시간)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금융감독원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종합센터	(11월)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및 조선·해운산업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 토론회 개최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재작성)

□ 반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기업 자문 및 컨설팅, 투자 유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또는 사업 실적은 부재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²¹⁾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실적에도 해당 내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²²⁾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 관련 통계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음.

□ 당초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최초로 설치된 2008년²³⁾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2009년에는 금융기업의 인허가 지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금융투자자 출입국 우대제도 도입, 해외 금융전문인력 매칭 등 금융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21)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3) 본 센터(서울)는 20명(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에는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부산 지원센터(5명)도 별도로 설치되었음.

□ 그러나,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강화되고 종전의 지원 업무에 관한 수요는 감소한 반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고유 지원 업무 정립은 미흡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과 관행적인 국제행사 중심의 업무 체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허가·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국내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관의 일반적인 국제협력 업무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실적 및 통계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²⁴⁾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25억원 전액을 진흥원에 교부하였음.

〈2025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56,000	92,500	-	-	92,500	92,5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이로써 불법사금융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²⁵⁾이고 연소득 4,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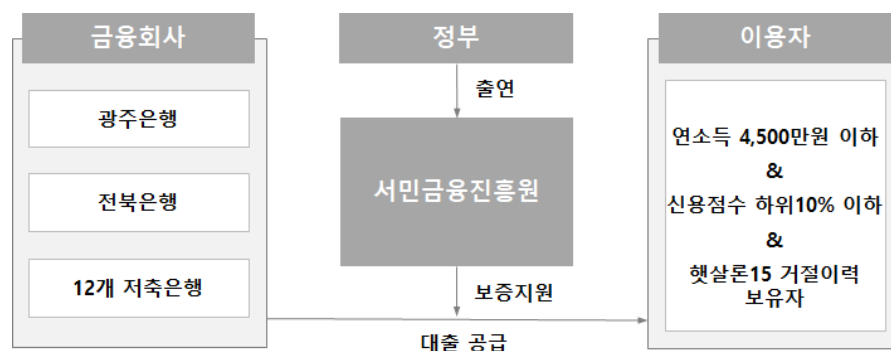
24)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25) KCB와 NICE 중 더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이하인 자 중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26)이 거절된 자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금리는 최초 15.9%이고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인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최종금리가 9.8%~9.9% 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설계되었음.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진흥원 심사 결과 보증이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집행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26) 햇살론15 기본 이용요건: ①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정책금융상품을 개편하면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과 햇살론 15 상품²⁷⁾을 통합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하였음.

- 기존 ‘햇살론 15’ 상품과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정부 및 민간 재원이 투입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되어, 소득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화(연소득 3,500만원 이하)되고 신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신용 하위 20% 이하)될 계획임.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민간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27) 햇살론15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대부업·미등록대부업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이 보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9월 햇살론17(연 17.9%)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21년 1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5(연 15.9%)로 개편되었음.

2) 검토의견: 사업 부실률 관리 철저 필요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후 차주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함.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2022년에 첫 보증 공급을 실시하여 매년 일반회계로 정부 출연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본예산에서 5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65억원을 증액하여 총 925억원을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2022년 ¹⁾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편성액 (집행액)	본예산	480 (200 ²⁾)	280 (560 ³⁾)	560 (560)	560 (560)
	추경	-	-	-	925 (925)
지원인원		34,208	112,009	70,636	82,170
보증공급 목표	본예산	2,400	1,400	2,800	1,700
	추경	-	-	-	2,800
보증공급액		1,002	2,924	1,935	2,962

주1) 2022년 9월 보증 공급 첫 실시

주2) 2022년도 보증공급액이 1,002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 및 준비금 총 200억원만 집행

주3)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집행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2025년도 순대위변제율은 28.8%로, 진흥원이 취급하는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등 현황〉

(단위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로자햇살론 ¹⁾ (2016년~)	순대위변제율 ³⁾	10.4	12.1	12.7	12.4
	회수율 ⁴⁾	20.9	20.7	22.3	24.6
햇살론15(17) ²⁾ (2019년 9월~)	순대위변제율	15.5	21.3	25.5	26.8
	회수율	6.6	7.7	9.6	11.7
햇살론유스 (2020년 1월~)	순대위변제율	4.8	9.4	12.7	13.6
	회수율	5.0	5.3	7.2	9.7
햇살론뱅크 (2021년 7월~)	순대위변제율	1.1	8.4	16.8	17.1
	회수율	0.5	1.5	3.9	7.7
햇살론카드 (2021년 10월~)	순대위변제율	6.1	12.3	17.8	22.2
	회수율	2.8	4.7	6.9	9.3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022년 9월~)	순대위변제율	0.01	14.5	26.8	28.8
	회수율	-	0.7	2.8	5.4

주1) 근로자햇살론Ⅱ(2016년~2025년)

주2)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15(1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합산

주3)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주4) 회수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각 연도별로 보증공급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가 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이 신설된 2022년의 공급액 1,002억원의 53.2%에 해당하는 533억원에 대해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회수액 43억원을 제외한 순부실률은 48.9%에 해당하는 등 상품의 부실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도별 공급액 기준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증공급액(A)	1,002	2,924	1,935	2,962
대위변제액(B) (해당연도 보증공급액 기준) ¹⁾	533	1,327	556	271
대위변제회수액(C) (해당연도 보증공급액 기준) ¹⁾	43	84.9	15.8	1.8
대위변제율(B/A)	53.2%	45.4%	28.7%	9.1%
순대위변제율 [(B-C)/A]	48.9%	42.5%	27.9%	9.1%

주1) 각 연도에 보증공급한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액 또는 대위변제회수액을 의미(예를 들어, 2022년도에 1,002억원을 공급한 경우 2022년도 이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 금액 및 해당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설정하되, 정상상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를 매년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인원의 비중이 약 17%에 미치지 못하는 등 향후 부실률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존재함.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현황〉

(단위: 명, %)

상환기간	성실상환 금리인하	인원 수	비중
3년	인하	13,303	16.9
3년	미인하	65,209	83.1
소계		78,512	100.0
5년	인하	34,899	16.7
5년	미인하	174,431	83.3
소계		209,330	100.0
합계		48,202 (전체 287,842)	16.7

주: 2022. 9. 1. ~ 2025. 12. 31. 기간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용자 기준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동 사업은 2025년 말 공급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햇살론 15와 통합된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공급된 보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부실률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정부 출연금을 통해 대위변제를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²⁸⁾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67억 6,500만원 중 3,467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을 99.9%)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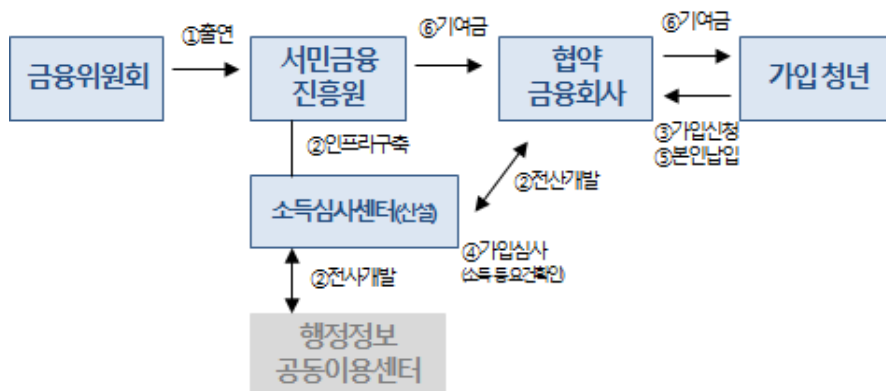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347,015	40	△290	346,765	346,758	-	7	124,185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28)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 동 상품의 기본구조는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협약은행²⁹⁾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3.0%~6.0%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³⁰⁾을 제공하는 것임.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2025년도까지 종료하고,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였음.

29)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1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5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6%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일반형),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³¹⁾한 청년의 경우 보다 강화된 12%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우대형).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② 총 급여 7,500만원 이하³²⁾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③ 가구 중위소득³³⁾ 200% 이하인 사람임.
-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단축된 3년이고, 본인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³⁴⁾하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었음.

31)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연도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여야 함(이직은 2회까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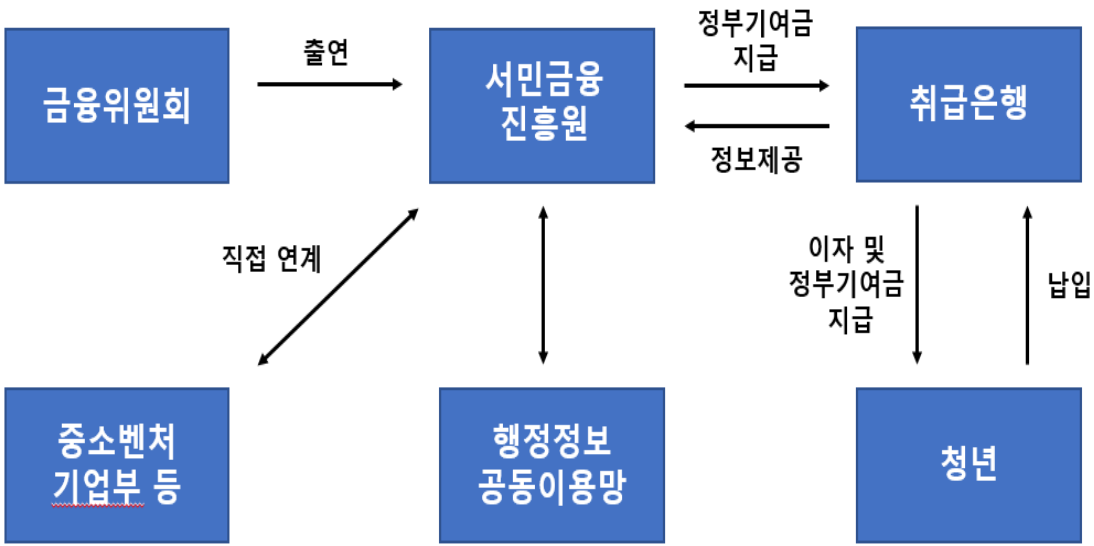
32) 단,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 예정

33) 2025년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원)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34) 기본금리 5.0% 적용(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3~2.3%p, 소득플러스우대금리 0.5%p, 청년 재무상담 이수 시 0.2%p 가산 적용)

〈청년미래적금 사업 운영구조〉



· 중소기업 근속여부 정보
· 소상공인 매출액 정보 등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기여금 지원 출연금의 과도한 진흥원 유보 개선 필요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용자가 매월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매칭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구체적으로,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매월 이용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해당 은행의 계좌³⁵⁾에 입금한 후 이를 매월 정산하여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2025년도에는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36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진흥원으로 출연되었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기여금 지원	336,804	336,804	100.0	진흥원 출연
인프라 구축	9,707	9,707	10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504	247	49.0	직접 수행
합계	347,015	346,758	99.9	

(자료: 금융위원회)

35)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별도 개인계좌 개설

□ 기여금 지원을 위한 진흥원 출연금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한 2023년 이후 진흥원이 기여금을 지급한 실제 집행액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이 교부되어 왔음.

○ 2023년의 경우 3,440억 3,7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전액 진흥원에 교부하였으나, 진흥원이 실제 기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432억 2,200만원에 불과하였고, 출연금 중 집행 잔액 3,008억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4년의 경우에도 3,590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3,029억 9,300만원을 진흥원에 교부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038억 800만원 중 2,843억 2,900만원을 실제 기여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3,194억 7,900만원은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5년에는 3,368억 400만원을 진흥원에 교부하고, 진흥원은 기여금 지원을 위해 4,019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기존에 이월된 출연금으로 인해 진흥원에는 집행잔액 2,543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6년도로 이월되었음.³⁶⁾

36) 금융위원회는 실제 가입수요는 자산시장 등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유 있게 재원을 운영하여야 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예산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2023년	344,037	344,037	-	344,037	43,222	300,815
2024년	359,043	302,993*	300,815	603,808	284,329	319,479
2025년	336,804	336,804	319,479	656,283	401,911	254,372

*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부족으로 56,050백만원 내역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집행잔액 외에도, 집행실적 대비 과도한 출연금이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액 341억 7,400만원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로 발생한 환수액 798억 6,200만원 등 1,140억 3,600만원이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음.

〈청년도약계좌 환수액 및 이자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환수액	이자수입액	합계
2023년	1,557	6,298	7,855
2024년	24,153	13,237	37,390
2025년	54,152	14,639	68,791
합 계	79,862	34,174	114,036

(자료: 금융위원회)

- 국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집행가능성이 없는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로 발생한 기여금 환수액을 국고로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경우에도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규모에 비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대규모의 유보금이 발생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기여금 지원을 위해 출연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자수입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로 인한 환수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유보금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흥원과 금융위원회는 현재 유보되어 있는 금액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흥원 내규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³⁷⁾을 제정³⁸⁾하였으며,

37)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 제7조(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①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의 출연금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해당사업의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②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연도 내에 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을 고려한 최종 집행잔액을 정산한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국고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

동 내규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종료한 이후 최종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할 예정이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집행잔액 및 이자 또는 환수액을 국고로 사전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내규에서는 출연사업이 종료된 이후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되,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잔액의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반납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연사업이 종료 하는 해 이전에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38) 2024. 12. 13. 제정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³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8억 4,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05	1,559	290	-	1,849	1,849	-	-	1,906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⁴⁰⁾에 따

39)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4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옹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채무자는 대리인 선임 시 대부계약·추심행위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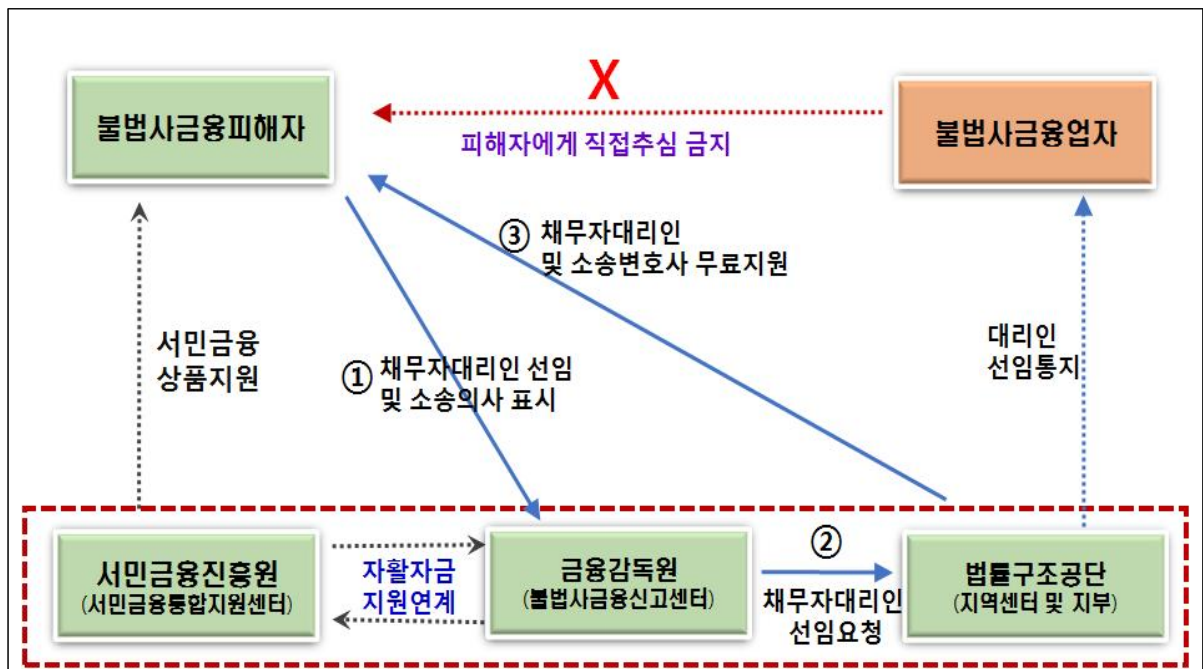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 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리인 선임” 사업의 경우 채무자들의 소득 등과 관계 없이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의 경우 1인 중위소득 125%⁴¹⁾ 이하가 지원 대상임.

2) 검토의견: 면밀한 수요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2025년 신청양식 개선, 신청창구 및 전담인력 확대 등 제도개선과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⁴²⁾에 맞춘 집중 홍보 등에 따라 지원건수가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1,08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지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말
신청건수 ¹⁾ (A)	1,252	5,657	5,225	3,760	3,489	12,162	9,077
지원건수 ²⁾ (B)	919	4,841	4,510	3,249	3,096	11,083	8,387
지원비율(B/A)	73.4	85.6	86.3	86.4	88.7	91.1	92.4

주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첩+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접수(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주2) 소송구조, 소송전구조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41) 2025년 기준 약 299만원

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1.21. 일부개정, 2025.7.22. 시행) 주요 내용: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 전체 무효,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 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 상향 등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463	442	412	736	902	896	1,344	1,264	1,284	948	1,218	1,041	10,950
부수사건 소송대리	-	42	-	-	1	-	-	76	1	2	-	-	122
채무자관계인 지원	3	-	-	-	-	-	-	1	2	-	-	5	11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12억 500만원을 추경을 통해 15억 5,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전용⁴³⁾을 통해 예산현액을 18억 4,900만원으로 확대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및 전용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억 4,5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이를 2026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미지급금 내역〉

구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채무자관계인 지원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합계
2025년	2,183건	4건	44건	445백만원
(2026년 지급)	435백만원	0.7백만원	1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43)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전용 사유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전용 (‘25.10.1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1831-882)	210-14	250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320-01	290	지원실적 급증으로 인한 지원예산 부족
		260-02	40				

□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은 1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미지급금 4억 4,500만원을 지급한 데 더하여 2026년 상반기 지원실적도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6월말 기준 이미 14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0%)되어 2026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는 전용을 통해 일부 해결하고 부족분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2026년 6월말 기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906	1,906	-	-	1,906	1,429	75.0	-	-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1,344	1,159	1,477	1,457	1,165	1,679	8,281
부수사건 소송대리	1	-	1	-	1	2	5
채무자관계인 지원	-	-	28	25	26	21	100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원실적의 변동에 따라 불용과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및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D)]	집행률 (C/A)	실집행률 (D/B)	불용액	미지급금
	본예산	추경(A)							
2020	1,150	1,150	-	1,150	164 [164]	14.3	14.3	986	-
2021	604	604	-	604	604 [604]	100.0	100.0	-	533 (2022년 지급)
2022	1,144	1,144	-	1,144	1,144 [1,144]	100.0	100.0	-	274 (2023년 지급)
2023	886	886	-	886	886 [886]	100.0	100.0	-	18.7 (2024년 지급)
2024	1,255	1,255	-	1,255	628 [571]	50.0	45.5	627	-
2025	1,205	1,559	290	1,849	1,849 [1,849]	118.6	100.0	-	445 (2026년 지급)
2026.6.	1,906	1,906	-	1,906	1,429 [1,429]	75.0	75.0	-	집행중 (미지급금 발생 예상)

(자료: 금융위원회)

-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인지도 저조 등으로 예산 11억 5,000만원 중 1억 6,400만원(14.3%)만을 집행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 이후 2021년부터 지원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지원(구조) 결정시에서 지원 종료시로 늦추고(보조금 지급시점 6개월 연기) ② 송달료 등 실비 미집행액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2021년에는 7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5억 3,300만원을 2022년에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9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2억 7,400만원을 2023년에 집행하였음.

- 이에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연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미지급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⁴⁴⁾

○ 한편, 2023년도 미지급금 1,870만원이 2024년에 집행되면서 미지급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 예산의 실집행률은 45.5%로 상당히 부진하였음.

-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⁴⁵⁾

○ 이처럼 동 사업은 2024년에는 실집행률이 45.5%에 그쳐 6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2025년에는 지원실적 증가에 대응하여 추경과 전용을 실시하고도 다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집행부진과 예산 부족이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음.

44)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금융위원회는 향후 연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미지급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45)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불법추심 등 변화하는 범죄수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서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불용시킨 바, 향후 실효성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금융위원회는 향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규모 불용이나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산업은행 출자사업 총괄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정책모펀드 구성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을 통해 출자하기 위한 사업과 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5년 예산현액 8,912억원이 전액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6년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 모펀드 구성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176,200	176,200	-	-	-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50,000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35,000	35,000	35,000	35,000	-	-	-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	-	-
	산업은행출자 (국민성장펀드)	-	-	-	-	-	-	1,000,000
기업 저리대출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프로그램)	250,000	450,000	450,000	450,000	-	-	-
	산업은행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100,000	100,000	100,000	-	-	-
합계		591,200	891,200	891,200	891,200	-	-	1,050,0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모펀드 회수재원을 고려한 출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제도화 필요

□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재정을 출자함으로써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에서는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⁴⁶⁾ 방식의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25년 말 기준으로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혁신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의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 출자된 재정 규모는 총 2조 9,937억원(예산액 기준)에 달함.

〈한국산업은행 경유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모펀드명	예산반영기간 (계획)	총 재정투입액 (~'25)	2026 예산	모펀드 청산시기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일반회계)	성장지원펀드	2018-2020년	3,200	-	2033.6.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소부장특별회계)	소부장 혁신펀드	2020-2021년	4,400	-	2035.4.
산업은행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 혁신펀드	2020-2021년	1,425	-	2036.6.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	뉴딜펀드	2021-2022년	11,100	-	2047.6.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	2023-2027년	7,162	-	2040.3.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2028년	2,000	500	2054.4.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2025-2027년	300	-	2040.6.

46)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한경 경제용어사전)

사업명	모펀드명	예산반영기간 (계획)	총 재정투입액 (~'25)	2026 예산	모펀드 청산시기
산업은행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원전산업 성장펀드	2025년	350	-	2040.6.
산업은행출자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2026-2030년	-	10,000	2041.4.
합 계			29,937	10,500	

주1) 각 년도 예산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 재정모펀드에는 자펀드 청산 및 투자금 회수 등에 따라 회수 재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누적 회수액은 총 7,320억원으로 나타남.

이 중 2,494억원은 2026년 4월 특별배당을 통해 국고에 반환⁴⁷⁾되었고, 1,838억원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되었음⁴⁸⁾. 이에 따라 별도의 국고 반환 또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수 재원 규모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2,988억원⁴⁹⁾에 달하고 있음.

○ 산업은행에 따르면 회수재원 2,988억원에 대한 2026년 중 추가 재투자 계획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임.

47) 산업은행은 회수재원을 직접 국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저하, 「상법」 상 채권자 보호절차(채권자에게 이의 제출 기간 공고 등) 이행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부담(이의제출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에 산업은행(정부가 지분 100% 보유)은 2026년 4월 모펀드 회수재원 2,494억원을 특별배당 방식으로 정부에 반환하였음.

- 일반배당 : 6,312억원 (당기순이익 × 36.8(배당성향))

- 특별배당 : 2,494억원 (모펀드 회수재원)

48) 혁신성장펀드의 연도별 예산이 당초 연 3,000억원의 조성계획에 미달함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투자

49) 해당 회수액에는 원금 회수액 5,620억원 외 투자이익 1,700억원이 포함됨. 산업은행은 1,700억원은 평가이익에 계상됨에 따라 일반 배당 또는 이익 실현 시 법인세로 일부 국고에 반환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 밖에도 모펀드 보수 등 운용 비용 지출을 위하여 회수재원에서 일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정책펀드 회수액^{주1, 2)}>

(단위: 억원)

구 분	성장 지원	소부장	구조 혁신 ^{주3)}	뉴딜	혁신 성장 ^{주5)}	지역 활성화	반도체	원전	합계
총 재정투입액	3,200	4,400	1,425	11,100	9,000	2,500	300	350	32,275
누적 회수액 ^{주2)} (A)	2,199	1,872	392	2,686	167	4	-	-	7,320
회수액 중 국고반납액 ^{주3)} (B)	360	517	236	1,336	45	-	-	-	2,494
회수액 중 재투자액 ^{주4)} (C)	1,089	584	-	165	-	-	-	-	1,838
잔액 (회수재원) (A-(B+C))	750	771	156	1,185	122	4	-	-	2,988

주1) 2026. 7월 말 기준

주2) 회수액은 자펀드 청산 및 투자금 회수 등으로 인해 모펀드로 분배된 금액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 요건(2인 이상 투자) 충족을 위해 해당 모펀드에 출자한 재정 외 산은캐피탈 등 소수 지분(구조혁신 2%, 그 외 0.1% 이내 수준) 앞 분배될 금액이 포함됨.

주3) 2026. 4. 27. 특별배당으로 국고에 반환된 금액

주4) 2024년 및 2025년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된 금액

주5) 혁신성장펀드의 연도별 신규 예산은 2023년 3,000억원, 2024년 2,400억원, 2025년 1,762억원으로 총 7,162억원이며, 계획(매년 3,000억원 출자) 대비 부족한 금액은 상기 주식4 재투자액 1,838억원으로 충당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 회수재원이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모펀드에 유보될 경우, 해당 재원이 적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 자금으로 잔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정책펀드 회수재원의 재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회의 재정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이 2026년 개정⁵⁰⁾되어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 「국가재정법」은 재정모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⁵¹⁾,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 회수재원 및 투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재투자 계획,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회수재원의 재투자가 국회의 별도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활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확보하는 한편,

회수재원의 발생, 보유 및 실제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재원이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임.

50) 「국가재정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19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0.>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1) 자펀드 청산금의 재투자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까지 현재 모펀드에 잔존하고 있는 회수재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모펀드에 잔존하고 있는 회수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산업은행 출자사업 예산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이미 기존 회수재원을 별도로 특별배당 등을 통하여 국고에 반환하는 불필요한 자금 순환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 중인 회수재원을 가장 신속하게 정책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향후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회수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회수재원의 재투자 및 활용에 관한 상시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원의 장기간 유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펀드 출자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재 모펀드에 잔존하는 회수재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규 정부출자 소요에서 차감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²⁾.

52)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 기관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편성 방식 참조

- 참고로, 산업은행에 따르면 2027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모펀드 회수
예상 재원(원금 기준)은 총 1조 7,2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원금 회수흐름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22	'23	'24	'25	'26(E)	'27~'31(E)	'32(E)~	합계	만기
성장지원펀드	536	310	317	286	469	1,278	-	3,196	2033년
소부장혁신펀드	172	197	514	219	1,761	1,536	1	4,400	2035년
기업구조혁신펀드	10	23	149	58	33	1,177	-	1,450	2036년
뉴딜펀드	2	30	190	1,278	1,253	6,142	2,205	11,100	2047년
혁신성장펀드	-	-	2	43	95	4,654	4,206	9,000	2040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	-	-	523	1,977	2,500	2054년
반도체생태계펀드	-	-	-	-	-	161	139	300	2040년
원전산업성장펀드	-	-	-	-	-	105	245	350	2040년
국민성장펀드	-	-	-	-	-	1,716	2,784	4,500	2041년
소 계	720	560	1,172	1,884	3,611	17,292	11,557	36,796	
누적 합계	720	1,280	2,452	4,336	7,947	25,239	36,796		

주 1) 2026년 이후 원금 회수 예상치는 시장환경 및 자펀드 회수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2)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 요건(2인 이상 투자) 충족을 위해 해당 모펀드에 출자한
재정 외 산은캐피탈 등 소수 지분(구조혁신 2%, 그 외 0.1% 이내 수준) 앞 분배될 금액이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7.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⁵³⁾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⁵⁴⁾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 산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용 등	예 산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본 예산	추 경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50,000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⁵⁵⁾을 마련하여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음.

53) 세부사업명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54)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의미

55)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2023. 7. 12.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⁵⁶⁾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⁵⁷⁾,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⁵⁸⁾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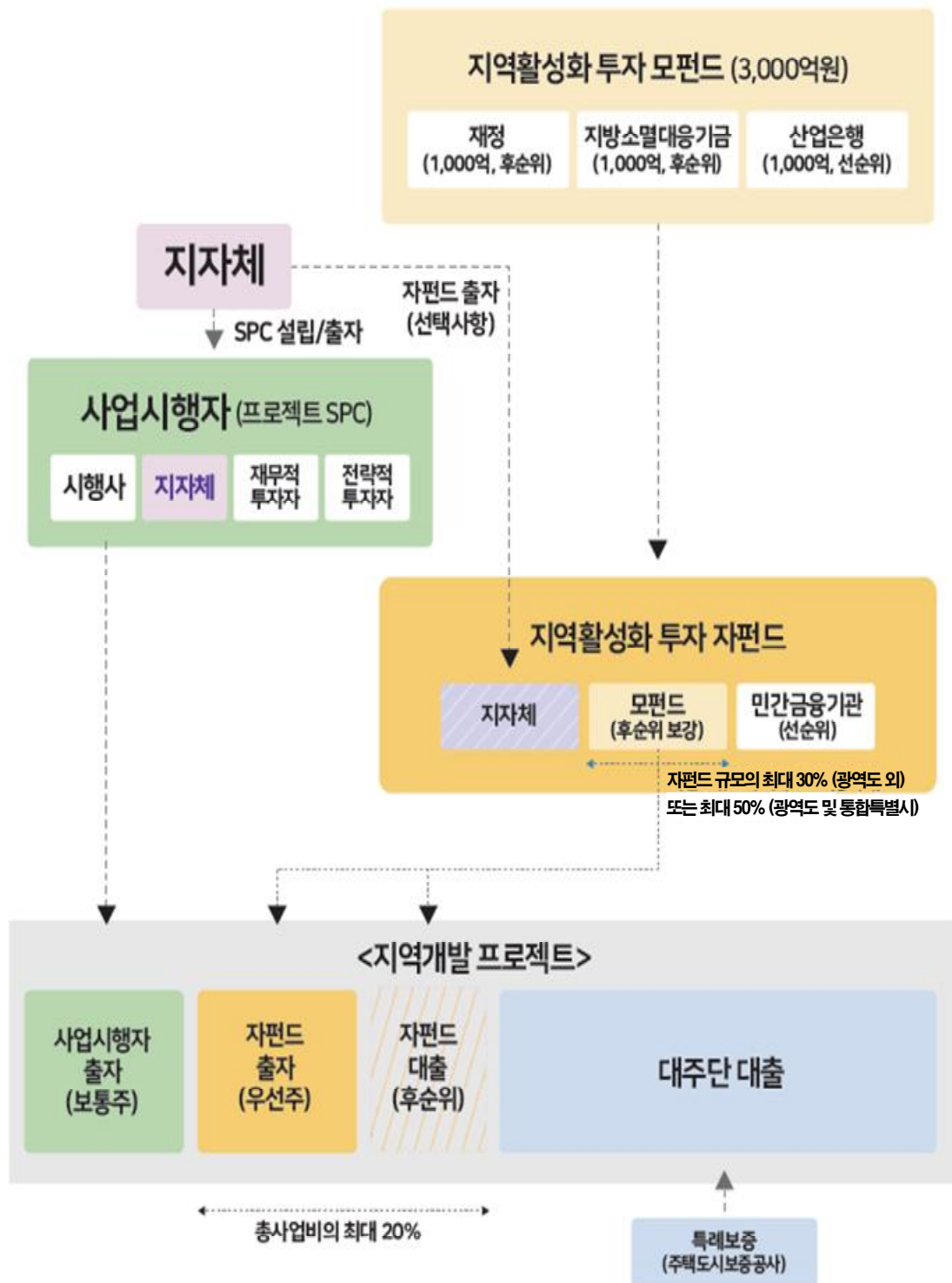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됨.

56)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57) 모펀드는 광역도 외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광역도 및 통합특별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8)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 조치 주요내용」)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



(자료: 기획예산처)

- 2026년 7월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2024년 5개, 2025년 3개, 2026년 1개)하여 투자를 추진 중에 있음.
- 2024년에는 ①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680억
원), ②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임직원 신규 주거시설 건립,
876억원), ③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④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8,191억원), ⑤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스마
트팜 단지, 900억원)의 5개 프로젝트를,
- 2025년에는 ①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7,200억원), ② 장성 첨단데이터
센터(3,959억원), ③ 태안 Seed Farm(177억원)의 3개 프로젝트를,
- 2026년에는 포항 AI 데이터센터(6,000억원)의 1개 프로젝트를 선정
하였음.

2) 검토의견: 자펀드 결성 지연 등에 따른 모펀드 유보금 과다

- 동 사업은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민간투자자 모집 등이 지연
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이 재정모펀드 계정에 유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7월 기준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선정된 5개 프로젝트 중 4건의 경우 재
심사⁵⁹⁾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에 비로소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으며, 1건(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여전히 사
업 내용 변경(가스 공급 계약 관련 협의 지연)으로 재심사 중에 있음.

2025년 선정된 3개 프로젝트 중 2건(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태안 Seed
Farm) 또한 현재까지 각각 민간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융조건 협의 등
으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

(단위: 억 원)

선정 연도	지역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선정일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 ^{주1)}	자펀드 실제 결성일	총사업비
2024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1차) 2024.2.16. (2차) 2024.11.26.	(1차) 2024.12.19. (2차) 2025.9.29.	2025.9.26.	680억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1차) 2024.2.22. (2차) 2024.11.26. (3차) 2025.1.23.	(1차) 2024.12.24. (2차) 2025.9.29. (3차) 2025.8.24.	2025.8.21.	876억원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024.8.29.	2025.4.2.	2025.2.28.	1조 4,362억원
	경북 경주	강동 수소 연료전지발전	(1차) 2024.11.26. (2차) 재심사 중	(1차) 2025.9.29. (2차) 재심사 중	재심사 중	8,191억원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차) 2024.12.24. (2차) 2025.9.26.	(1차) 2025.4.24. (2차) 2026.5.3.	2026.4.9.	900억원

59) 자펀드 결성 기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거쳐 3개월씩 2회, 총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자펀드 운용사가 제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안할 경우 기존 결성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선정 연도	지역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선정일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 ^{주1)}	자펀드 실제 결성일	총사업비
2025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025.11.4.	2026.8.28. ^{주2)}	결성 중	7,200억원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025.11.4.	2026.3.7.	2025.12.10.	3,959억원
	충남 태안	Seed Farm	2025.11.28.	2026.10.1.	결성 중	177억원
2026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2026.7.28.	2026.8.28.주2)	결성 중	6,000억원

주 1) 자펀드 결성 기한은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개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연장된 경우, 연장된 결성 기한으로 표기

주 2) 투자 예정 모펀드(2024년 모펀드)의 투자가능기간(2026.8.28일) 내 결성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2026년 7월 기준으로 결성된 자펀드에서 개별 프로젝트로의 투자액은 총 1,757억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모펀드에서 자펀드로 출자된 금액은 총 894억원⁶⁰⁾에 불과함.

○ 2024년 프로젝트의 경우 ①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78억원, ②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에 934억원으로 총 1,012억원이 투자되었고, 2025년 프로젝트의 경우 장성 첨단데이터센터 사업에 745억원이 투자되었음. 나머지 사업의 경우 자펀드 미결성 또는 PF 대출 모집 등에 따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60) 298억원 × 3 = 894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약정액 및 투자액 현황〉

(단위: 억원)

지역명	프로젝트명	총사업비	모펀드 약정액	자펀드		
				결성여부	약정액	투자액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680	68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136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	39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78	78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4,362	1,435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2,872	934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 전기발전소	8,191	786	재심사 중	1,572	-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900	90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180	-
경남 거제	채류형 숙박시설	7,200	420	결성 중	840	-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3,959	372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745	745
충남 태안	Seed Farm	177	18	결성 중	35	-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6,000	658	결성 중	1,315	-
합 계		42,345	3,886	-	7,773	1,757

(자료: 금융위원회)

□ 결과적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계정에서 지역
활성화투자 모펀드로 투입된 자금은 298억원에 불과하여 총 2,202억
원⁶¹⁾이 계정에 유보되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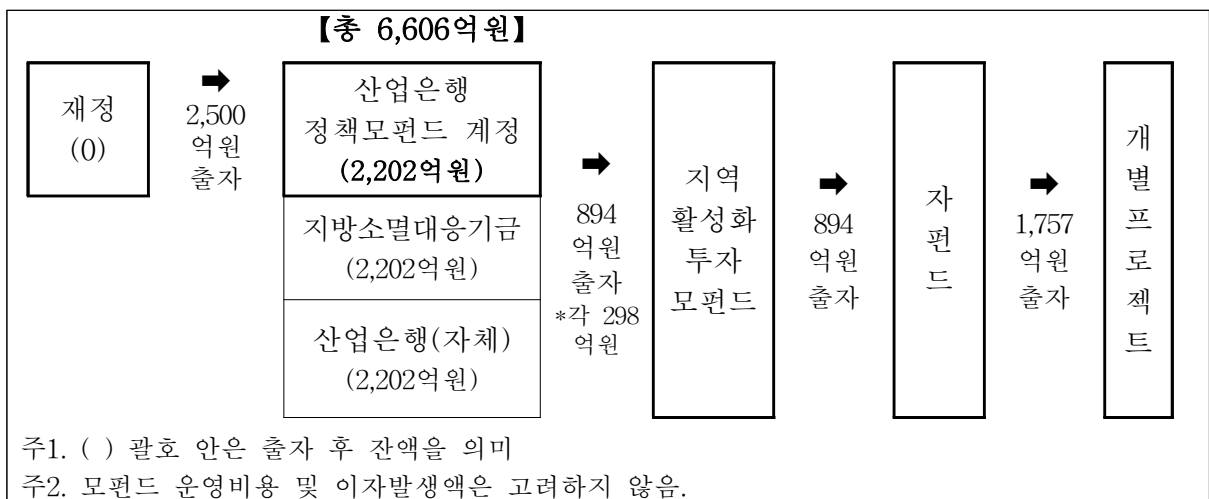
특히,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유보금과 산업은행
미투자한도⁶²⁾를 합하면 총 6,606억원에 달함.

61) 2,500억원(2024~2025년 각 1,000억원, 2026년 500억원 정부 출자) - 298억원 = 2,202억원

62)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2024~2025년 1,000억원씩 출자,
2026년의 경우 500억원 출자)

- 출자금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 현재까지 2,500억원(2024~2025년 각 1,000억원, 2026년 500억원)이 전액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계정에 출자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자체) 계정에도 동일 금액이 출자되었음.
- 위 3개 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로 2026년 7월까지 각 298억원⁶³⁾을 출자하였으며, 이에 각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은 출자금 누적액 2,500억원에서 298억원을 차감한 2,202억원임.
- 한편,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는 각 계정에서 받은 출자금을 합하여 자펀드에 총 894억원⁶⁴⁾을 출자하였으며, 자펀드는 민간투자자 출자금 894억원⁶⁵⁾을 합하여 총 1,757억원을 개별 프로젝트에 출자하였음.

< 2024~2026년 출자금 현금 흐름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63) 대규모 지역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한 번에 납입하지 않고, 투자 집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출자자)에게 자금을 요청해 납입받는 수시납(캐피탈 콜, Capital Call) 방식

64) 298억원 × 3 = 894억원

65) 모펀드는 자펀드 규모의 최대 50%(도 기준) 출자 가능

□ 이와 같이 과도한 유보금이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계정에 유보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자 협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사업선정 이후 민간투자자 모집, 자펀드 결성을 거쳐 실제 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여건 등을 보다 충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사업 선정 및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도 인·허가, 민간자금 모집, 자펀드 결성 등 주요 추진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정모펀드 계정으로의 출자를 연기하는 등 재정자금이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66)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및 R&D투자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500억원이 전액 집행(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	450,000	45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은 정부 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20.4조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임,

66)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2)

〈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요 〉

(운용 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운용 기간) 2025년 ~ 2027년(3년)

* 2024.7월부터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중

(지원 규모)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20.4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 2027년	합계	
	본예산	추경		당초	추경포함
운용규모	42,500	76,500	127,500	170,000	204,000
현금출자	2,500	4,500	7,500	10,000	12,000

* 현금출자와 동일한 규모의 현물출자 예정

(지원 대상) 국내에 신규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

(자금 용도) 설비, 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 지원,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지원

(대출한도)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후순위채 등 보완자본)×25%

(금리 조건) 국고채+가산금리(이용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 등에 따라 산업은행 조달금리 이하인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 가능)

*일반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정부는 동 사업 예산을 통한 현금출자 규모를 2,500억원(운용 규모 : 4조 2,5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금출자 규모를 4,500억원(운용 규모 : 7조 6,500억원)으로 확대하였음.

2) 검토의견

(1) 최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승인 집중 문제

□ 2026년 7월 말 기준 동 프로그램의 대출 승인액은 7조 6,402억 원으로, 당초 조성규모 7조 6,500억 원의 99.9%가 대출 승인되었음.

□ 다만, 동 사업의 대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8개 대기업에 대하여 전체 대출 승인액(7조 6,402억 원) 중 68.5%(5조 2,330억 원)이 승인되는 등 동 프로그램의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 전체 82개 지원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8개 기업으로 9.8%에 불과하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액은 5조 2,330억 원으로 68.5%를 차지하였으며, 실제 대출 실행액은 4조 8,095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였음.

○ 반면 중소기업은 37개 기업으로 전체 82개 지원기업의 45.1%를 차지하였으나, 대출 승인액은 6,539억 원(8.6%), 실제 대출 실행액은 2,651억 원(4.5%)에 불과하였음.

□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신용도가 매우 높은 최우량 및 우량 등급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승인액 7조 6,402억 원 중 최우량(AAA) 등급 대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액은 3조 6,000억 원으로 47.1%에 달하며, 우량(AA) 등급 이상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5조 330억 원으로 65.9%에 달함.

〈 기업규모별 대출 실적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중)	8 (9.8%)	37 (45.1%)	37 (45.1%)	82 (100.0%)
대출 승인액 (비중)	52,330 (68.5%)	17,533 (22.9%)	6,539 (8.6%)	76,402* (100.0%)
대출 실행액 (비중)	48,095 (80.7%)	8,836 (14.8%)	2,651 (4.5%)	59,582 (100.0%)

주) 중견기업 1개 社 앞 98억원(후공정) 한도 배정 후 현재 승인 진행 중

(자료: 금융위원회)

〈 대출승인액의 기업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단위: 억원)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최우량 AAA	36,000 (47.1%)	- (-)	- (-)	36,000 (47.1%)
우량 (AA+~AA-)	14,330 (18.8%)	8,032 (10.5%)	2,930 (3.8%)	25,292 (33.1%)
양호 (A+~A-)	1,300 (1.7%)	8,142 (10.7%)	2,623 (3.4%)	12,065 (15.8%)
보통 (BBB+~BBB-)	700 (0.9%)	1,159 (1.5%)	872 (1.1%)	2,731 (3.6%)
투기적 (BB+~BB-)	- (-)	200 (0.3%)	114 (0.1%)	314 (0.4%)
합계	52,330 (68.5%)	17,533 (22.9%)	6,539 (8.6)	76,402* (100.0%)

주) 중견기업 1개 社 앞 98억원(후공정) 한도 배정 후 현재 승인 진행 중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최우량 등급 대기업에 동 프로그램의 지원이 집중된 것은 타 프로그램과 달리 기업별·건별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국가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대기업에 산업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동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최우량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또는 민간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고, 특히 202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⁶⁷⁾에서 정부 재정을 통하여 최저 국고채 수준까지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67)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1Q	2Q	상반기 계
삼성전자	327,260	436,011	572,328	894,924	1,467,252
SK하이닉스	234,673	472,063	376,103	605,426	981,52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따라서 향후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우대금리 차등을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대출의 자원 변경에 따른 구축(Crowding-out) 효과 고려 필요

- 산업은행은 동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을 통하여 2조원 규모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I’(이하 ‘자체 프로그램’이라 함)을 운영하였음.
- 자체 프로그램과 2025년 정부 출자를 통한 동 프로그램은 모두 신규 투자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및 R&D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 지원대상 등 지원조건이 동일하였음.
- 다만 자체 프로그램은 최대 1.40%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 반면, 동 프로그램은 정부 출자를 통해 최저 국고채 수준까지 금리를 우대하도록 설계되었음.
- 실제 각 프로그램의 평균 적용금리를 보면 자체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경우 3.32%,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74%였으나, 동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경우 2.68%,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60%로, 각각 평균적으로 0.64%p 및 1.14%p 낮은 수준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였음.

〈 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과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비교 〉

구분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I (자체재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재정연계)
지원대상	국내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전분야 기업 (소재·부품·장비 포함)	
자금용도	시설자금(설비투자, R&D투자)	
운용규모	2조원	7.65조원
출시일	2024. 7. 1.	2025. 1. 24.
운용기간	재정연계 프로그램 출시 전까지 운용	한도 소진 시까지 운용
적용금리	최대 △1.40%p 우대	
	최저 국고채 수준	
	구분	평균 적용금리
	대기업	3.32
	중견·중소	3.74
	구분	평균 적용금리
	대기업	2.68
	중견·중소	2.60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2024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승인된 대출 9,205억원 (46.0%, 20개 기업)이 2025년 정부 출자를 통한 동 프로그램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기업들은 정부 출자 이전에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승인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재원 변경에 의하여 대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데 그쳤을 뿐, 기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조달이 구축(Crowding-out)된 측면이 있음.

□ 특히, 프로그램 재원이 변경된 기업별 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한 대기업(2개 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액 5,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우수한 대기업에 15년(만기) 동안 매년 32억원 수준⁶⁸⁾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경감해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프로그램 자원 변경 기업별 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분 (단위:억 원)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최우량 AAA	- (-)	- (-)	- (-)	- (-)
우량 (AA+~AA-)	5,100 (55.4%)	1,040 (11.3%)	150 (1.6%)	6,290 (68.3%),
양호 (A+~A-)	- (-)	650 (7.1%)	470 (5.1%)	1,120 (12.2%)
보통 (BBB+~BBB-)	- (-)	1,040 (11.3%)	687 (7.5%)	1,727 (18.8%)
투기적 (BB+~BB-)	- (-)	- (-)	68 (0.7%)	68 (0.7%)
합계	5,100 (55.4%)	2,730 (29.7%)	1,375 (14.9%)	9,205 (100.0%)

(자료: 금융위원회)

68) 5,100억원 × (3.32%(기존 프로그램 대기업 평균 금리) - 2.68%(동 프로그램 대기업 평균 금리))
= 매년 32억 6,400만원

□ 따라서 향후 정부 출자를 통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이미 대출 승인이 완료된 기존 대출의 재원 변경은 구축효과를 유발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⁹⁾.

69)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먼저 지원한 이후 재정 프로그램으로 재원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9.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⁷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과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재원 특별프로그램)	-	100,000	-	-	100,000	10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25%) 발표 이후 불확실성 극대화 및 대미 수출 감소 우려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 및 관세피해기업 대상 저리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

70)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4)

□ 동 사업은 총 4조원 규모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① 반도체 외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및 R&D투자 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하고,
- ② 관세 피해 예상 기업에 운영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하였음.

- 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은 반도체설비투자과 동일하게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고,
- ② 관세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0%p를 감면한 금리로 지원하였음.

<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개요 >

구분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대상 산업	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AI 등 첨단전략산업	관세 피해 예상 중소 중견기업 등
용도	설비투자 자금 (신규 설비투자 및 R&D 투자)	운영자금
지원규모	1조원	3조원
금리 수준	최저 국고채 수준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0%p
대출 만기	15년 이내	1년 이내
추경금액	500억원 현금 출자	500억원 현금 출자

주)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개요는 프로그램 개편 이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2026년 7월 말 기준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대출 승인액은 1조원으로, 당초 조성규모 1조원의 대출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음.

□ 다만, 동 사업의 대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4개 대기업에 3,650억원 (36.4%), 16개 중견기업에 4,895억원(49.0%), 9개 중소기업에 1,455억원 (14.6%)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대출 실적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중)	4 (13.8%)	16 (55.2%)	9 (31.0%)	29 (100.0%)
대출 승인액 (비중)	3,650 (36.4%)	4,895 (49.0%)	1,455 (14.6%)	10,000 (100.0%)
대출 실행액 (비중)	2,680 (37.0%)	3,353 (46.3%)	1,205 (16.7%)	7,238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신용등급별 승인실적을 보면 3,650억원(36.4%)의 대출을 승인받은 4개 대기업의 경우 모두 신용등급이 양호(A)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승인액의 기업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단위:억 원)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최우량 AAA	-	-	450 (4.5%)	450 (4.5%)
우량 (AA+~AA-)	2,000 (20.0%)	1,825 (18.3%)	260 (2.5%)	4,085 (40.8%)
양호 (A+~A-)	1,650 (16.5%)	2,110 (21.1%)	236 (2.4%)	3,996 (40.0%)
보통 (BBB+~BBB-)	-	960 (9.6%)	509 (5.1%)	1,469 (14.7%)
합계	3,650 (36.5%)	4,895 (49.0%)	1,455 (14.5%)	10,0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한다는 당초 프로그램의 취지, 대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하므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 등급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지원할 필요성은 중소·중견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우대금리 차등을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연도 중 프로그램 확대 개편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당초 관세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25년 8월 말까지 대출승인액은 150억원(4개 기업), 실행액은 130억원에 불과하였음.

□ 이에 산업은행은 2025년 9월부터 지원대상을 대기업과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계열대기업에는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음.

〈 2025년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개편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 관세 부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 관세 부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품목관세 부과 대상 기업 -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
지원 한도	(중소) 30억원 (중견) 50억원	(중소) 300억원 (중견) 500억원 (계열대) 1,000억원
지원 금리	기준금리 대비 최대 $\Delta 0.20\%p$	기준금리 대비 최대 $\Delta 0.50\%p$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하여 산업은행은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의 본격적인 발효에 따라 기업 피해 확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⁷¹⁾.

□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2026년 7월 기준 기업 규모별 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편을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대기업 (17개 기업)의 대출 승인액이 3조원 중 6,661억원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승인액은 12.3%인 3,688억원(80개 기업)에 불과함.

〈 기업규모별 대출 실적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중)	17 (7.7%)	125 (56.3%)	80 (36.0%)	222 (100.0%)
대출 승인액 (비중)	6,661 (22.2%)	19,651 (65.5%)	3,688 (12.3%)	30,000 (100.0%)
대출 실행액 (비중)	5,461 (19.0%)	19,501 (68.1%)	3,688 (12.9%)	28,65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기업당 평균 대출 승인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321.2억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46.1억원에 불과함.

71) 산업은행은 2025년 8월 상호관세가 발효되었고,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본격화되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는 입장임.

〈 기업규모별 평균 대출 현황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17	125	80	222
평균 대출 승인액	391.8	157.2	46.1	135.1
평균 대출 실행액	321.2	156.0	46.1	129.1

(자료: 금융위원회)

□ 즉,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관세피해 대응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반면,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대기업 등에 상당 규모의 저리자금이 지원되는 결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향후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민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⁷²⁾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⁷³⁾를 대상으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기반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5,000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분 7,000억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1조 2,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1,200,000	-	1,200,000	1,20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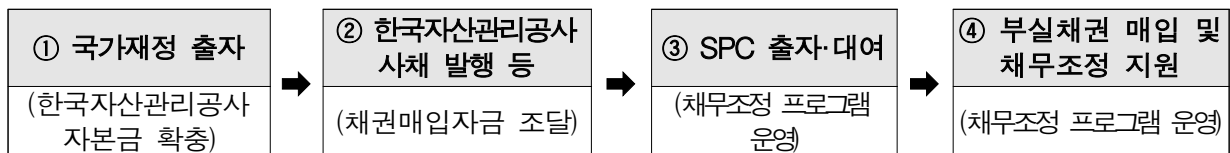
72)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73)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함.

□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사업 운영을 위해 부실(우려)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주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채권매입 소요 재원 중 예상되는 손실분만큼을 국가 재정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총 2조 9,1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되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출발기금(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였고, 출자받은 국가 재정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한 자금을 새출발기금에 대여해, 부실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새출발기금 자금 조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기준)	합계
국가재정(출자)	11,000	2,800	3,300	12,000	-	29,100
캠코차입(공사채)	-	3,600	15,600	15,500	11,000	45,700
합 계	11,000	6,400	18,900	27,500	11,000	74,800

주: 2022년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매입형’(원금 감면) 방식을,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 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중개형’(금리 인하) 방식을 적용함.

‘매입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새출발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⁷⁴⁾을 매입한 후 동 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순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임.

‘중개형’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 비교〉

구분	매입형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대상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채권)
채무조정 범위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만 감면(금리 인하방식)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 단,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

(자료: 금융위원회)

74)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임.

□ 2026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총 약정 채무액은 12조 8,816억원이며, 매입형의 경우 원금의 평균 73%, 이자의 100%가 감면되었으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평균 5.4%p의 금리가 인하되었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현황〉

(2026. 6.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약정자	약정 채무액	평균 채무감면율
매입형 (원금감면 방식)	71,768	65,931	원금의 73% 이자의 100%
중개형 (금리인하 방식)	70,053	62,885	이자율 5.4%p
합 계	141,821	128,816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철저한 사전 제도설계 및 일관성 있는 집행 필요

□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새출발기금 운용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신청기간, 채무감면 폭, 지원 대상채무 등을 조정해 왔음.

□ 2022년 제도 신설 당시에는 2020년 4월~2023년 11월 기간 중 소상공인·자영업자⁷⁵⁾로서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을 2025년 10월까지 총 30조원 매입하여 순부채의 60~80%(취약계층은 90%)를 감면하는 계획이었음.

이후 2024년 9월, 2025년 3월, 2025년 7월에 지원 대상 및 채무감면 폭 등에 대한 변경 등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6년 6월에는 감사원⁷⁶⁾의 지적에 따라 채무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30~80%로 개정하였음.

결과적으로, 2026년 6월 현재, 지원대상 기간은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되고,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총 33.4조원의 채권을 매입해, 순부채의 30~80%(취약계층·저소득층차주·취업재창업 교육이수자는 90%까지)를 감면하는 안으로 변경되었음.

75) 순자산 6.5억원 초과자 및 사행성제조업·부동산임대업·전문직종 등 제외

76)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 11.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

	종 전	2024. 9.	2025. 3.	2025. 7.	2026. 6.
채권 매입	총 30조원의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 매입계획			총 33.4조원 매입계획	
지원 대상	2020. 4.-2023. 11.	2024. 6.까지	2024. 11.까지	2025. 6.까지	
	2020.4.부터 위 기간 중 사업(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2.10.- 2025. 10.까지	2026. 12.까지			
채무 감면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		저소득차주 ⁷⁾ 90% 일괄 감면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5~30%p 축소 ⁸⁾ 1년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경우 5~10%p 추가 감면 ⁹⁾
대상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서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제외 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u>신규대출</u>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가능	단, <u>모든 차주</u> 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만기 연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취약계층·저소득차주: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20년 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77) “저소득층 차주”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를 말함.

78)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을 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한 감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11.) 통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30~80%로 개정함.

79)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약정자의 거치기간(최대 1년~3년) 종료 등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간의 채무상환기간(채무종류별 최대 10년~ 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하도록 조기·성실 상환 인센티브 등을 마련함.

□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신청기한(2026년 12월) 종료 6개월 전인 2026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은 채권액 기준 48.2%, 채권매입액 기준 52.2%에 그쳐,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2026. 6.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액		채권매입액 ⁸⁰⁾
계 획 (2022. 10. ~ 2026. 12.)	334,000		136,000
실 적 (2022. 10. ~ 2026. 6.)	매입형	106,999	29,835
	중개형 ⁸¹⁾	54,152	41,216
	합 계	161,151	71,051
계 획 대 비 실 적	48.2		52.2

(자료: 금융위원회)

이러한 실적 저조는 제도 설계 시에 코로나 피해 관련 다양한 정책지원과의 중첩성,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제도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⁸²⁾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80) 부실(우려)채권에 매입가율을 적용하여 실제 채권을 매입한 가격을 말함.

81) 중개형은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을 부동의한 경우 기금이 매입한 채권액

82)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구분	개인금융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근거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또한, 2026년 6월 기준 채무조정 약정 실효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약정 체결자 중 매입형은 25.4%, 중개형은 52%가 약정을 실효하였고, 주된 실효 사유는 장기연체(매입형은 98%, 중개형은 91.2%)인 것으로 나타남.

〈채무조정 약정 실효자 현황〉

(2026. 6.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기준)	합 계	실효 사유
매 입 형	약정 체결	-	15,417	14,266	27,808	14,277	71,768	장기연체(98%)
	약정 실효	-	3,913	1,987	374	1	6,275	다른 채무조정(0.6%) 도덕적 해이(0.3%)
	실효율	-	25.4	13.9	0.1	0.0	8.7	기타(1.1%)
중 개 형	약정 체결	305	13,234	17,513	25,876	13,125	70,053	장기연체(91.2%)
	약정 실효	152	6,885	6,504	3,893	70	17,504	다른 채무조정(8.6%) 기타(0.2%)
	실효율	49.8	52.0	37.1	15.0	0.5	25.0	

주: 여기에서 말하는 실효율이란 해당연도 채무조정 확정자 중 2026년 6월 기준 시점 실효자 수 비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약정 실효 후 재신청 현황을 보면, 부실우려차주로서 약정을 체결했다가 실효된 채무원금 1조 6,543억원의 89.8%인 1조 4,863억원이 부실차주로서 재신청된 것으로 나타남.

〈채무조정 약정 실효 후 재신청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약정 실효 채무원금	약정 실효 후 재신청 (부실차주 전환) 채무원금
부실우려차주	16,543	14,863 (89.8%)
부실차주	7,829	-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이,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 실효 후 다시 ‘부실차주’로서 재약정⁸³⁾하려는 이유는, 순채무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이자도 100% 감면받는 ‘부실차주’⁸⁴⁾와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만 조정되는 ‘부실우려차주’⁸⁵⁾의 경계가 3개월 이상 연체 유무로 결정되고,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에서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부실차주 기준을 적용해 채무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부실우려차주로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기보다, 연체를 지속해 원금까지 감면받는 부실차주로 전환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감사원⁸⁶⁾은 소득 등 변제능력에 맞게 원금·이자를 감면하는 것이 ‘채무조정’의 본래 의미임에도 새출발기금이 변제능력(변제가능률

83)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9조(채무부담액의 산정) ② 부실차주 및 그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액은 별표 3의 부실차주의 채무유형별 채무부담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부실우려차주 및 그 채무관계자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협약 제16조 제1항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개형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협약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채무부담액은 별표 3 부실차주의 채무유형별 채무부담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4) “부실차주”란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중개형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또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무자 포함)를 말함(「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2조).

85) “부실우려차주”란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채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 이하로 평가하는 채권의 채무자 등 장기연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차주 중 부실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2조).

86)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 11.

- 채무조정은 현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변경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절차이므로 소득 등 변제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원금·이자 감면 등)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시 감면율을 차주의 변제가능률·연령·상환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변제가능률은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나, 변제능력(변제가능률 100% 이상)이 충분한 차주조차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함.
-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총계 840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임.

* 사례 A(만 50세, 10년 상환)는 월소득 8,0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 62%로 산정, 채무 33억원 중 2억원 감면

100% 이상)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지적하였고, 새출발기금은 이를 수용해 2026년 6월부터 채무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30~80%로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2026년 6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는 종전 신청자 보다 낮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며, 2026년 2분기 기준 74.3%를 나타내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향후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매입형 채무조정의 감면 현황〉

구 분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분할 년수
2022년 4/4분기	69.8%	100%	8.7
2023년	69.8%	100%	8.7
2024년	71.3%	100%	10.1
2025년	73.0%	100%	10.4
2026년(6월기준)	74.3%	100%	10.4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은 기존 약정자와 신규 약정자 간 지원기준의 차이는, 변제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사전 검토가 부족한 정책과 이로 인한 잦은 정책 변경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정책 변경 시마다 시스템 개편, 담당자 재교육, 지침 재작성, 대상자 재심사 등을 위한 부수 비용이 발생해 행정·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향후 제도 설계 시에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시행 중 제도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2) 사해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감사원은 2025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⁸⁷⁾에서 새출발기금이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재산 숨기기 등)에 취약한 구조임을 지적하였음.

감사원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회수가능액(자산에서 부채·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을수록 채무 감면액이 커지는 구조임에도, 법 규정 미비 등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 그 결과 새출발기금 신청 전후로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269명, 가족 등에게 1천만원 이상 증여한 자 77명, 비상장주식 1천만원 이상 보유자 39명이 재산조사망을 벗어나 있었는데, 이중 증여자 77명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제도시행 기간(2022. 1. 1.- 2025. 3. 21.) 중 자산가액 총 119억원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총 67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음.

이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한 자를 추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약정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음.

87)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11.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 통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25일에야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음.⁸⁸⁾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① 가상자산 보유내역 제출 의무화 및 비상장주식의 재산심사 대상 포함, ②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도 재산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③ 재산 누락·허위신고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채권 회수 조치 등인데,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반년 이상 소요된 점은 개선방안 마련이 지체되었음을 보여줌.⁸⁹⁾

□ 새출발기금은 순채무액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한 구조로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감면액을 키우려는 유인⁹⁰⁾이 큼.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가격과 채무조정 약정자의 감면된 채무액의 차액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되므로, 감면액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나게 됨. 따라서, 보유 재산을 숨기는 등 사해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2조⁹¹⁾는 채무조정 신청과

8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 6. 25.

89)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 통보 이후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보유재산 파악 및 심사체계 구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 준비를 거쳐 법 개정이 확정된 이후, 2026년 6월 25일에 개선방안 관련 진행 경과를 발표하였다고 설명함.

90) 신청자 입장에서는 재산의 회수가능액이 커질수록 상환해야 할 채무부담액이 늘어나므로(감면금은 줄어들므로) 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함.

91)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2조(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채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주무부점의 장은 즉시 채권의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채무조정 신청 당시에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경우

3.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채무조정 신청 당시에 회수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해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즉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약정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채무자로 부터 받고 있음.

□ 그런데, 2026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사해행위자 약정 취소 및 회수 실적을 보면,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한 사례는 차주 수 기준 16명에 불과함. 또한, 이 16명과 관련해 총 16억 6,000만원의 채무원금에 대해 약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채권 회수액은 총 4,020만원(회수율 약 2.4%)에 그쳐 회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사해행위자 약정 취소 및 채권회수 실적〉

(2026. 6. 기준, 단위: 백만원)

약정 연도	사해행위자 수	약정 취소 연도	약정취소 채무원금	채권 회수액
2023년	11명	2024년, 4명 2025년, 3명 2026년, 4명	1,150	39
2024년	2명	2024년, 1명 2026년, 1명	130	0.2
2025년	3명	2026년, 3명	380	1
합계	16명		1,660	40.2

(자료: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16명은 현재 재산 보전조치 등의 법 조치를 진행 중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⁹²⁾에 따라 채무자별 은닉, 증여 등의 재산정보 확인 후 기 적발된 부정수급자를 포함하여 기약정자 대상 재산은닉·사해행위 등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약정취소 등과 함께 회수강화 등 조치 방향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각종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⁹³⁾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⁹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92)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

9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원금,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9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격 없이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함.

□ 그러나,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5조⁹⁵⁾는 채무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가 있거나, 재산의 도피·은닉 등 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새출발기금과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해행위를 억제할 만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⁹⁶⁾

□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법률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금 등의 형태로 신청자에게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원금의 평균 70% 이상을 감면해 주고 있고, 앞서 살펴본 사해행위자 약정 취소 실적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자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이 약 1억원임을 고려하면, 1인당 7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감면받는 셈이어서 부정이익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95)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5조(채무조정의 재약정) ① 협약 및 이 요강에 따라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의 재약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약정 신청서를 받아 채무조정의 약정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96)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위자료제출, 재산 감소행위 등이 확인되면 채무자별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재약정*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며, 재기지원 목적인 채무조정기구 특성 상 타 채무조정기구에서도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재약정시 확인된 재산은 채무자의 회수가능재산에 포함되어 총 채무액에서 공제 후 채무조정 실시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은 사해행위 시에 약정 효력 상실 및 해당 사유 해소 후 재약정(원상회복 수준)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수록 채무 감면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자는 재산을 숨길(사해행위) 유인이 있고, 이러한 유인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 낭비, 국민 부담 증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으로 인해 새출발기금 운영 전반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또한, 새출발기금 외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활용 가능한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이미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새출발기금을 사해행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산 조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사해행위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신속히 진행하며, 재약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해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⁹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 재정을 출자하여 모펀드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500억원이 편성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	50,000	5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자본과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⁹⁸⁾

97)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2432-304)

98) 정부는 2017년 12월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동 펀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1호~6호) 조성되었음.

-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된 국가 재정은 2020년도 750억원, 2021년도 675억원, 2024년도 500억원, 2025년도에 500억원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6호 모펀드 출자자별 출자금액〉

(단위: 억 원)

구 분	국가 재정	산업 은행	수출입 은행	중소 기업	KAM CO	국민	농협	하나	우리	신한	키움	성장 금융	성장 사다리	합계
제1호 (2018)	약정총액 (비 중)	- (27.7)	1,502 (20.4)	1,102 (11.9)	646 (4.6)	350 (6.5)	350 (6.5)	350 (6.5)	350 (6.5)	350 (6.5)	-	40 (0.7)	125 (2.3)	5,415 (100.0)
제2호 (2020)	약정총액 (비 중)	750 (15.0)	1,502 (30.0)	1,062 (21.2)	686 (13.7)	1,000 (19.9)	-	-	-	-	-	15 (0.3)	-	5,015 (100.0)
제3호 (2021)	약정총액 (비 중)	675 (15.0)	1,322 (29.3)	935 (20.7)	668 (14.8)	600 (13.3)	-	-	-	200 (4.4)	100 (2.2)	10 (0.2)	-	4,510 (100.0)
제4호 (2023)	약정총액 (비 중)	- (29.9)	1,495 (22.2)	1,110 (16.7)	835 (31.2)	1,560	-	-	-	-	-	-	-	5,000 (100.0)
제5호 (2024)	약정총액 (비 중)	500 (10.0)	1,335 (26.7)	991 (19.8)	824 (16.5)	1,350 (27.0)	-	-	-	-	-	-	-	5,000 (100.0)
제6호 (2025)	약정총액 (비 중)	500 (10.0)	1,129 (22.6)	975 (19.5)	896 (17.9)	1,500 (30.0)	-	-	-	-	-	-	-	5,0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임.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⁹⁹⁾은 사전적 ·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인데, 이는 부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99)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은 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② 운용 효율성이나 민간자금 유입 등 시장성 확보를 위해 일부 허용되는 일반 투자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은 60%이며,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에는 100%임.

사전적 구조조정기업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기업 ¹⁰⁰⁾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대상기업 ¹⁰¹⁾ ③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의 지원대상기업 ¹⁰²⁾ ④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⑤ 코로나19 피해 기업 ¹⁰³⁾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④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① 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4~5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② 운영사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정한 후 민간 투자자가 출자 여부를 정해 단건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즉시 소진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됨.

○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기간은 일반적으로 4~5년이며, 그 운용기간은 8~10년인데 반해, 수시 제안접수 방식의 프로젝트 펀드는 통상 1~3개월의 투자기간과 4~5년의 운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100)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01) 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기업, 최근 2년간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27제3항)

102)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으로서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회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10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 업체 등

2) 검토의견: 펀드 적정 조성주기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6년 6월 기준, 총 6개의 모펀드로 구성되는데, 모펀드 총액은 2조 9,940억원이며, 총 펀드 조성액은 7조 8,177억원임.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6호 조성 실적〉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결성 현황(모펀드 기준)			조성 실적(펀드 총액 기준)		
		모펀드 총액 (A)	모펀드 출자액 (B)	결성률 (B/A)	조성 목표 ²⁾ (C)	조성 실적 (D)	조성률 (D/C)
1호 (2018)	소 계	5,415	5,415	100.0%	16,441	16,441	100.0%
	프로젝트펀드	1,415	1,415	100.0%	6,213	6,213	100.0%
	블라인드펀드	4,000	4,000	100.0%	10,228	10,228	100.0%
2호 ¹⁾ (2020)	소 계	5,015	5,015	100.0%	15,851	15,851	100.0%
	프로젝트펀드	2,006	2,006	100.0%	8,881	8,881	100.0%
	블라인드펀드	3,009	3,009	100.0%	6,970	6,970	100.0%
3호 ¹⁾ (2021)	소 계	4,510	4,510	100.0%	17,793	17,793	100.0%
	프로젝트펀드	1,510	1,510	100.0%	10,280	10,280	100.0%
	블라인드펀드	3,000	3,000	100.0%	7,513	7,513	100.0%
4호 (2023)	소 계	5,000	4,430	88.6%	11,680	11,110	95.1%
	프로젝트펀드	2,200	1,630	74.1%	5,404	4,834	89.5%
	블라인드펀드	2,800	2,800	100.0%	6,276	6,276	100.0%
5호 ¹⁾ (2024)	소 계	5,000	3,350	67.0%	13,822	10,322	74.7%
	프로젝트펀드	1,650	-	-	3,500	-	-
	블라인드펀드	3,350	3,350	100.0%	10,322	10,322	100.0%
6호 ¹⁾ (2025)	소 계	5,000	3,000	60.0%	10,410	6,660	64.0%
	프로젝트펀드	2,000	-	-	3,750	-	-
	블라인드펀드	3,000	3,000	100.0%	6,660	6,660	100.0%
합 계	소 계	29,940	25,720	85.9%	85,997	78,177	90.9%
	프로젝트펀드	10,781	6,561	60.8%	38,028	30,208	79.4%
	블라인드펀드	19,159	19,159	100.0%	47,969	47,969	100.0%

주: 1) 재정출자사업

2) 조성목표 = 조성실적 + (현재 모펀드 미출자액 + 모펀드 미출자액의 민간자금 매칭 추정 규모)
(자료: 금융위원회)

□ 동 펀드의 투자집행기간이 4~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제1호~제3호펀드는 투자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2026년 6월 기준 제4호~제6호펀드의 투자가 진행 중임.

투자집행이 완료된 제1호~제3호펀드는 투자집행기간(4~5년) 종료 시점에 95% ~ 100%의 집행률을 기록하여, 프로젝트펀드는 사실상 전액이, 블라인드펀드도 대부분의 자금이 투자로 소진되었음.

□ 그런데, 제1호~제6호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세부 현황을 보면, 펀드 결성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2026년 6월 기준 미투자율은 2023년 조성된 제4호펀드 46.2%, 2024년 조성된 제5호펀드 52.3%, 2025년 조성된 제6호펀드 99.3% 수준임.

2024년 및 2025년에 조성된 제5호·제6호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집행기간(4~5년)을 감안할 때, 미투자 잔액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2023년 조성된 제4호펀드의 경우에는 1년 늦게 조성된 제5호펀드와의 미투자율 격차가 6%p(46.2% vs 52.3%)에 불과해 투자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호~6호 블라인드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운용사	결성현황				투자액	미투자잔액	비율
		모펀드	민간	합계	결성연월			
제1호 (2018)	합계	4,000	6,228	10,228	'20.2.	9,782	446	4.36
제2호 (2020)	합계	3,009	3,961	6,970	'20.12.	6,621	349	5.01
제3호 (2021)	합계	3,000	4,513	7,513	-	6,737	776	10.33
제4호 (2023) (투자기간: 5년)	A	1,100	1,100	2,200	'23.12.	914	1,286	58.45
	B	500	1,360	1,860	'23.12.	1,430	430	23.12
	C	500	600	1,100	'23.12.	450	650	59.09
	D	350	250	600	'23.11.	270	330	55.0
	E	350	166	516	'23.12.	310	206	39.92
	합계	2,800	3,476	6,276	-	3,374	2,902	46.24
제5호 (2024) (투자기간: 4-5년)	A	300	200	500	'24.11.	457	43	8.6
	B	300	115	415	'24.12.	304	111	26.75
	C	500	3,877	4,377	'25.1.	2,050	2,327	53.16
	D	500	680	1,180	'25.2.	302	878	74.4
	E	1,250	1,685	2,935	'25.3.	1,380	1,555	52.98
	F	500	415	915	'25.4.	425	490	53.55
	합계	3,350	6,972	10,322	-	4,918	5,404	52.35
제6호 (2025) (투자기간: 4-5년)	A	1,500	1,000	2,500	'25.12.	-	2,500	100.0
	B	500	750	1,250	'26.3.	50	1,200	96.0
	C	500	335	835	'26.3.	-	835	100.0
	D	500	1,575	2,075	'26.4.	-	2,075	100.0
	합계	3,000	3,660	6,660	-	50	6,610	99.25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프로젝트펀드의 경우에는 2026년 6월 기준, 제4호펀드가 결성을 완료하지 못해 모펀드 재원 57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제5호·제6호펀드의 경우 결성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1호~6호 프로젝트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모펀드 잔여재원	운용사	결성현황				투자액
			모펀드	민간	합계	결성연월	
제1호 (2018)	-	합 계	1,415	4,798	6,213	-	6,213
제2호 (2020)	-	합 계	2,006	6,875	8,881	-	8,881
제3호 (2021)	-	합 계	1,510	8,770	10,280	-	10,280
제4호 (2023)	570	A	120	120	240	'24.8.	240
		B	220	682	902	'24.10.	902
		C	250	767	1,017	'25.4.	1,017
		D	210	155.5	365.5	'25.9.	365.5
		E	200	334.4	534.4	'25.11.	534.4
		F	180	125	305	'26.1.	305
		G	150	520	670	'26.2.	670
		H	300	500	800	'26.4.	800
		합 계	1,630	3,203.9	4,833.9	-	4,833.9
제5호 (2024)	1,650	-	-	-	-	-	-
제6호 (2025)	2,000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종합하면, 2026년 6월 기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가능액은 제4호펀드 2,902억원, 제5호펀드 5,404억원, 제6호펀드 6,610억원으로, 총 1조 4,916억원이며,

프로젝트펀드의 투자가능액(민간 매칭을 고려해 모펀드 잔여재원의 2배로 추정) 8,440억원¹⁰⁴⁾까지 더하면 총 2조 3,356억원에 달함.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2021~2025년(5개년) 연평균 투자집행액이 9,218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투자가능액 총 2조 3,356억원을 모두 집행하는 데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2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기업구조혁신펀드 연도별 투자 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10,885	13,703	4,756	7,047	9,697	46,088	9,218

(자료: 금융위원회)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관련 민간 채원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규펀드와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한정된 투자처를 두고 서로 경합하면서 기존 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 재정으로 출자한 재원이 구조조정 수요 기업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고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어,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¹⁰⁵⁾

104) 8,440억원 = (제4호 570억원 + 제5호 1,650억원 + 제6호 2,000억원) * 2

105)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6호 펀드의 경우 기존 제1호-제5호펀드를 통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향후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기존 펀드의 투자 진행 상황과 시장의 투자 수요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펀드 조성 주기를 검토하고,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를 독려하여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않은 주력산업(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행될 예정으로 펀드 간 경합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¹⁰⁶⁾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장기
간 연체된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새
도약기금)에서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
한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현액 4,000억원
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400,000	-	-	400,000	40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7년 이상¹⁰⁷⁾ 연체된 5천만원¹⁰⁸⁾ 이하 개인¹⁰⁹⁾ 무담보¹¹⁰⁾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채권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권 전체를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를 조정

106)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107) 금융위원회는 ①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②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는 입장임.

10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한 금액

109)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 및 개인 비사업자(근로자 등)인 경우 모두 포함

110) 담보·보증부 채권은 제외

해주는 사업임.

-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의 전체 규모를 총 16.4조원, 채무자수 기준 약 1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매입가율을 평균 5% 수준¹¹¹⁾으로 산정하여 총 매입 소요액을 약 8,000억원(= 16.4조원 × 5%) 규모로 산출하였음.
- 이 중 4,000억원은 정부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고, 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회사의 출연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음.

2) 검토의견

(1) 채권 매입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등

- 장기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을 전제로 금융위원회가 2025년 제2회 추경¹¹²⁾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 4,000억원을 편성·집행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2025년 8월 설립하였고, 이후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였음.

111)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과 유사한 과거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7년 이상 연체건에 대한 매입가율이 평균 4.00%(신용회복기금)~5.19%(국민행복기금)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책정했다는 입장임.

112)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 및 정부 이송

○ 이 때 발표된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부터¹¹³⁾ 순차적으로 소각¹¹⁴⁾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¹¹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음.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새도약기금) 당초 추진일정(안)〉

세부내용	당초 추진일정(안)
금융회사·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25.10월 ~
장기 연체채권 매입	'25.10월 ~ '26.10월
상환능력 심사	'25.11월 ~ '27.6월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25.12월 ~
상환능력심사 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연내

(자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2025.10.1.))

□ 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2025년 말까지 7조 7,22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2026년에 추가로 2조 6,75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2026년 6월말 기준 총 10조 3,971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음.

113)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 소각

114)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115)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20~7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

(단위: 억원, 만명)

구 분		채 권 액	채 무 자 수
1차 매입 ('25.10.)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54,493	34.0
2차 매입 ('25.11.)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28개사)	8,003	7.6
3차 매입 ('25.12.)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 (93개사)	14,724	18.0
2025년 소계		77,220	59.6
4차 매입 ('26.1.~2.)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290개사)	4,409	4.7
5차 매입 ('26.3.~5.)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 (930개사)	9,602	11.6
6차 매입 ('26.6.)	유동화전문회사, 상호금융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91개사)	12,739	14.1
2026년 소계		26,750	30.4
합계		103,971	90.0 ¹⁾

주1) 동일 업권 내 중복 제거 시 88.5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중에 매입한 채권이 7조 7,220억원으로 당초 추산한 전체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2026년 6월말까지 매입한 채권은 총 10조 3,971억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 대비 6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채권매입가액은 3,135억원, 평균 채권매입가율은 3.0%로 당초 산정한 채권매입가율 5.0%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업권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

구 분	채 권 액	채 무 자 수	채 권 매 입 가 액	채 권 매 입 가 율
공 공 (28개 사)	60,405억원	37.0만명	1,562억원	2.6%
은 행 (17개 사)	5,417억원	3.7만명	222억원	4.1%
생 명 보 험 (10개 사)	535억원	0.7만명	20억원	3.7%
손 해 보 험 (5개 사)	1,130억원	1.0만명	38억원	3.4%

카 드	(8개 사)	8,473억원	10.3만명	380억원	4.5%
캐피탈	(21개 사)	2,592억원	5.1만명	143억원	5.5%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원	1.7만명	41억원	5.7%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원	0.8만명	13억원	2.3%
수 협	(71개 사)	344억원	0.3만명	9억원	2.6%
신 협	(400개 사)	401억원	0.5만명	14억원	3.6%
농 협	(383개 사)	273억원	0.3만명	10억원	3.7%
산림조합	(63개 사)	22억원	149명	1억원	3.8%
대 부	(25개 사)	7,382억원	11.2만명	230억원	3.1%
기타(AMC 등)	(6개 사)	15,701억원	15.9만명	452억원	2.9%
합 계	(1,824개 사)	103,971억원	88.5만명	3,135억원	3.0%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추정 편성 당시 적용한 매입 대상채권의 규모 및 평균 매입가율과 실제 채권 매입실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의 준비상황과 실제 재원 소요시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 전액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당초 계획한 매입기간이 2026년 10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잔여 대상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위원회는 매입대상 장기연체채권 중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보유한 채권액을 4조 6,88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2026년 6월말까지 매입한 대부업권 채권액은 7,382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 대부업권 채무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채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어 대부업권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새도약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당초 계획한 기간 내 채권 매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잔여 대상채권 규모와 월별 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리하면, 새도약기금 사업은 추경 편성 당시의 대상채권 규모·매입가율과 실제 매입실적 간 차이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잔여 대상채권을 신속히 매입하여 당초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상환능력 심사 지연 문제

-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상환능력 심사를 시작하여 2027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12월부터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음.¹¹⁶⁾
- 이를 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을 2025년 연내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법률 개정이 2026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개시 시점이 당초 2025년 11월에서 2026년 8월로 약 9개월 지연되었음.¹¹⁷⁾

116)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 소각

1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46호, 2026. 5. 12., 일부개정]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새도약기금) 추진일정(안) 변경 〉

세부내용	당초	변경('26.6. 기준)
금융회사·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25.10월 ~	'25.10월 ~
장기 연체채권 매입	'25.10월 ~ '26.10월	'25.10월 ~ '26.10월
상환능력 심사	'25.11월 ~ '27.6월	'26.8월 ~ '27.6월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¹⁾	'25.12월 ~	'25.12월 ~
상환능력심사 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연내	'26.5월 개정 완료

주1)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소각은 2025년 12월부터 진행 중이고, 상환능력 심사에 따른 소각 및 채무조정은 2026년 8월부터 심사 이후 진행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 그 결과 일반 채무자에 대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 및 채권 소각·채무조정은 2026년 6월말 기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령자 등 관계부처의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이미 확인된 채무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 소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10조 3,971억원 중 21.7%에 해당하는 2조 2,583억원이 소각되었음.

〈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

구 분	채권액(비율)		채무자수(비율)	
매입(1~6차)	103,971억원	(100%)	88.5만명	(100%)
소각(1~3차)	22,583억원	(21.7%)	26.9만명 ¹⁾	(30.4%)
1차 소각('25.12.)	11,305억원	(10.9%)	6.7만명	(7.6%)
2차 소각('26.3.)	6,286억원	(6.0%)	13.3만명	(15.0%)
3차 소각('26.6.)	4,992억원	(4.8%)	6.9만명	(7.8%)

주1)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23.7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분기별로 계속하는 한편, 2026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안내한다는 계획임.

□ 비록 새도약기금이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발생하고 있으나, 상환능력 심사가 지연될 경우 채무관계의 종국적인 정리와 채무조정 확정,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 등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재기 지원 효과도 함께 지연될 수 있음.

○ 특히 2026년 6월 말까지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수가 중복 제거 기준 88만 5,000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 23만 7,000명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처리하여야 할 채무자가 최대 64만 8,000명에 이르며, 2026년 10월까지 채권 매입이 계속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계획된 2027년 6월까지 상환능력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환능력 심사가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행정정보 및 금융자산 정보의 연계, 심사시스템 구축 및 심사인력 확보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상환능력 심사와 채권 소각·채무조정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잔여재원 및 회수재원의 처리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정부가 출자한 4,000억원과 금융회사 출연금 4,400억원¹¹⁸⁾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사업임.

○ 그런데 2026년 6월말까지 채권 매입에 사용된 금액이 3,135억원이고, 평균 채권매입가율도 당초 예상한 5.0%보다 낮은 3.0%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채권 매입실적에 따라 조성한 재원 중 상당한 잔여재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업권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채권매입가액	채권매입가율
공 공	(28개 사)	60,405억원	37.0만명	1,562억원	2.6%
은 행	(17개 사)	5,417억원	3.7만명	222억원	4.1%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원	0.7만명	20억원	3.7%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원	1.0만명	38억원	3.4%
카 드	(8개 사)	8,473억원	10.3만명	380억원	4.5%
캐피탈	(21개 사)	2,592억원	5.1만명	143억원	5.5%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원	1.7만명	41억원	5.7%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원	0.8만명	13억원	2.3%
수 협	(71개 사)	344억원	0.3만명	9억원	2.6%
신 협	(400개 사)	401억원	0.5만명	14억원	3.6%
농 협	(383개 사)	273억원	0.3만명	10억원	3.7%
산림조합	(63개 사)	22억원	149명	1억원	3.8%
대 부	(25개 사)	7,382억원	11.2만명	230억원	3.1%
기타(AMC 등)	(6개 사)	15,701억원	15.9만명	452억원	2.9%
합 계	(1,824개 사)	103,971억원	88.5만명	3,135억원	3.0%

(자료: 금융위원회)

118) 금융기관(업권별) 출연 현황(총 4,400억원): 은행연합회 3,600억원,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 채권 매입이 2026년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최종 잔여재원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융위원회는 잔여 매입 대상채권의 규모와 예상 매입가율 등을 토대로 최종 재원 소요액을 산정하고, 채권 매입 종료 후 남은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¹¹⁹⁾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한 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¹²⁰⁾에 대해서는 추심을 재개하여 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므로, 향후 채무조정 이행금과 추심금 등 회수재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은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이 함께 투입된 사업으로, 회수재원의 사용·귀속 및 재원별 정산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원의 성격과 부담주체별 정산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재원이 장기간 새도약기금에 유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채권 매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재원과 채무조정 이행금·추심금 등 회수재원이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119)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120)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출연금 간 정산기준, 잔여재산 및 회수재원의 사용·귀속, 새도약기금의 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 시기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²¹⁾

121) 금융위원회는 2026년 3분기 중에 예상 매입채권 규모 파악 후 잔여재원 규모를 추정할 예정으로, 이후 기획예산처·출연 금융회사들과 채무조정 회수금을 포함한 잔여재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제3장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Ⅰ. 공적자금상환기금 개요

1. 수입·지출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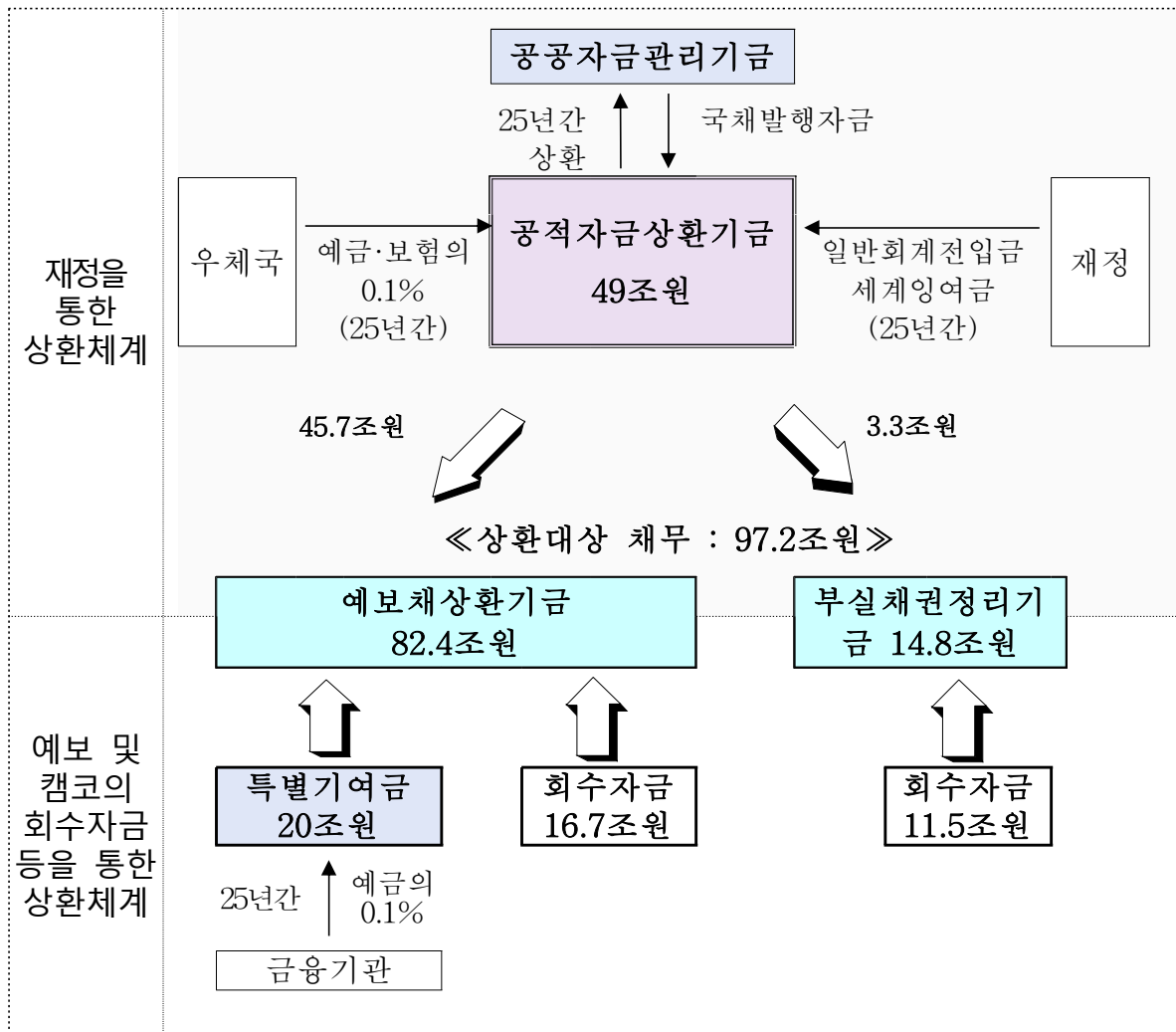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¹²²⁾(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목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¹²³⁾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한시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¹²⁴⁾ 공적자금상환기금 역시 이 효력 만료일까지 유효함.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 49조원을 예수받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7조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3.3조원)에 각각 출연하였음. 이후 동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49조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22)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2.11.22일 운용을 종료하고, 2013.2.22일 잔여재산을 반환함.

12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24)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 2002년 공적자금 상환체계 〉



- 주 1)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 중, 2002년 말 기준 69조원(상환대상 채무 97.2조원 - 회수자금 28.2조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총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회사가, 나머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함.
- 2)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 부담분(49조원)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시 지원한 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움.
- 3)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음.

□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각각 5조 9,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하였음.

○ 수입실적은 경상이전수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전입금) 3조 2,0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조 5,0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전입금 1,160억원 등임.

〈202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5,272,531	3,819,793	3,819,793	3,200,666	83.8	△39.3
- 재산수입	934	885	885	666	75.3	△28.7
- 재고자산매각대	81,597	18,908	18,908	-	-	△100.0
- 경상이전수입	5,190,000	3,800,000	3,800,000	3,200,000	84.2	△38.3
정부내부수입	4,054,773	2,618,631	2,618,631	2,749,699	105.0	△32.2
- 일반회계전입금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00.0	-
- 세계잉여금	-	-	-	133,738	-	-
- 특별회계전입금	112,873	118,631	118,631	115,961	97.7	2.7
- 공자기금예수금	1,441,900	-	-	-	-	△100.0
여유자금회수	12	-	-	40	-	233.3
합 계	9,327,316	6,438,424	6,438,424	5,950,405	92.4	△36.2

(자료: 금융위원회)

- 지출실적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5조 5,400억원, 그
예수이자 상환 4,103억원 등임.

〈202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금융정책(전입금환급)	-	-	-	-	-	-
정부내부지출	9,327,136	6,436,021	6,436,021	5,950,365	92.5	△36.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842,338	5,997,739	5,997,739	5,540,024	92.4	△37.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84,798	438,282	438,282	410,341	93.6	△15.4
기금운영비	141	57	57	1	1.8	△99.3
여유자금운용	40	2,346	2,346	39	1.7	△2.5
합 계	9,327,316	6,438,424	6,438,424	5,950,405	92.4	△36.2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5년 자산은 전년 대비 0.01억원이 감소한 0.39억원이며,

○ 부채는 15조 1,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873억원 감소함.

○ 순자산은 △15조 1,341억원으로 2024년 말 △20조 7,214억원 대비 5조 5,873억원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39	40	△1	△1.7
	자산계	39	40	△1	△1.7
부 채	차입부채	15,134,157	20,721,438	△5,587,281	△27.0
	부채계	15,134,157	20,721,438	△5,587,281	△27.0
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15,134,118	△20,721,398	5,587,280	27.0
	순자산계	△15,134,118	△20,721,398	5,587,280	27.0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중 재정운영결과는 △2조 9,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930억원 증가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수익 미발생으로 전년대비 232억원 증가한 0원임. 비배분비용¹²⁵⁾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비용 등 3,631억원으로 전년대비 1,172억원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¹²⁶⁾은 여유자금운용수익 등 7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함. 또한, 비교환수익¹²⁷⁾은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1,16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3조 2,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9,870억원 감소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재정운영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A)	2024(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순원가	-	△23,225	23,225	100.0
II. 관리운영비	1	141	△140	△99.3
III. 비배분비용	363,084	480,318	△117,234	△24.4
IV. 비배분수익	666	934	△268	△28.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2,420	456,300	△93,880	△20.6
VI. 비교환수익 등	3,315,961	5,302,873	△1,986,912	△37.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953,542	△4,846,573	1,893,032	39.1

(자료: 금융위원회)

125) 비배분비용이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126) 비배분수익이란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함.

127)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함.

□ 2025년도 순자산은 △15조 1,341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5,873억원 (27.0%) 증가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A)	2024(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기초순자산	△20,721,398	△28,067,971	7,346,573	26.2
II.재정운영결과	△2,953,542	△4,846,573	1,893,031	39.1
III.조정항목	2,633,738	2,500,000	133,738	5.3
IV.기말순자산 (I-II+III)	△15,134,118	△20,721,398	5,587,280	27.0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기말현금은 0.4억원임.

〈공적자금상환기금 현금흐름 현황^{주)}〉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A)	2024(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06,285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06,286	-
IV. 현금의증감(I +II +III)	△1	-
V. 기초의현금	40	-
VI. 기말의현금(IV+ V)	39	-

주)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현금흐름표 도입

(자료: 금융위원회)

II.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개요

1. 수입·지출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¹²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주체)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하였음.¹²⁹⁾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자보호법」¹³⁰⁾에 따라 2027년 말 청산 예정이며, 그 자산 및 부채는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가 정해짐.

128)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129)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는 2003년 1월 1일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신설되었음.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부칙 제9조 (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130)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실적은 계획금액 4조 7,496
억원 대비 36.9% 감소한 3조 4,343억원임.

〈2025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3,142,440	3,530,223	3,530,223	3,184,326	90.2	1.3
정부출자수입	214,490	227,459	227,459	167,736	73.7	△21.8
이자·재산수입	130,723	117,396	117,396	65,714	56.0	△49.7
법정부담금 등	2,580,600	2,660,038	2,660,038	2,689,339	101.1	4.2
재고자산매각대	216,626	525,330	525,330	261,536	49.8	20.7
여유자금회수	2,300,794	1,219,382	1,219,382	250,013	20.5	△89.1
합계	5,443,234	4,749,605	4,749,605	3,434,340	72.3	△36.9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자체수입 3조 1,843억원은 보유주식 매각 등에 따른 재고자산매각
대 2,615억원, 정부 출자금융회사의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입인
정부출자수입이 1,677억원, 이자·재산수입 657억원, 부보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인 법정부담금 등 2조 6,893억원으로 구성됨.
- 여유자금회수는 2024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기초보유자금
2,500억원임.

□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은 계획금액 4조 7,496억원 대비 36.9% 감소한 3조 4,343억원임.

〈2025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사업비 (금융구조조정지원)	192	2,677	2,677	850	31.7	341.5
정부내부지출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5,190,000	3,800,000	3,800,000	3,200,000	84.2	△38.3
기금운영비	3,028	3,103	3,103	2,732	88.0	△9.8
여유자금운용	250,013	943,825	943,825	230,758	24.4	△7.7
합계	5,443,234	4,749,605	4,749,605	3,434,340	72.3	△36.9

(자료: 예금보험공사)

- 사업비는 기타정리자문경비로 8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소송 종결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집행률은 31.7%임.
- 정부내부지출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¹³¹⁾한 것으로 2025년도에 3조 2,000억원을 전출함.
- 기금운영비는 27억 3,200만원으로, 인건비 24억 8,900만원, 기금관리비 2억 4,300만원이 포함됨.
- 2025년도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기말보유자금인 여유자금운용은 2,308억원임.

131) 상환기금은 2021년 8월에 공적자금 부채(82.4조원)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부채상환 완료 이후 법정 부담금(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수입 등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음.

2. 재무제표

□ 2025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4조 1,09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 7,380억원(199.7%) 증가하였음.

○ 주식 상장 등으로 투자증권이 2조 7,705억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5년말 현재 부채총액은 0원으로, 전년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2025년말 현재 순자산총액은 4조 1,09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 7,380 (199.7%) 증가하였음.

○ 이는 재정운영결과 3조 771억원, 투자증권 평가손익 증가 2조 8,609억원 흑자(+요인)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조 2,000억원(-요인)에 주로 기인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4,108,666	1,370,681	2,737,985	199.8
	유·무형자산	-	-	-	-
	기타자산	692	692	-	-
	자산계	4,109,358	1,371,373	2,737,985	199.7
부 채	차입부채	-	-	-	-
	충당부채	-	-	-	-
	기타부채	-	-	-	-
	부채계	-	-	-	-
순자산	기본순자산	52,306,380	52,306,380	-	-
	적립금 및 잉여금	△50,839,054	△50,716,107	△122,947	△0.2
	순자산조정	2,642,032	△218,900	2,860,932	-
	순자산계	4,109,358	1,371,373	2,737,985	199.7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3조 771억원(흑자)으로 특별기여금수익(2조 6,897억원) 및 배당금수익(1,677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 프로그램순원가는 대손충당금 전입 등 프로그램비용(417억원)에서 배당금수익, 지원자산 처분이익 등 프로그램수익(3,860억원)을 차감한 결과 △3,443억원이 발생하였음.

- 재정운영순원가는 관리운영비(27억원)와 운용자산 이자수익(462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 △3,874억원이 발생하였음.

- 비교환수익은 부담금수익 등으로 공사의 경우 특별기여금수익이 해당되며 2조 6,897억원이 발생하였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 344,281	△ 288,330	△ 55,952	19.41
II. 관리운영비	2,730	3,025	△ 295	△ 9.76
III. 비배분비용	314	49	265	540.23
IV. 비배분수익	46,163	82,423	△ 36,260	△ 43.9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 387,400	△ 367,678	△ 19,721	5.36
VI. 비교환수익 등	2,689,654	2,574,503	115,151	4.4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 3,077,053	△ 2,942,181	△ 134,873	4.58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5년 말 순자산총액은 4조 1,09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초 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 3조 771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조 2,000억원, 투자증권 평가 손익 증가 2조 8,609억원을 반영한 것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371,373	3,699,737	△ 2,328,364	△ 62.9
II. 재정운영결과	△ 3,077,053	△ 2,942,181	△ 134,873	4.6
III. 조항목	△ 339,068	△ 5,270,545	4,931,477	-
IV. 기말순자산 (I - II + III)	4,109,358	1,371,373	2,941,477	199.7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5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14.3%)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기여금 수입 등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 등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에 기인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현금흐름 현황^{주)}〉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96,351	-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3,650	-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00,000	-	-	-
IV.현금의증감(I +II+III)	1	-	-	-
V.기초의현금	7	-	-	-
VI.기말의현금(IV+V)	8	7	1	14.3

주)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현금흐름표 도입

(자료: 예금보험공사)

III. 검토의견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49조원(원금기준)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계획현액은 5조 9,977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조 5,400억원(92.4%)만 상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2026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불 용 액	집 행 률	계 획 액
당 초	수 정					
5,997,739	5,997,739	5,997,739	5,540,024	457,715	92.4	7,148,632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1~2025회계연도까지 원금 기준 총 35조 4,206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였음.

〈2021~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실적〉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5,540,024	35,420,624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에 예상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채무상환을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으로,¹³²⁾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의 계획현액은 3조 8,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조 2,000억원(84.2%)만 전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2026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집 행 률	계 획 액
당 초	수 정						
3,800,000	3,800,000	3,800,000	3,200,000	-	600,000	84.2	4,800,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5회계연도까지 총 14조 6,400억원을 전출하였음.

〈2021~202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실적〉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250,000	2,400,000	2,600,000	5,190,000	3,200,000	14,640,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132)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검토의견: 잔여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차입하였음. 이는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가운데 49조원¹³³⁾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차입금 49조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¹³⁴⁾ 등의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각각 「공적자금상환기금법」¹³⁵⁾ 및 「예금자보호법」¹³⁶⁾에 따라 2027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는 이 시한까지 잔여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두 기금을 청산하여야 함.

- 2025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원금 기준 15조 712억원임.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조 1,486억원, 2027년 7조 9,225억원을 상환한 뒤 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상환 실적을 살펴보면 3개 회계연도 모두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133) 69조원 중 나머지 20조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함.

134)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45.7조원) 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

135)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36)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이하 생략)

〈 공공자금관리기금 부채(원금) 상환 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계획	2027계획
당초 계획	10,342,600	9,789,418	5,997,739	7,148,632	7,922,520
상환 실적	8,345,572	8,842,338	5,540,024	-	-
계획 달성도	80.7	90.3	92.4	-	-
잔여부채(원금)	28,011,614	20,611,176	15,071,152	-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¹³⁷⁾은 ① 세계잉여금, ②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③ 일반회계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계잉여금¹³⁸⁾과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¹³⁹⁾에 따른 정형화된 산식으로 결정되므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

13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138)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지방교부세 정산 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 있음. 실제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모두 지방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어서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3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천분의 1)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천분의 1)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¹⁴⁰⁾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뿐인데,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비중이 월등히 높아, 잔여부채 상환은 사실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 조달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계획	결산	당초계획	결산	당초계획	결산	계획
세계잉여금	-	1,684,340	-	-	-	133,738	-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112,757	110,705	115,655	112,873	118,631	115,961	121,843
일반회계 전입금	2,160,000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전입금	2,600,000	<u>2,600,000</u>	4,250,000	<u>5,190,000</u>	3,800,000	<u>3,200,000</u>	<u>4,800,000</u>
재고자산매각 (한화오션주식 ¹⁴¹⁾)	18,028	534	30,099	81,597	18,908	-	-
합 계	4,890,785	4,699,439	6,895,754	7,884,470	6,437,539	5,949,699	7,420,637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¹⁴²⁾		4,124,204		1,441,900	-	-	-
부채(원금) 상환 실적	8,345,572		8,842,338		5,540,024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4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오션 주식은 2024년도에 매각 완료됨.

142)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원금) 상환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다시 차입해 충당함.

□ 실제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5년도에 총 수입 3조 4,343억원 중 3조 2,000억원(93.2%)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였고, 2026년도에도 총수입 계획 4조 8,867억원 중 4조 8,000억원(98.2%)을 전출할 계획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정부출자수입 (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7,736	195,258
이자수입 (연기금투자폴 운용)	65,714	115,089
재고자산매각대 (보유 주식, 채권 등 매각)	261,536	1,818,514
법정부담금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2,689,339	2,747,819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50,013	10,000
총 수입	3,434,340	4,886,680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3,200,000 (총수입의 93.2%)	4,800,000 (총수입의 98.2%)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자료 재구성)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은 ① 보유 자산 매각대, ② 보유 자산 관련 배당금 및 이자수입, ③ 부보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¹⁴³⁾ 등으로 구성되는데,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특별기여금은 부보금융회

14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법률 제6807호(2002. 12. 26.)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사가 예금 등 잔액의 0.1%를 매년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며, 동법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만 유효함. 또한, 보유 자산 관련 배당금 및 이자수입은 보유자산 규모에 연동되며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공적 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재원 확보 여부는 사실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 자산 매각 규모에 달려 있음.

- 2025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채 없이¹⁴⁴⁾ 순자산 4조 1,09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출자금용회사인 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의 주식 평가액이 3조 1,95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025. 12. 기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순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8	0	4,109,358
주식(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3,195,420		
국채(수협중앙회)	479,728		
연기금투자폴 운용자산	233,240		
KR&C 대여금 ¹⁴⁵⁾	200,270		
기타자산(공사 임차보증금 1억원 포함)	692		
총 계	4,109,358		

(자료: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무결산 中 재정상태표 재구성)

14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1년 8월에 차입 부채를 모두 상환함.

145) KR&C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대지급, 부실금융회사 자산 인수, 대출 채권 회수 등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임. 동 기금이 보유한 KR&C 대여금은 대출원금 14조 2,815억원 중 회수가능성이 낮아 14조 81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순계상액이 2,003억원임.

□ 2025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순자산(4조 1,094억원)에
향후 2년치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예상치(5조 4,000억원=2조 7,000
억원*2년)를 더하면 약 9조 5,094억원이 조달 가능하며,

여기에 우체국특별회계·일반회계 전입금이 2026년도 계획 수준으로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6 ~ 2027년 확보 가능한 총
상환재원은 약 14조 7,530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말 기준 잔여
부채 15조 712억원에 약 3,182억원 부족한 수준임.

구 분	2026~2027년 상환재원 추정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약 2,436억원 = 121,843 * 2년
일반회계 전입금	약 5조원 = 2,498,794 * 2년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전입금	약 9조 5,094억원= 2025년말 상환기금 순자산(<u>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 등</u>) + 2년치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합 계	약 14조 7,530억원

더욱이 이 시나리오는 2025년 말 주식 평가액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26년 8월 기준으로 평가하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종전 평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상환재원 부족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즉, 향후 주가 수준이 2025년 말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상환을 장담하
기 어려운 상황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출자금용회사 주식 보유 현황 〉

구 분	2025.12. 평가액	평가액 추정			
		2026.8.기준 보유주식	2026.8.기준 평가	2026 매각 실적	합 계
한화생명 보험	2,827억원	86,857,001주 (지분 10%)	약 3,743억 원 (2026.8.4.종가 4,310원 적용)	-	약 3,743억 원
서울보증 보험	2조 9,127억원	55,546,746주 (지분 79.56%)	약 2조 3,635억 원 (2026.8.4.종가 42,550원 적용)	1,610억원 (2026.3. 300만주 매각)	약 2조 5,245억원
합 계	3조 1,954억원	약 2조 8,988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3월 상장을 통해 보유 주식 10%를 매각하여 1,815억원을, 2026년 3월 추가로 4.3%를 매각하여 1,610억원을 회수하였으나, 경영권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29.56%)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시점(2027년 말) 이내에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로드맵 외에는 구체적인 매각 일정과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금 청산 시한에 쫓겨 대량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경우 적정 가격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또한, 한화생명 주식도 액면가(5,000원)를 밑도는 주가가 지속되면서 매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한인 2027년 12월 말까지 서울보증보험 및 한화생명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부채 전액 상환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5년 이내, 즉 현세대 내에 상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만기를 2027년으로 설정한 것인데,

미상환 잔액을 차환 등의 방식으로 유예하는 것은 이 원칙과 배치되며, 이미 편익이 과거 세대에 귀속된 채무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세대 간 재정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기금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 충당할 의무가 있음.¹⁴⁶⁾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에 대비하여 상환 소요 및 재원조달계획을 재점검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는 등 청산 시한 내 부채상환을 전제로 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 주식의 효율적 매각 방안과 함께 주식 매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기금 청산 후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14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제4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정부와 금융기관¹⁴⁷⁾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에 대한 대위변제 등에 운용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농협중앙회이고,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임.

□ 2025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2조 2,375억 7,800만원으로 당초 계획금액 2조 2,651억 1,400만원 대비 1.2% 감소하였음.

○ 동 기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2,207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5년에는 436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구상채권회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147)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회원인 조합으로서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법」 제12조¹⁴⁸⁾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법 제13조¹⁴⁹⁾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5년에는 918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보증료 수입은 기금의 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로 2025년에는 807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위약금은 보증기일이 경과한 피보증채무 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인에게 기금이 보증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25년에는 1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기타수입은 52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25회계연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440,414	477,741	477,741	442,496	92.6	0.5
- 금융기관 출연금	224,706	241,231	241,231	220,746	91.5	△1.8
- 이자수입	63,006	44,895	44,895	43,642	97.2	△30.7
- 구상채권회수 등	86,062	117,071	117,071	91,883	78.5	6.8
- 보증료수입	62,572	70,328	70,328	80,769	114.8	29.1
- 위약금	160	127	127	163	128.3	1.9
- 기타수입	3,908	4,089	4,089	5,293	129.4	35.4
정부내부수입	30,000	150,000	150,000	150,000	100.0	500
여유자금회수	1,587,035	1,637,373	1,637,373	1,645,082	100.5	3.7
합계	2,057,449	2,265,114	2,265,114	2,237,578	98.8	8.8

(자료: 금융위원회)

14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2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액의 대손(貸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해당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4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25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사업비 4,636억 6,300만원, 기금운영비 569억 8,300만원, 여유자금운용 1조 7,169억 32백만원 등 총 2조 2,375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음.
- 2025년 동 기금의 사업비는 보증부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4,378억 1,300만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관리비용 114억 9,100만원 등 총 4,63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5년 동 기금의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504억 3,400만원, 기금관리비 65억 2,500만원, 선급법인세 2,400만원 등 총 569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	441,509	463,959	466,720	463,663	99.3	5.0
대위변제	419,513	438,010	438,010	437,813	100.0	4.4
구상권관리비	10,912	13,884	13,884	11,491	82.8	5.3
보증료환급	5,277	5,689	6,319	6,096	96.5	15.5
위탁사업비	3,302	3,754	4,654	4,428	95.1	34.1
농신보IT유지비	2,505	2,622	3,853	3,835	99.5	53.1
소송및법적절차	-	-	-	-	-	-
기금운영비	54,819	57,281	57,281	56,983	99.5	3.9
인건비	48,965	50,434	50,434	50,434	100.0	3.0
기금관리비	5,728	5,939	6,809	6,525	95.8	13.9
선급법인세	126	908	38	24	63.2	△81.0
회계기금간거래	-	-	-	-	-	-
기금간거래	-	-	-	-	-	-
여유자금운용	1,561,121	1,743,874	1,741,113	1,716,932	98.6	10.0
합계	2,057,449	2,265,114	2,265,114	2,237,578	98.8	8.8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5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2조 2,912억 500만원이고, 부채는 8,098억 6,3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 4,813억 4,200만원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2,285,322	2,200,842	84,480	3.8
	유무형자산	2,594	1,337	1,257	94.0
	기타자산	3,289	2,777	512	18.4
	자산계	2,291,205	2,204,956	86,249	3.9
부 채	차입부채	15,882	6,872	9,010	131.1
	충당부채	746,026	1,121,187	△375,161	△33.5
	기타부채	47,956	38,477	9,479	24.6
	부채계	809,863	1,166,535	△356,672	△30.6
순자산	기본순자산	5,012,047	5,012,047	-	-
	적립금 및 잉여금	△3,612,854	△4,002,200	389,346	△9.7
	순자산조정	82,149	28,574	53,575	187.5
	순자산계	1,481,342	1,038,421	442,921	42.7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862억 4,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구상채권 등) 감소액 대비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 등) 증가액이 더 큰 것에 기인함.
- 2025회계연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8,09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598억 82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충당부채 3,751억 6,100만원 감소에 기인함.

- 2025회계연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순자산은 1조 4,8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29억 2,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00억원 전입 및 보증충당부채 적립방식 합리화 등에 따른 순이익 발생으로 순자산이 증가함.

□ 2025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 결과는 2,393억 4,600만원 흑자로 전년 대비 2,935억 8,900만원 감소함.

- 2025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가 감소한 것은 전년 대비 프로그램 순원가 3,018억 900만원 감소 때문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30,389	332,198	△301,809	△90.9
1. 프로그램 총원가	474,555	393,014	81,541	20.7
2. 프로그램 수익	△444,166	△60,816	△383,350	630.3
II. 관리운영비	7,819	7,508	311	4.1
III. 비배분비용	794	650	144	22.3
IV. 비배분수익	57,603	61,407	△3,804	△6.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8,601	278,949	△297,549	△106.7
VI. 비교환수익 등	220,746	224,706	△3,960	△1.8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39,346	54,243	△293,589	△541.2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조 4,8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조 384억 2,100만원 대비 4,429억 2,100만원 증가하였음.

○ 동 기금의 기말 순자산의 증감액이 4,429억 2,100만원 증가한 것은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 감소가 주요 요인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038,421	1,047,701	△9,280	△0.9
1. 기본순자산	5,012,047	5,012,047	-	-
2. 적립금 및 잉여금	△4,002,200	△3,977,957	△24,243	0.6
3. 순자산조정	28,574	13,611	△14,963	109.9
II. 재정운영결과	△239,346	54,243	△293,589	△541.2
III. 조정항목	203,575	44,963	158,612	352.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1,481,342	1,038,421	442,921	42.7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17.9%)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증충당부채 적립방식 합리화로 인한 운영활동 현금흐름 증가 등에 기인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현금흐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792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692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IV. 현금의 증감(I + II + III)	1,100	-	-	-
V. 기초의 현금	6,140	-	-	-
VI. 기말의 현금(IV+ V)	7,240	6,140	1,100	17.9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¹⁵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500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당 초	수 정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함)의 건전성 악화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농신보 기본재산¹⁵¹⁾ 확충을 통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되었음.

150) 세부사업: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151)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이익금,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¹⁵²⁾는 기금의 운용배수¹⁵³⁾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규정」 제12조¹⁵⁴⁾는 추가적 보증여력의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¹⁵⁵⁾에 따라 적정운용배수를 12.5배¹⁵⁶⁾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4년~2019년 농특회계로 1.6조원 반환¹⁵⁷⁾과 보증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 보증잔액¹⁵⁸⁾의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였으며, 2023년 16.8배에서 2024년 17.3배로 상승하였음.

15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3)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154)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155) 적정운용배수 관리의 필요성(자료: KFR 한국펀드평가,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 2020. 8.)

구 분	내 용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 보증 상품의 다양화, 보증 수요의 확대 등으로 보증자산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계획보다 보증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운용배수를 법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재산 가치변동에 대응	○ 기본 재산은 경기 변동,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기본 재산의 평가금액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배수가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법정 수준 이하의 보증 배수 유지 * 이러한 필요성은 Basel 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임
보증자산의 질적변화에 대응	○ 기본 재산은 대위변제의 재원으로서 보증 자산의 사고율 증가, 대위변제 증가시 기본 재산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피함 ○ 운용배수의 분모항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를 급격히 증가시킴 ○ 이러한 보증 자산의 부실화 상황에서도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법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156)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II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

157) 기본재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이 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임.

158)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증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농어업분야의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의 확대* 등에 따라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업분야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관련 정책자금 배정규모: (2021년) 8조 9,419억원 → (2023년) 10조 3,585억원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정부출연금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1,500
	금융기관출연금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2,207
	보증료,이자수입등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1,259
	계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5,732
지출	보증보조비용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3,759
	구상채권상각비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4,176
	관리업무비 등	666	590	566	633	660	626	635	655
	계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13,667
기본재산(A)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14,813
보증잔액(B)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운용배수(B/A)		9.7	15.4	16.7	15.2	14.6	16.8	17.3	12.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처럼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정부출연 등 기본재산 확충방안과 보증총량 및 보증관리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기금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2024년도 300억원에 이어 2025년도 1,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전입하고, 금융기관의 특별출연¹⁵⁹⁾ 및 기준보증료율 인상¹⁶⁰⁾ 등을 통하여 기본재산 확충을 추진하였음.

○ 또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한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조정¹⁶¹⁾ 및 유의업종¹⁶²⁾ 관리, 부실보증 감축을 위한 성과평가 강화, 부실보증 감축 특별추진 및 관련 실적의 보증센터 성과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보증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였음.

□ 이러한 정부출연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따라 2025년말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전년 1조 384억원에서 1조 4,81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보증잔액은 전년 17조 9,913억원에서 18조 97억원으로 소폭 증가함에 따라, 운용배수는 2024년말 17.3배에서 2025년말 12.2배로 하락하여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 이하로 개선되었음.

○ 다만, 2025년 운용배수의 개선에는 정부출연 및 보증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증충당부채 산출방식 개선에 따른 보증충당부채¹⁶³⁾ 환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59) 농협은행 특별출연금 100억원 전입(2024. 12. 24.) 및 수협은행 특별출연금 15억원 전입(2025. 12. 16.)

160) 기금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기준보증료율 0.2%p 인상*

* 기준보증료 적용 : 0.3 ~ 1.2% → 0.5 ~ 1.4% (대상자 및 금액에 차등)

161) 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2 ~ 9등급에 대하여 보증한도 10% 감액

162) 신용평가 모형별 대위변제 등 사고율이 높은 업종으로, 유의업종 지정 시 보증한도 감액

163)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향후 기금이 부담하게 될 대위변제금의 추정액으로, 농신보는 보증승낙잔액에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대손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적립하고 있음.

- 농신보는 그동안 보증잔액의 정상·부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과거 경험률을 적용하여 보증충당부채를 산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검사 및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등을 거쳐 보증잔액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하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보증충당부채가 환입되면서 2025년도 보증보조비용이 △3,759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기본재산 증가 및 운용배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정부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과 보증관리 강화 등 그간의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에 따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운용배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액은 2024년 4,195억 원에서 2025년 4,378억원으로 증가하고 대위변제율도 2.33%에서 2.43%로 상승하였으며, 불건전보증잔액은 같은 기간 1,390억원에서 1,69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5	4,378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2.4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또한, 구상채권잔액은 2024년 2조 7,034억원에서 2025년 2조 8,067
 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구상채권회수율은 2.6%에서 2.5%로 하락하
 였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상채권 회수액(A)	1,051	874	711	711	713
구상채권 잔액(B)	23,605	23,971	25,371	27,034	28,067
구상채권회수율(A/B)	4.5	3.7	2.8	2.6	2.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정부출연금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대위변제 증가 등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 또는 보증
 공급 확대에 따라 운용배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
 정운용배수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대위변제 및 불건전보증 감축, 구상
 채권 회수율 제고 등 기금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자금 공급 규모와 보증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정부출연 규모를 연계하여 관리
 함으로써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위변제금¹⁶⁴⁾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신보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4,380억 100만원 중 4,378억 1,300만원(99.9%)이 집행되고, 1억 9,700만원(0.1%)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액		이·전용 등	계 획 현액	집 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 변 제금	438,010	438,010	-	438,010	437,813	-	197	454,5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대위변제 규모는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904억원에서 2025년 4,37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69%에서 2.43%까지 상승하였음.

- 2025년말 기준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보증¹⁶⁵⁾, 우대보증¹⁶⁶⁾, 특례보증¹⁶⁷⁾에서 각각 3,087억원, 914억원, 377

164) 세부사업: 대위변제금(2432-680)

165) 농림어업인의 영농림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억원의 대위변제금이 집행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각각 3.28%, 1.72%, 1.15%로 나타나고 있음.

〈농신보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보증	보증잔액(A)	99,464	99,367	97,827	96,739	94,205
	대위변제(B)	2,409	2,272	3,201	3,183	3,087
	대위변제율(B/A)	2.42	2.29	3.27	3.29	3.28
우대보증	보증잔액(A)	45,773	48,253	50,590	51,969	53,232
	대위변제(B)	432	468	620	729	914
	대위변제율(B/A)	0.94	0.97	1.23	1.40	1.72
특례보증	보증잔액(A)	18,348	24,232	28,003	31,205	32,660
	대위변제(B)	181	162	253	284	377
	대위변제율(B/A)	0.99	0.67	0.90	0.91	1.15
합 계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6	4,378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2.4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국회는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농신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건전성 관리,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의 사전 관리 및 사후 점검 강화, 부실보증 감축 특별추진 및 관련 실적의 보증센터 성과 평가 반영 등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음.

- 166)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조건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167) 재해피해복구 등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23회계연도] ○ [지적사항]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3년 대위변제액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74억원으로 나타났다음 - 이에 당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억원(+28.2%)을 증액변경하였음 * 2024년도 상반기 대위변제금 집행률: 61.9% ○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조기경보시스템 및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 등을 통해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금 감소('24.1분기 1,153억 → '25.1분기 846억)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건전성 관리 강화 (‘25.1분기 관리목표 7,123건 100% 달성) *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유의관리가 필요한 피보증인의 신용정보, 휴폐업정보 등을 확인하여 유효보증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 -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을 통해 지역센터별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25년 업적평가 배점 확대(2점→3점)	조치 완료
[2024회계연도] ○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제도 개선	○ 부실감축을 위하여 채무조정제도* 적극 지원을 통해 한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건전보증 정상화 방안 강구 *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른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 ○ 조기경보 모형*을 통해 불건전보증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현장출장 기록을 전산화하는 등 사후점검 체계 강화 운영 * 정상보증 사후관리 단계로 일반·유보·관찰·주의 등급으로 구분, 요주의 대상은 실태조사 실시 등 매월 관리 실시	조치 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대위변제액은 4,378억원으로 전년 4,195억원 대비 183억원 증가하였고, 대위변제율도

2.33%에서 2.43%로 상승하는 등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향후 대위변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보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불건전보증잔액은 2021년 526억원에서 2023년 1,053억원, 2024년 1,390억원, 2025년 1,69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건전보증비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60%, 0.77%, 0.94%로 상승하였음.

〈농신보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불건전보증잔액(B)	526	789	1,053	1,390	1,694
불건전보증비율(B/A)	0.32	0.46	0.60	0.77	0.9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그간 추진한 대위변제 감축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건전보증의 발생 방지 및 정상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위변제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3. 기금관리비¹⁶⁸⁾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금관리비”는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68억 900만원 중 65억 2,500만원(95.8%)이 집행되고, 2억 8,400만원(4.2%)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이·전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금관리비	5,939	6,809	-	6,809	6,525	-	284	5,543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적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연례적 계획변경 지양 필요

□ 농신보의 임차료는 지역보증센터 등의 사무공간 임차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당초 계획 범위에서 집행되었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계획액을 증액한 후 집행하였음.

○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 3억 9,500만원에서 4억 900만원을 증액한 8억 4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

168)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277-201)

년에는 당초 계획액 3억 5,700만원에서 5억 7,100만원을 증액한 9억 2,8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9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임차료	722	722	719	395	804	803	357	928	92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최근 2년간 임차료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 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 사업명	세목	금액
2024. 12. 23.	자체 변경	기금 관리비	일반수용비	35	선급 법인세	공공요금 및 제세	△479
			임차료	409			
			관리용역비	35			
2025. 10. 21.	자체 변경	기금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운반비)	87	선급 법인세	공공요금 및 제세	△870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98			
			임차료	571			
			관리용역비	111			
			일반연구비	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신보는 2024년 원주센터의 임차료 증액 및 해남센터 이전, 2025년 인천센터 및 경남센터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료 증가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주요 사무소의 임차료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소 이전 및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조정, 월세 전환·인상 등에 따라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주요 사무소 이전 및 재계약 등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사무소명	구분 (이전/ 재계약 등)	계약시기	변경 전		변경 후		임차료 인상분 (월)	임차료 인상분 (년)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중앙본부	임차료 상승	'23년~'26년	0	27.7	0	33.1	5.4	64.8
원주센터	갱신	'24.02.02.	330	0	330	2.5	2.5	30
해남센터	임시이전	'24.08.06.	300	0	20	2.2	2.2	26.4
제주센터	갱신	'25.01.01.	264	0	400	0.4	0.4	4.8
경남센터	이전	'25.01.06.	492	1.2	30	3.1	1.9	22.8
인천센터	이전	'25.10.28.	315	0	100	4.2	4.2	50.4
전남센터	이전	'25.11.01.	257	0	200	2.2	2.2	26.4
합계							18.8	225.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무소 이전이나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임차료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갱신 시점과 최근 임차료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최근 2년 연속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임차료를 증액하고 특히 2025년에는 당초 계획액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증액한 것은 적정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사무소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시점, 최근 임차료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임차료의 적정 소요액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연례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5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 1월에 설치되었음.
- 2025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입실적은 491억 3,000만원임.
- 동 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¹⁶⁹⁾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예정액의 1/2 이상을 정부로부터 출연받고,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연받고 있는데, 2025년에는 각각 241억 4,700만원을 출연받았음.

16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025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자체수입	31,581	24,431	24,431	24,305	99.5	△23.0
- 한국은행 출연금	31,463	24,147	24,147	24,147	100.0	△23.3
- 이자수입	118	284	284	158	55.6	33.9
정부내부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31,463	24,147	24,147	24,147	100.0	△23.3
여유자금회수	63	2,517	2,517	678	26.9	976.2
합계	63,107	51,095	51,095	49,130	96.2	△22.1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지출실적은 491억 3,000만원임.

○ 동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법정 장려금 지급으로, 2025년도에 49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 산 (D)	집행률 (D/C)	
사업비(저축장려금)	62,429	50,086	50,086	49,126	98.1	△21.3
기금운영비	-	1	1	-	0.0	-
여유자금운용	678	1,008	1,008	4	0.4	△99.4
합계	63,107	51,095	51,095	49,130	96.2	△22.1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5년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자산총액은 400만원으로, 2024년말 6억 7,900만원 대비 6억 7,500만원 감소함.
- 2025년말 기금의 부채 20억 1,100만원은 저축기관(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대한 2025년 12월 기준 저축장려금 정산액 미지급액(2026년 1월 정산 지급)으로, 2024년말 8억 800만원 대비 12억 300만원(148.9%) 증가함
- 2025년 유동부채는 20억 1,100만원으로 이는 저축장려금의 미정산액인 미지급금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2025년말 기금의 순자산은 △20억 700만원으로 2024년말 △1억 2,900만원 대비 18억 7,800만원 감소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025년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4	679	△675	△99.4
	자산계	4	679	△675	△99.4
부 채	차입부채	2,011	808	1,203	148.9
	부채계	2,011	808	1,203	148.9
순자산	기본순자산	4,068	4,068	-	-
	적립금 및 잉여금	△6,075	△4,197	△1,878	△44.7
	순자산계	△2,007	△129	△1,878	△1,455.8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중 기금의 재정운영순원가는 501억 7,300만원으로, 2024년 616억 9,500만원 대비 115억 2,200만원(18.7%) 감소함.

○ 프로그램 순원가 503억 3,000만원은 2025년 중 저축장려금 지급액 491억 2,600만원 및 2025년말 저축장려금 미정산액 20억 1,100만원에서 2024년말 저축장려금 미정산액 8억 800만원을 차감한 것임.

○ 2025년 여유자금운용수익인 비배분수익은 1억 5,700만원으로 2024년(1억 1,900만원)에 비하여 3,800만원(31.9%) 증가함.

□ 비교환수익 등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482억 9,400만원)으로, 전년(629억 2,600만원) 대비 146억 3,200만원(23.3%) 감소하였음.

□ 2025년중 재정운영결과는 18억 7,900만원으로 전년(△ 12억 3,100만원) 대비 31억 1,000만원(252.6.%)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50,330	61,813	△11,483	△18.6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57	119	38	31.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0,173	61,695	△11,522	△18.7
VI. 비교환수익 등	48,294	62,926	△14,632	△23.3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879	△1,231	3,110	252.6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말 현재 기금의 순자산은 △1억 2,800만원으로 2024년말(△13억 5,900만원) 대비 12억 3,100만원(90.6%) 증가하였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2,007	△128	△1,879	△1,468.0
1. 기본순자산	4,068	4,068	-	-
2. 적립금 및 잉여금	△6,075	△4,196	△1,879	44.8
3. 순자산조정	-	-	-	-
II. 재정운영결과	1,879	△1,231	3,110	252.6
III. 조항목	-	-	-	-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128	△1,359	1,231	90.6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도 기초의 현금은 679백만원, 기말의 현금은 4백만원으로, 현금의 증감은 △675백만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현금흐름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5(A)	2024(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5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675	-
V. 기초의현금	679	-
VI. 기말의현금(IV+ V)	4	-

주)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현금흐름표 도입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사업 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을 운영하는 사업임.

○ 동 저축의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2025년 기본금리: 연 3.68%)에 더해,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라 저축장려금(연 0.9%~4.8%)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가입한도는 연간 총 240만원(월 20만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구 분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금리	연 3.68% (2025년 기본금리)	
저축장려금	계약기간	이자율(%)
		일반 저소득
	3년 만기	연 0.9 연 3.0
	5년 만기	연 1.5 연 4.8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장려금재원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	
가입한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	
취급기관	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각각 241억 4,700만원, 기금운용수익금 1억 5,8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총 491억 3,0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¹⁷⁰⁾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 저축장려금 재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원	정부 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4,147
	한국은행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4,147
	기금운용수익	17	12	23	132	118	158
저축장려금지급액		67,757	68,233	53,260	54,135	62,429	49,130
만기 지급액		64,441	67,045	53,071	49,771	60,627	49,094
중도해지지급액		1,401	1,186	1,208	1,350	1,185	1,158

(자료: 금융위원회)

17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기금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신속한 제도개선 필요

□ 기금은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재정수단으로, 특정 목적사업과 재원 간의 연계가 강하고 잉여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어 단년도 원칙의 일반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이러한 신속성은 재원의 수요·공급이 연도별로 변동하거나 특정 재원과 지출사업 간에 실질적인 건련관계가 있는 사업에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까지 기금 형태로 운용할 경우 기금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금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수입-지출 건련성 부재) 기금의 정당성은 특정 재원이 특정 목적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한국은행 출연금은 저축장려금 지급이라는 목적사업과 실질적인 건련관계를 갖지 않음. 한국은행 출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률로 강제된 것일 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농어민 저축장려 간에 내재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신축적 운용의 실익 부재) 기금 제도가 전제하는 재정 신축성은 연도별 지출 규모의 변동성이 크거나, 잉여재원을 이월하여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저축장려금 지급액은 기존 가입자의 저축 잔액과 약정 이율에 따라 사실상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경직적 지출로, 매해 연말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로서, 기금 특유의 이월·적립 기능이 활용될 여지가 없음.

- (재정 통제 의 약화) 일반회계 사업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세부 심사를 받는 반면,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절차로 심의됨. 따라서, 사업 규모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재정 통제가 일반 예산 사업 대비 느슨해질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 재정제도인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 (한국은행 출연 구조의 통화정책 중립성 문제) 이 사업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¹⁷¹⁾에 따라 재원의 절반이 한국은행

17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출연금으로 충당되는데, 중앙은행이 재정성 지출사업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구조는 중앙은행의 재정 중립성 및 통화 발행 기능과 재정 지출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할 소지가 있음.

참고로, 한국은행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매년 무상 출연을 하는 사례는 동 기금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움.

- 기획재정부는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동 기금에 대해 반복적으로 폐지 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였는데, 2025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관성이 부족하며,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구조로 인해 중기가용자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방식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하였음.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¹⁷²⁾〉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18	조건부 존치	농어가 재산형성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농어민 중심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2019	폐지 (일몰)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함.

172) 2025년도 기금존치평가, p.60 (일부 내용 축약)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22	폐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함.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폐지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함.

□ 동 기금의 제도개선 방향으로서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다른 기금과의 통합, 사업 자체의 재설계 등 여러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관계부처 간 재원조달 방식과 소관 주체를 둘러싼 이견¹⁷³⁾으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가 수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2024회 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음.¹⁷⁴⁾ 그러나

173)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재원마련 방안 등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소관부처 이관) 농식품부는 재원조달 방안 이견 해소 시 일반회계 전환 및 소관부처 이관에 동의
○ (일반회계 전환) 한국은행은 일반회계 전환 시 정부사업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나, 기획예산처는 한국은행의 출연금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

174)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사업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적사항	○ 동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매년 1:1 비율로 출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기금의 수입(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저축장려금 지급)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9년, 2022년, 2025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를 권고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러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계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불입액 역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 ‘농어민 저축 유도’ 등을 동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⁷⁵⁾ 최근의 사업 실적을 보면, 이 사업이 동법의 입법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 좌 수,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가입 계좌수(누적)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206,820
불입액(누적)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11,289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사업 목적이 유효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7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신용보증기금

Ⅰ.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76년 6월에 설치되었으며,¹⁷⁶⁾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관리, 경영지도 등에 지출함.

○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신용보증기금이고, 감독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2025년 정부출연금 수입은 1,000억원임.¹⁷⁷⁾

□ 2025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9조 3,810억 4,4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80.8%를 수납하였음.

○ 금융기관 출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수입으로,¹⁷⁸⁾ 2025년에는 1조 3,023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음.

176)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통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77) 추경예산 1,000억원

178)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기준대출금(은행계정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요율(기준요율은 22.5bp이며, 직전반기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에 따라 $\pm 1 \sim 2bp$ 차등요율이 가감됨)을 곱하여 산출된 출연료를 수납하고 있음.

○ 구상권회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179)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동 법 제30조180)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수입으로 2025년에는 2,748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신용보증료는 기금의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수입으로 2025년에는 8,421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음.

〈신용보증기금 2025회계연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자체수입	3,670,628	3,383,185	3,383,185	3,815,707	112.8	4.0
- 금융기관 출연금	1,272,425	1,171,010	1,171,010	1,302,370	111.2	2.4
- 구상권회수	267,528	354,662	354,662	274,822	77.5	2.7
- 신용보증료	845,177	876,844	876,844	842,150	96.0	△0.4
- 이자수입	270,066	177,656	177,656	195,786	110.2	△27.5
- 기타수입	1,015,432	803,013	803,013	1,200,579	149.5	18.2
정부내부수입	80,000	-	100,000	100,000	100	25
- 정부출연금	80,000	-	100,000	100,000	100	25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공자기금예탁이자	-	-	-	-	-	-
여유자금회수	5,694,280	8,129,353	8,129,353	5,465,337	67.2	△4.0
합 계	9,444,908	11,512,538	11,612,538	9,381,044	80.8	△0.7

(자료: 신용보증기금)

179)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0)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25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9조 3,810억 4,4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80.8%를 지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사업비로 보증부실에 따른 대위변제금 3조 205억 7,600만원, 구상권관리와 보증료환급 등 기타사업비 4,856억 700만원 등 총 3조 5,06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로 3,907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음.

〈신용보증기금 2025회계연도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사업비	3,420,409	4,411,923	4,411,923	3,506,183	79.5	2.5
- 대위변제	2,958,377	3,866,158	3,866,158	3,020,576	78.1	2.1
- 기타사업비	462,032	545,765	545,765	485,607	89.0	5.1
기금운영비	373,250	374,229	396,532	390,706	98.5	4.7
- 인건비	273,004	285,770	299,328	296,255	99.0	8.5
- 기타운영비	100,246	88,459	97,204	94,451	97.2	△5.8
여유자금운용	5,651,249	6,726,386	6,804,083	5,484,155	80.6	△3.0
합 계	9,444,908	11,512,538	11,612,538	9,381,044	80.8	△0.7

(자료: 신용보증기금)

2. 재무제표

□ 2025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16조 7,948억 5,600만원이고, 부채는 3조 4,724억 7,600만원이며, 순자산은 13조 3,223억 8,000만원임.

○ 2025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은 16조 7,94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8억 7,100만원(6.5%) 증가하였는데, 투자증권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금융성자산이 늘고, 구상채권이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함.

○ 2025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는 3조 4,724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8억 8,000만원(3.0%)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증잔액 감소 등으로 보증충당부채가 줄어든 것에 주로 기인함.

○ 2025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순자산은 13조 3,223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257억 5,100만원(9.2%)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 결과 5,740억 3,400만원 흑자와 투자증권 평가손익 4,449억 8,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16,206,825	15,196,243	1,010,582	6.7
	유무형자산	559,748	539,625	20,123	3.7
	기타자산	28,283	39,117	△10,834	△27.7
	자산계	16,794,856	15,774,985	1,019,871	6.5
부 채	차입부채	134,042	132,770	1,272	1.0
	충당부채	2,843,779	2,954,831	△111,052	△3.8
	기타부채	494,655	490,755	3,900	0.8
	부채계	3,472,476	3,578,356	△105,880	△3.0
순자산	기본순자산	16,472,650	16,472,650	-	-
	적립금 및 잉여금	△4,154,341	△4,828,375	674,034	△14.0
	순자산조정	1,004,071	552,354	451,717	81.8
	순자산계	13,322,380	12,196,629	1,125,751	9.2

주)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재무제표 양식 변경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5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5,740억 3,400만원 흑자로 전년 대비 2,018억 9,200만원(54.3%) 증가함.

○ 2025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 흑자 규모가 증가한 것은 보증충당부채 환입이 발생하고 구상이익이 증가하여 프로그램수익이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1,527,722	1,798,203	△270,481	△15.0
1. 프로그램 총원가	2,814,507	2,888,751	△74,244	△2.6
2. 프로그램 수익	1,286,785	1,090,548	196,237	18.0
II. 관리운영비	124,933	125,816	△883	△0.7
III. 비배분비용	25,396	36,046	△10,650	△29.5
IV. 비배분수익	704,270	782,186	△77,916	△10.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73,781	1,177,879	△204,098	△17.3
VI. 비교환수익 등	1,547,815	1,550,021	△2,206	△0.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74,034	△372,142	△201,892	54.3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3조 3,223억 8,000만원으로 전
년도 기말 순자산 12조 1,966억 2,900만원 대비 1조 1,257억 5,100만원
(9.2%) 증가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2,196,629	11,738,794	457,835	3.9
1. 기본순자산	16,472,650	16,472,650	-	-
2. 적립금 및 잉여금	△4,828,375	△5,280,516	452,141	△8.6
3. 순자산조정	552,354	546,660	5,694	1.0
II. 재정운영결과	△574,034	△372,141	△201,893	54.3
III. 조정항목	551,717	85,694	466,023	543.8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13,322,380	12,196,629	1,125,751	9.2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25년 말 신용보증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82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 500만원(16.5%)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상품·투자증권 처분으로 인한 투자활동 현금흐름 증가와 정부출연금으로 인한 재무활동 현금흐름 증가 등에 기인함.

〈신용보증기금 현금흐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주)}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3,641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446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0,000	-	-	-
IV. 현금의 증감(I + II + III)	25,805	-	-	-
V. 기초의 현금	156,796	-	-	-
VI. 기말의 현금(IV+V)	182,601	156,796	25,805	16.5

주) 2025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현금흐름표 도입

(자료: 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과 보증료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는데, 2025년 정부·금융기관 출연금은 1조 6,477억원으로 전년도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1조 6,300억원 대비 177억원 증가하였음.

○ 2025년말 기준 기금조성현황은 70조 2,166억원으로, 정부출연금(24.1%)과 금융기관출연금(36.3%)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보증료 등 수입은 25.5%를 차지함.

〈신용보증기금의 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누계(구성비)
출연금	정부	155,988	10,650	837	800	1,000	169,275(24.1)
	금융기관등	199,520	11,113	13,314	15,500	15,477	254,924(36.3)
	소계	355,508	21,763	14,151	16,300	16,477	424,199(60.4)
보증료 ¹⁾		145,912	8,515	8,448	8,155	7,839	178,869(25.5)
기 타 ²⁾		68,192	2,906	6,318	10,572	11,110	99,098(14.1)
합 계		569,612	33,184	28,917	35,027	35,426	702,166(100.0)

주1) 보증수익, 사용료·수수료 수익 등

주2) 이자수입, 자산처분이익, 기타수익 등

(자료: 신용보증기금)

□ 최근 7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조 7,184억원 규모였던 신규보증은 2025년 16조 5,90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보증잔액은 52조 2,161억원에서 77조 6,786억원으로 48.8% 상승하였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19년 5조 3,377억원 규모였으나, 2025년에는 13조 3,04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배수는 9.8배에서 5.8배로 감소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보증	127,184	264,977	220,199	167,470	157,640	158,551	165,905
보증잔액(A)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794,711	776,786
기본 재산(B)	53,377	81,922	88,791 ^{주)}	105,482 ^{주)}	117,227 ^{주)}	121,795 ^{주)}	133,043 ^{주)}
운용배수(A/B)	9.8	8.2	8.9	7.9	7.0	6.5	5.8

주1) 총보증 기준

주2) 기본재산에서 팩토링은 제외('21년 101억원, '22년 155억원, '23년 161억원, '24년 171억원, '25년 180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1년 1조 2,111억원에서 2025년 2조 4,36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기준 대위변제 누계액은 51조 3,855억원임.

- 2025년도의 구상권 발생액은 대위변제 규모와 동일한 2조 4,362억원이며, 연도중 구상권 회수액은 2,786억원으로,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은 11.44%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위변제		12,111	11,509	17,205	22,283	24,362
누계(A) ¹⁾		438,496	450,005	467,210	489,493	513,855
구상권 발생액(B)		12,111	11,509	17,205	22,283	24,362
회수	연도중(C)	4,266	3,625	3,156	3,097	2,786
	누계(D)	142,619	146,244	149,400	152,497	155,283
구상권 잔액		94,237	82,962	76,344	80,447	84,902
대위변제 대비 회수율 ²⁾ (D/A)		32.52	32.50	31.98	31.15	30.22
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C/B)		35.22	31.50	18.34	13.90	11.44

주1) 누계액 중 95년 이전 자료는 확인 가능한 통계수치로 작성

주2) 구상채권 회수율=구상(특수, 포기 포함) 채권 회수 누계액/대위변제 누계액 ×100

(자료: 신용보증기금)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전입금¹⁸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 전입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정부출연금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1,000억이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 전입금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30,0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동 수입금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차원의 수입을 계상하기 위해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반영되었음.

- 동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정부출연금 1,000억원과 자체채원 1,4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181) 세부사업: 일반회계 전입금(91-911)

3조원 규모¹⁸²⁾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2025년 5월부터 공급하였음.

2) 검토의견: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 공급 실적 저조 문제

□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도에 운영한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기업은 관세조치·산업위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이고, 특례한도는 3억원(산업위기·재난)에서 5억원(관세조치)¹⁸³⁾,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3%p(산업위기·재난)에서 0.5%p(관세조치) 차감하도록 하였음.

○ 관세조치 피해기업이란 미국 수출입 실적이 감소하거나 자동차 등 관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산업위기 피해기업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¹⁸⁴⁾¹⁸⁵⁾의 주된산업 관련 협력기업을, 재난 피해기업이란 특별재난지역¹⁸⁶⁾에 소재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함.

182) 보증공급 3조원 = 재원 2,400억원(정부출연 1,000억원 + 자체재원 1,400억원) × 12.5배

183) 단,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공급

18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85) 2025. 10. 기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1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2025년 중에 총 3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급 결과를 보면 공급이 시작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약 1.6조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음.

〈위기대응 특례보증 월별 보증공급 실적(2025년)〉

(단위: 개, 억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위기대응 특례보증		93	425	332	1,192	583	2,059	790	2,679
관세조치 피해기업		91	419	328	1,181	574	2,034	757	2,606
산업위기 피해기업		1	3	1	3	2	6	-	-
재난 피해기업		1	3	3	8	7	19	33	73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1,173	4,238	730	2,676	597	2,177	173	482	4,471	15,928
1,129	4,126	704	2,599	582	2,149	167	448	4,332	15,562
-	-	2	8	1	3	1	1	8	24
44	112	24	69	14	25	5	33	131	342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2025년도 공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① 짧은 자금 공급 기간(약 7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② 추경 이후 한미협상을 통해 부과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어 관련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며 경제 영향도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자금 수요가 변경·이연된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결과라고 설명함.

□ 기업의 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보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 출연금 집행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출연금 1,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 1,4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3조원을 공급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실제 공급된 1조 6,000억원의 경우 총 보증공급 계획 대비 약 53%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이와 유사한 보증 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정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¹⁸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 시, 선순위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468억 8,700만원 중 2,148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을 39.3%)되고, 3,320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546,887	546,887	-	546,887	214,876	-	332,011	438,446

(자료: 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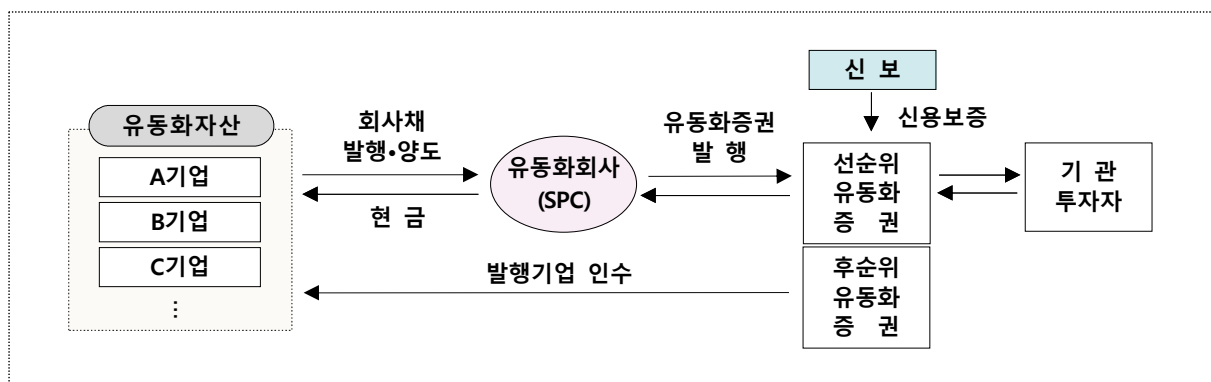
187) 세부사업: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2) 검토의견: 대위변제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025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크게 일반유동화회사 보증계정과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 958억 7,500만원, 채권시장안정계정 4,51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기금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함.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2020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 유

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¹⁸⁸⁾을 수행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편성된 계획액에 비해 실제 대위변제액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에는 2,10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고, 2024년과 2025년의 집행률은 각각 19.1%, 31.4%에 불과함.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유동화 계정구분	예상 대위변제액 (A)	실제 대위변제액 (B)	불용액(A-B)	집행률
2023년	일반	1,171	346	825	29.5%
	채권시장안정	2,109	0	2,109	0.0%
2024년	일반	923	754	169	81.7%
	채권시장안정	3,048	582	2,466	19.1%
2025년	일반	959	733	225	76.4%
	채권시장안정	4,510	1,415	3,095	31.4%

(자료: 신용보증기금)

188)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어 현재는 공급이 종료되었고, 2023년 신설된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에 편입되어 있음. 2023년부터 공급된 채권시장 안정 유동화 회사보증은 2년 만기(차환)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 부실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시작되었음.

□ 이와 같이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당초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가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를 기존 발생한 부실금액에 부실발생 예상금액을 더한 후 후순위유동화증권¹⁸⁹⁾ 규모(버퍼)만큼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2025년 채권시장안정화계정 대위변제금액 산출 방식〉

대위변제 예상액 4,510억 1,200만원	=	기 발생 부실금액 588억원	+	부실발생 예상금액 5,027억 9,200만원	-	버퍼 (Buffer) 1,105억 8,000만원
-------------------------------	---	-----------------------	---	--------------------------------	---	----------------------------------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 중 부실발생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험부실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실 발생¹⁹⁰⁾으로 대량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 경험부실률에 반영된 결과 부실발생 예상금액이 실제 당해연도 부실발생 금액보다 과도하게 산출된 것임.

□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해 ‘예상 부실률을 현실화하여 적정 규모의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189)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선순위유동화증권과 후순위유동화증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되며, 이 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 등에게 발행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발행한 기업이 인수하고 신용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190) 2015년 동부제철(주) 2,053억원, 2016년 현대상선(주) 4,675억원, 2016년 (주)한진해운 3,705억원 등

-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대위변제 계획액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채권시장안정 계정의 추정부실률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유동화회사보증 부실 예측모형 도입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음.
-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액을 2025년도 대비 19.8% 감액한 4,38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률은 34.7%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동 사업의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부실률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26년	438,446	152,329	34.7%

(자료: 신용보증기금)

3.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¹⁹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보증한 대출 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479억 4,600만원 중 1,884억 9,900만원(54.2%)이 집행되고, 1,594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347,946	347,946	-	347,946	188,499	-	159,447	109,590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일반회계로부터의 임시전용 자원 반환 필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

191) 세부사업: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1년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잔여한도 2.85조원을 활용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음.
- 사업 기간 동안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부터는 추가 보증공급 없이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위변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개요〉

구 분	소상공인위탁보증	
	기본 프로그램	임차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기업인 소기업 (도박·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기본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영위 임차 기업
지원한도	1,900만원	1,900만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및 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10년 만기) ※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만기)에서 거치기간 1년 연장(2022.4월) 및 기존 5년 만기 차주 요청 시 최대 10년 만기로 갱신 가능(2024.12.)	
보증료율	- 1년차 0.3% - 2~10년차 0.9%	- 1~2년차 면제 - 3~5년차 0.4% - 6~10년차 0.9%
보증심사	- 수탁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심사 - 현장조사 미 실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입된 정부 출연금을 살펴보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600억원을 편성하여 출연한 이후 2021년 1,500억원, 2024년 800억원 등 총 6,9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출연금 규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출연금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4,600
2021년	본예산	1,500
2024년	본예산	800
합계		6,9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동 사업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증과 달리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위탁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23년부터 누적부실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순자산은 잠식되어 대위변제를 위한 현금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위탁방식은 신용보증기금과 수탁은행 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현장조사와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규모,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변동 내용 등을 수반하는 일반보

증과 달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함.

-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잔여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환보증 계정’으로부터 2,000억원을 전용받았고, 2024년에는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반환을 전제로 2,000억원을 임시 전용받았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32 ^e
누적부실	1,324	3,863	9,749	13,499	14,477	15,567
순자산	3,079	1,527	△1,100	△2,778	△1,781	△935
기말현금				△793	△1,471	△1,185
일반계정 임시전용 반영 시 (2024년)	8,407	6,322	1,803	1,207	529	815
대환보증계정 전용 반영 시 (2025년)					2,529	2,815

주) 보증 만기 최대 10년으로 '32년에 보증기한 종료 예정 (최종 지원 2022.1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다만, 2025년부터 보증잔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부실잔액과 부실순증액 등 부실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동 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현금 재원은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25년도 동 사업의 계획액은 2024년 부실잔액을 2,306억원, 2025년 부실순증액을 2,622억원으로 예상하여 3,479억원을 대위변제할 것으

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2024년 부실잔액은 1,274억원, 2025년도 부실순증액은 978억원에 불과하여 1,885억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집행하였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부실잔액, 부실순증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A)	결 산(B)	차 이(B-A)
대위변제	3,479	1,885	△1,594
부실잔액(2024)	2,306	1,274	△1,032
부실순증액(2025)	2,622	978	△1,644

(자료: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획	64,954	57,283	21,654	9,457
실 적	65,082	44,785	22,459	7,847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사유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작성 당시(2024년 5월)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발생 규모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2025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 규모를 예측하였으나, 2025년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부양·민생안정 목적의 조치로 인해 부실 발생 규모가 예상보다 양호하였다는 입장임.

○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동 계정의 현금재원은 2,529억원이 남아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약 2,8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증가로 대환보증 계정 및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전용받은 4,000억원 중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임시전용된 2,000억원은 해당 계정으로의 상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2,000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반보증 계정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증배수를 일반적으로 12.5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임시 전용한 2,000억원은 실질적으로 일반보증 공급 규모가 2조 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

4. 대환보증 대위변제¹⁹²⁾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보증한 대출 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261억원 중 1,810억 1,700만원(55.5%) 집행되고, 1,450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대환보증 대위변제	326,100	326,100	-	326,100	181,017	-	145,083	158,425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사업종료를 반영하지 않은 대위변제금액 추계 부적절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도입되었음.

192) 세부사업: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연 최대 6.5%(금리 최대 5.5%, 보증료 연 1%)로 10년간 상환(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한도임.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재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800억원, 2023년도 예산 800억원 등 총 7,60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교부받아 마련되었으며, 공급액의 9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총 9조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었음.
-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까지 9조 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을 보면 2024년까지 약 1조 6,600억원을 공급하여, 공급계획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¹⁹³⁾

193)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접수분 중 서류 미비 등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2025년 1월에 공급된 24억 9,6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본 사업의 최종 누적 신규보증공급액은 약 1조 6,626억 원이라고 설명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공급 계획(a) ^{주1)}	8,500,000	9,500,000	9,500,000
신규 보증공급액 ^{주2)}	232,085	933,288	494,712
누적 신규 보증공급액(b)	232,085	1,165,373	1,660,085
계획 대비 보증 공급 실적(b/a)	2.7	12.3	17.5

주1) 보증공급 계획: 정부출연금 [2022년 추경(6,800억원) + 2023년 본예산(8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주2) 신규보증 운용기간: 2022년 9월 ~ 2024년 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이들 유사 프로그램에 비해 금리, 보증료율 측면에서 상품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대환보증,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회UP 특례보증 비교〉

구 분	신보 (저금리 대환보증)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경기신보 (기회UP 특례보증)
대환 금리	· (1년) 5.0% 고정 · (2년) 5.5% 고정 · (3~10년) 시장금리 적용	· (1~10년) 4.5% 고정	· 시장금리 - 2%(이차보전) * 2024년 9월 기준 3.6%
보증 료율	· (1년) 0% · (2~3년) 0.7% · (4~10년) 1.0%	· 해당 없음	· 0.5%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9조 5,000억원의 공급 규모를 전제로 7,600억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았으나, 공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해당 출연금의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되었음.
-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2024년말 종료하고, 기존 정부 출연금 중 잔여재원 2,000억원에 대해서는 현금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¹⁹⁴⁾한 바 있음.
- 한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대위변제를 위해 동 사업의 계획안을 7,139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까지의 공급 실적을 감안하여 3,261억원으로 감액 조정한 바 있음.
-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에 약 8.3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동 사업의 대위변제액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공급 목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10월까지의 공급 실적을 토대로 2024년 말까지 약 5,400억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상하되, 2025년에는 잔여 공급계획에 해당하는 7.8조원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2025년도 대위변제 예상액을 3,261억원으로 산출하였음.

194)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의 일부를 현금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단위 : 억 원, %)

구 분	변경 전 계획(A)	변경 후 계획(B)	차이 (B-A)
대위변제	7,139	3,261	△3,878
부실잔액 (2024)	782	579	△203
부실순증액 (2025)	9,328	4,040	△5,288
산출근거	보증공급액 × 연차별 예상 부실률 = '22년 공급분 2,321×8.2%=190 + '23년 공급분 9,333×10.3%=962 + '24년 공급분 83,346×9.8%=8,176	보증공급액 × 연차별 예상 부실률 = '22년 공급분 2,321×12.0%=279 + '23년 공급분 9,333×15.3%=1,428 + '24년 공급분 5,436×11.4%=620 + '25년 공급분 77,910×2.2%=1,714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런데, 2025년도 실제 대위변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되어 확정된 3,261억원 중에서 1,810억 1,700만원 (55.5%)만 집행되어 상당 부분의 계획액이 집행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도에 약 7.8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재산출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동 프로그램을 2024년 말 종료하고 2025년에 신규 공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¹⁹⁵⁾.

¹⁹⁵⁾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운용 기간의 연장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이 실제 동 프로그램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잔여 공급 계획을 전액 이행할 것을 전제로 대위변제액을 산출하여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했던 측면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보증 프로그램의 대위변제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종료 여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고 정확한 산출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제7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I. 개 요

1. 수입·지출 결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설치·운용되었음.

○ 동 기금은 정부¹⁹⁶⁾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금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신용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권관리 등의 운용에 지출하였음.

○ 동 기금의 운용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감독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 기금은 개인의 전세자금보증 등과 사업자의 건설자금보증 등을 수행하는 주택신용보증계정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음.¹⁹⁷⁾

□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실적은 5조 1,732억 7,7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7.6% 증가하였음.

196) 주신보계정은 1988년~2007년 정부로부터 총 1조 4,820억원을 출연받은 바 있으나, 2016년~2022년 정부출연금을 회수하는 조치로 총 1조 4,8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2024년말 현재 잔여 정부출연금은 0원임.

1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 동 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와 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해당 수입으로 9,769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¹⁹⁸⁾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5년에는 3,352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기금으로부터 주택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보증료로 2025년에는 2,933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 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579,651	4,809,162	4,809,162	5,173,277	107.6	13.0
○ 자체수입	1,768,650	2,117,819	2,117,819	1,755,801	82.9	△0.7
- 이자수입	158,758	200,554	200,554	150,145	74.9	△5.4
- 위약금	198	93	93	102	110.1	△48.5
- 금융기관출연금	1,069,786	1,157,793	1,157,793	976,964	84.4	△8.7
- 기타경상이전수입	238,702	351,196	351,196	335,223	95.4	40.4
- 면허료 및 수수료	301,206	408,183	408,183	293,367	71.9	△2.6
○ 정부내부수입	-	-	-	-	-	-
○ 여유자금회수	2,811,001	2,691,343	2,691,343	3,417,476	127.0	21.6

19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 실적(계정별)〉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수납률 (D/C)	
□ 주택신용보증계정	3,993,420	4,109,832	4,109,832	4,549,309	110.7	13.9
○ 자체수입	1,456,235	1,716,277	1,716,277	1,424,488	83.0	△2.2
- 이자수입	143,291	182,939	182,939	133,165	72.8	△7.1
- 위약금	198	93	93	102	110.1	△48.5
- 금융기관출연금	985,429	1,062,743	1,062,743	893,193	84.0	△9.4
- 기타경상이전수입	201,359	288,759	288,759	289,163	100.1	43.6
- 면허료 및 수수료	125,958	181,743	181,743	108,865	59.9	△13.6
○ 정부내부수입	-	-	-	-	-	-
○ 여유자금회수	2,537,185	2,393,555	2,393,555	3,124,821	130.6	23.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586,231	699,330	699,330	623,967	89.2	6.4
○ 자체수입	312,415	401,542	401,542	331,313	82.5	6.0
- 이자수입	15,467	17,615	17,615	16,980	96.4	9.8
- 위약금	-	-	-	-	-	-
- 금융기관출연금	84,357	95,050	95,050	83,771	88.1	△0.7
- 기타경상이전수입	37,343	62,437	62,437	46,060	73.8	23.3
- 면허료 및 수수료	175,248	226,440	226,440	184,502	81.5	5.3
○ 정부내부수입	-	-	-	-	-	-
○ 여유자금회수	273,816	297,788	297,788	292,654	98.3	6.9
합계	4,579,651	4,809,162	4,809,162	5,173,277	107.6	13.0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지출실적은 5조 1,732억 7,700만원으로 계획금액 대비 7.6% 증가하였음.

○ 사업비는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1조 2,602억 6,000만원, 구상권관리비 351억 3,700만원, 보증료환급 345억 100만원, 사업수수료 110억 3,600만원, 담보설정비용 23억 2,800만원, 주신보·주연보IT운영 65억 7,100만원 등 총 1조 3,498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음.

○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447억 8,100만원, 기금관리비 123억 9,400만원 등 총 57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총괄)〉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579,651	4,809,162	4,809,162	5,173,277	107.6	13.0
○ 사업비	991,265	1,548,198	1,548,653	1,349,833	87.1	36.2
구상권관리비	27,368	42,919	42,919	35,137	81.9	28.4
보증료환급	32,686	34,893	39,173	34,501	88.1	5.6
대위변제	911,040	1,425,214	1,425,214	1,260,260	88.4	38.3
사업수수료	10,489	16,891	13,824	11,036	79.8	5.2
담보설정비용	2,366	22,618	21,405	2,328	10.9	△1.6
주신보·주연보IT운영	7,316	5,663	6,118	6,571	96.0	△10.2
○ 기금운영비	56,520	59,637	59,637	57,175	95.7	1.2
인건비	42,805	46,562	46,562	44,781	96.2	4.6
기금관리비	12,814	13,075	13,075	12,394	94.0	△3.3
법인세	901	-	-	-	-	순감
○ 정부내부지출	-	-	-	-	-	-
공자기금예탁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3,531,866	3,201,327	3,200,872	3,766,269	117.7	6.6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 실적(계정별)〉

(단위: 백만원, %)

과 목	2024년 결산 (A)	2025년 도				전년 대비 증감률
		최초계획 (B)	변경계획 (C)	결산 (D)	집행률 (D/C)	
□ 주택신용보증계정	3,993,420	4,109,832	4,109,832	4,549,309	110.7	13.9
○ 사업비	927,140	1,426,814	1,427,146	1,261,998	88.4	36.1
구상권관리비	25,437	40,752	40,752	33,011	81.0	29.8
보증료환급	28,490	30,350	33,417	29,205	87.4	2.5
대위변제	857,857	1,336,400	1,336,400	1,185,076	88.7	38.1
사업수수료	9,654	15,278	12,211	10,114	82.8	4.8
주신보IT운영	5,701	4,034	4,366	4,592	95.8	△19.5
○ 기금운영비	38,547	40,450	40,450	38,817	95.8	0.7
인건비	29,658	32,330	32,330	31,046	96.0	4.7
기금관리비	7,988	8,120	8,120	7,771	94.8	△2.7
법인세	901	-	-	-	-	순감
○ 정부내부지출	-	-	-	-	-	-
공자기금예탁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3,027,733	2,642,568	2,642,236	3,248,494	122.9	7.3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586,231	699,330	699,330	623,967	89.2	6.4
○ 사업비	64,125	121,384	121,507	87,835	72.1	37.0
구상권관리비	1,931	2,167	2,167	2,127	98.1	10.2
보증료환급	4,195	4,543	5,756	5,296	92.0	26.2
대위변제	53,183	88,814	88,814	75,183	84.7	41.4
사업수수료	835	1,613	1,613	922	57.2	10.4
담보설정비용	2,366	22,618	21,405	2,328	10.9	△1.6
주연보IT운영	1,615	1,629	1,752	1,979	96.5	22.5
○ 기금운영비	17,974	19,187	19,187	18,358	95.5	2.1
인건비	13,147	14,232	14,232	13,735	96.5	4.5
기금관리비	4,826	4,955	4,955	4,623	92.8	△4.2
법인세	-	-	-	-	-	-
○ 여유자금운용	504,133	558,759	558,636	517,774	92.7	2.7
합계	4,579,651	4,809,162	4,809,162	5,173,277	107.6	13.0

(자료: 금융위원회)

2. 재무제표

□ 2025년 말 기준 기금의 자산은 14조 9,93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고, 부채는 1조 3,087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3조 6,84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금융자산	14,992,802	13,577,733	1,415,069	10.4
	유무형자산	969	2,542	△1,573	△61.9
	기타자산	11	24,145	△24,134	△100
	자산계	14,993,782	13,604,420	1,389,362	10.2
부 채	차입부채	29,100	20,102	8,998	44.8
	충당부채	1,137,272	1,095,778	41,494	3.8
	기타부채	142,420	152,652	△10,232	△6.7
	부채계	1,308,792	1,268,532	40,260	3.2
순자산	기본순자산	3,226,921	3,226,921	-	-
	적립금 및 잉여금	9,697,491	8,659,769	1,037,722	12.0
	순자산조정	760,578	449,198	311,380	69.3
	순자산계	13,684,990	12,335,888	1,349,102	10.9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1조 377억 원 2,200만원(흑자)으로, 부담금수익(9,769억원) 및 투자증권처분이익(5,652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 프로그램순원가는 보증충당부채전입 등 프로그램총원가(9,281억원)에서 보증수익 등 프로그램수익(3,104억원)을 차감한 결과 6,176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재정운영순원가는 관리운영비(225억원)와 투자증권처분이익 등 비배분수익(7,337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 △607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비교환수익은 부담금수익(금융기관출연금)으로 9,769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프로그램 순원가	617,699	496,034	121,665	24.5
1. 프로그램 총원가	928,094	776,365	151,729	19.5
2. 프로그램 수익	△310,395	△280,331	△30,064	△10.7
II. 관리운영비	22,526	23,275	△749	△3.2
III. 비배분비용	32,743	1,089	31,654	2,906.7
IV. 비배분수익	733,726	646,772	86,954	13.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0,758	△126,374	65,616	△51.9
VI. 비교환수익 등	976,964	1,069,786	△92,822	△8.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037,722	△1,196,160	158,438	13.2

(자료: 금융위원회)

□ 2025회계연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말 순자산은 13조 6,84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기말 순자산 12조 3,358억 8,800만원 대비 1조 3,491억 200만원 증가하였음.

○ 동 기금의 기말 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5년 재정운영 결과를 △1조 377억 2,200만원(흑자) 실현한 것에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 기초순자산	12,335,888	11,038,104	1,297,784	11.8
1. 기본순자산	3,226,921	3,226,921	-	-
2. 적립금 및 잉여금	8,659,769	7,463,608	1,196,161	16.0
3. 순자산조정	449,198	347,575	101,623	29.2
II. 재정운영결과	△1,037,722	△1,196,160	158,438	13.2
III. 조정항목	311,380	101,624	209,756	206.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13,684,990	12,335,888	1,349,102	10.9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말 현금은 931억 1,500만원으로 기초 현금 312억 3,100만원 대비 618억 8,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담금수입(금융기관출연금) 등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주로 기인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현금흐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I.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4,516	-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2,632	-	-	-
III.채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IV.현금의증감(I + II + III)	61,884	-	-	-
V.기초의현금	31,231	-	-	-
VI.기말의현금(IV+ V)	93,115	31,231	61,884	198.1

(자료: 금융위원회)

II. 검토의견

1. 대위변제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주택금융보증계정)¹⁹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 사업은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1조 3,364억원 중 1조 1,850억 7,600만원(88.7%)이 집행되고, 1,513억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대 위 변 제	1,336,400	1,336,400	-	1,336,400	1,185,076	-	151,324	1,313,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등 구상권 행사에 의한 구상권 회수금, 법인세 환급금 및 구상권관리비 회수액 등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 계획액은 2,887억 5,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4조 1,516억 2,900만원 중 2,891억

199) 세부사업: 대위변제(2631-30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6,300만원을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7.0%)하고 3조 5,146억 9,200만원은 미수납, 3,477억 7,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당 초	수 정						
기타경상이전수입	288,759	288,759	288,759	4,151,629	289,163	3,514,692	347,775	366,074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 포함)·개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개인보증), 사업자가 주택의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사업자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반환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개인보증 구조〉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림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구조〉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개념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5년도 보증공급 규모는 총 68조 6,779억원이고, 연도말 보증잔액은 126조 7,374억원임.

〈주택신용보증계정 보증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 (2025년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개인	610,000	588,873	674,000	641,769	623,000	618,766	652,000	615,960	597,000	545,282	968,793
반환		10,700		30,650		68,298		92,666		104,977	190,899
사업자	40,000	51,370	44,000	57,488	48,000	68,196	60,000	53,951	60,000	36,520	107,682
총계	650,000	650,943	718,000	729,907	671,000	755,260	712,000	762,577	657,000	686,779	1,267,374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 검토의견: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286억 2,200만원, 2022년 3,167억 6,700만원, 2023년 5,890억 6,700만원, 2024년 8,578억 5,700만원, 2025년 1조 1,850억 7,6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 행 액	집 행 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1	281,000	281,000	-	281,000	228,622	81.4	-	52,378
2022	291,200	320,000	-	320,000	316,767	99.0	-	3,233
2023	306,100	594,445	-	594,445	589,067	99.1	-	5,378
2024	669,400	870,000	-	870,000	857,857	98.6	-	12,143
2025	1,336,400	1,336,400	-	1,336,400	1,185,076	88.7	-	151,324

(자료: 금융위원회)

□ 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공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구상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DM발송, 유선연락 등 채권추심 활동을 실시함.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상환을 회피하거나 채무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자발적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또한 통상적인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하고, 시효 내 구상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공사의 구상권 발생액이 회수액을 상회하면서 구상권 잔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우선 개인보증의 경우 구상권 발생액이 2021년 2,242억원에서 2025년 7,78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회수액은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이 6~8%대에 불과한 상황임.

○ 반환보증 또한 구상권 잔액이 2022년 54억 7,600만원에서 2025년 3,973억 8,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회수율이 11~14%대로 저조하며, 특히 사업자보증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회수율이 0~2%대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최근 5년간 구상권 발생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인 보증	구상권 발생액	224,155	309,924	503,514	616,754	778,455
	회수액(A)	112,909	106,793	109,896	137,611	170,438
	구상권 잔액(B)	1,324,552	1,410,494	1,643,001	1,886,980	2,162,983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A/B)	8.52	7.57	6.69	7.29	7.88
반환 보증	구상권 발생액	-	6,122	83,967	227,468	167,624
	회수액(C)	-	646	11,350	30,497	45,098
	구상권 잔액(D)	-	5,476	78,093	275,064	397,381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C/D)	-	11.80	14.53	11.09	11.35
사업자 보증	구상권 발생액	4,466	721	1,586	13,635	238,996
	회수액(E)	1,504	2,340	4,544	713	21,222
	구상권 잔액(F)	780,597	760,914	745,969	743,533	947,396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E/F)	0.19	0.31	0.61	0.10	2.24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92.4~105.3%로 대체로 계획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7.0%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2021년 2조 1,197억원에서 2025년 3조 5,14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더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징 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24,043	124,043	124,043	2,443,416	130,624	105.3	5.3	2,119,703	193,089
2022	135,197	135,197	135,197	2,452,207	124,922	92.4	5.1	2,190,830	136,455
2023	145,612	145,612	145,612	2,798,656	143,348	98.4	5.1	2,481,273	174,035
2024	192,993	192,993	192,993	3,375,018	201,359	104.3	6.0	2,925,541	248,119
2025	288,759	288,759	288,759	4,151,629	289,163	100.1	7.0	3,514,692	347,775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보증대상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보증의 대위변제액(2021년 2,242억원 → 2025년 7,785억원)과 대위변제율(2021년 0.21% → 2025년 0.8%)이 지속 증가·상승하여 전체적인 대위변제액·율의 증가·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출시된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빠르게 증가·상승한 후 2025년에는 다소 감소·하락하였으나 2022년~2023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사업자보증은 2025년 대위변제액·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보증대상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인 보증	보증공급액	588,873	641,769	618,766	615,960	545,282
	보증잔액	1,078,006	1,102,294	1,087,086	1,029,849	968,793
	대위변제액	2,242	3,099	5,035	6,168	7,785
	대위변제율	0.21	0.28	0.46	0.60	0.80
	보증사고액	3,596	5,287	7,790	9,445	10,365
	보증사고율	0.33	0.48	0.72	0.92	1.07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¹⁾	보증공급액	10,700	30,650	68,298	92,666	104,977
	보증잔액	13,384	41,849	96,557	154,110	190,899
	대위변제액	-	61	840	2,275	1,676
	대위변제율	-	0.15	0.87	1.48	0.88
	보증사고액	-	111	1,013	2,524	1,608
	보증사고율	-	0.26	1.05	1.64	0.84
사업자 보증	보증공급액	51,370	57,488	68,196	53,951	36,520
	보증잔액	78,599	92,192	124,586	125,819	107,682
	대위변제액	45	7	16	136	2,390
	대위변제율	0.06	0.01	0.01	0.11	2.22
	보증사고액	35	55	1,791	2,026	3,196
	보증사고율	0.04	0.06	1.44	1.61	2.97
총계 ²⁾	보증공급액	650,943	729,907	755,260	762,576	686,779
	보증잔액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7	1,267,374
	대위변제액	2,286	3,168	5,891	8,579	11,851
	대위변제율	0.20	0.26	0.45	0.65	0.94
	보증사고액	3,631	5,450	10,594	13,995	15,169
	보증사고율	0.31	0.44	0.81	1.07	1.20
	운용배수	13.4	13.7	12.6	11.1	9.7
	기말기본재산	86,654	88,993	100,176	110,595	121,180
	기본재산증감	7,478	2,339	11,183	10,419	10,585

주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2020년 7월 처음 출시되어 2020년도 보증공급 건의 만기도래 시점인 2022년부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주2) 총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전체를 의미함

주3) 대위변제 및 사고발생은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4)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액/보증잔액 × 100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에 선행하는 보증사고액·율 역시 증가·상승하는 추세임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의 표를 보면, 전체 보증사고액·율(2021년 3,631억원 → 2025년 1조 5,169억원, 2021년 0.31% → 2025년 1.20%)이 계속 증가·상승하는 상황이고, 특히 2023년 이후 PF보증과 건설자금보증 등 사업자보증의 보증사고액·율(2022년 55억원 → 2025년 3,196억원, 2022년 0.06% → 2025년 2.97%)이 빠르게 증가·상승하고 있음.

□ 대위변제 확대와 구상채권 잔액의 누적은 기금의 손실 부담을 높여 향후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 여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금리·주택시장 여건 및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피보증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보증유형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신규 발생 구상채권의 조기관리와 재산조사·법적조치의 적시성을 높이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